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553호 2022. 5. 19.(목)

고 시

제2022-2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고시	8
제2022-2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고시	9
제2022-236호	함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10
제2022-237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38
제2022-240호	「경상남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 고시(도 홈페이지 고시)	
제2022-24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38
제2022-242호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39
제2022-24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66
제2022-244호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및 빼재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승인 고시 (도 홈페이지 고시)	
제2022-2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73

공 고

제2022-876호	2022년 『경남귀농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877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878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879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88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게시)	
제2022-88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게시)	
제2022-8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게시)	
제2022-884호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컬협회」 설립허가 공고	74
제2022-88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게시)	
제2022-886호	2022년도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중단 명령 공시송달 공고	75
제2022-887호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76
제2022-888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889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게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제2022-8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제2022-89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제2022-892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893호	제한경쟁 입찰 공고(G2B 게시)	
제2022-894호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방법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G2B 게시)	
제2022-895호	방치 선박 제거 공고	77
제2022-896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89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89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89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0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0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0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03호	항만공사 준공 공고	80
제2022-904호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예비후보자 선정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05호	2022/2023년도 경남도 외해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공고	81
제2022-90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07호	「2022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 운영기관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08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공고	83
제2022-910호	제출안건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게시)	
제2022-912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84
제2022-91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제2022-91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1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1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1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18호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변경신고 공고	85
제2022-91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제2022-920호	원산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2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2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23호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선정 결과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2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제2022-92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제2022-92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제2022-927호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공사(G2B 게시)	
제2022-928호	지방도1002호선 구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G2B 게시)	
제2022-92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제2022-93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31호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장목관광단지 등) 사업 개발사업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32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86
제2022-93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G2B 게시)	
제2022-934호	2022년도 제1회 경상남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체력시험 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35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86
제2022-9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행(G2B 게시)	
제2022-937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민간전문가 추가 모집 안내(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38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87
제2022-939호	경상남도 택시운임의 기준 및 요율 조정 연구용역(G2B 게시)	
제2022-94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4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게시)	
제2022-942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43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2-9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G2B 게시)	

알 림

창원시 고시 제2022-98호	창원 도시계획시설(감계2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88
통영시 고시 제2022-76호	통영 도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9
통영시 고시 제2022-77호	통영 동피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2
통영시 고시 제2022-79호	통영도시관리계획(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9
통영시 공고 제2022-884호	통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 공고 102
통영시 공고 제2022-898호	통영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 공고 105
사천시 고시 제2022-100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①: 취수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15
사천시 고시 제2022-101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동부 소로3-9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16
사천시 고시 제2022-1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동부 소로3-170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17
사천시 공고 제2022-740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삼천포서울병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19
밀양시 고시 제2022-13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밀양아리랑대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20
밀양시 고시 제2022-13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21
거제시 고시 제2022-13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127
거제시 고시 제2022-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28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거제시 고시 제2022-14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식물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33
거제시 공고 제2022-1045호	도시계획시설(항만:함박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35
거제시 공고 제2022-1046호	도시계획시설(항만:신교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36
거제시 공고 제2022-1072호	도시계획시설(항만:군령포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37
양산시 고시 제2022-14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139
양산시 고시 제2022-1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140
양산시 고시 제2022-156호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 도면 고시 141
양산시 공고 제2022-1279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46
함안군 공고 제2022-710호	군계획시설(공공청사:법수면사무소)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48
고성군 고시 제2022-90호	고성군계획시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지원시설 건축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50
고성군 고시 제2022-91호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삼천포화력발전소) 조성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52
고성군 고시 제2022-92호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삼천포화력발전소)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53
고성군 고시 제2022-93호	고성군계획시설(거류면 체육시설) 내 거류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 증축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54
하동군 고시 제2022-99호	하동군계획시설(적량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56
산청군 고시 제2022-73호	군계획시설(공원: 단성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61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함양군 고시 제2022-88호	함양군계획시설[소로1-20호선(함양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실시 계획 인가 고시	163
함양군 고시 제2022-89호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3호선) 인도 설치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166
함양군 고시 제2022-90호	2025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균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17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2-3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2-13호	2022년도 제3회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22-22호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2-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2-82호	「2022년 산림박물관 소방펌프 및 기계실 펌프류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72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6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2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3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3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32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3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3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2-13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게시)	

고 시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호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허가 취소 사항

- 허가 취소일 : 2022. 5. 10.
- 허가 취소 사유
 - 통영시 동호만 유류부두 및 물양장 확대공사 따른 부잔교 이설이 완료되어 기존 허가취소

2. 허가 사항

- 허가(승인)번호 : 제2021-44호
- 허가(승인)연월일 : 2021년 8월 17일 (허가기간 : 2021. 8. 17. ~ 2022. 8. 16.)
- 점용·사용의 장소 : 통영시 정량동 1382번지 지선 공유수면
- 피허가자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
- 면 적 : 595㎡(직접 198.6㎡, 간접 396.4㎡)
- 목 적 : 소형어선 집안용 부잔교 설치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호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허가 취소 사항

- 허가 취소일 : 2022. 5. 10.
- 허가 취소 사유
 - 통영시 동호만 유류부두 및 물양장 확대공사 따른 부잔교 이설이 완료되어 기존 허가취소

2. 허가 취소 대상

- 허가(승인)번호 : 제2021-43호
- 허가(승인)연월일 : 2021년 8월 17일(허가기간 : 2021. 8. 17. ~ 2022. 8. 16.)
- 점용·사용의 장소 : 통영시 정량동 1382번지 지선 공유수면
- 피허가자 :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68, 정량어촌계장
- 면 적 : 1,507㎡(직접 432.5㎡, 간접 1,074.5㎡)
- 목 적 :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3기 설치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36호

함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348호(2021.7.1.)로 변경 고시된 함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함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함양군(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원평리 일원

나. 사업시행자 및 사업면적

- 사업시행자 : (주)한국화이바
- 사업면적 : 738,360.7㎡

다.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 30%, 분양 70%)

라. 조성목적

-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 요충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 유치
-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마. 추진경위

- 2005.04.18 : 함양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2005.12.20 : 함양일반지방산업단지 투자협약서체결(함양군, 경상남도)
- 2006.03.10 : 함양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2007.02.08 : 함양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고시(경남 고시 제2007-30호)
- 2009.09.24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09-484호)
- 2014.01.16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14-23호)
- 2015.01.02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14-526호)
- 2015.11.19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15-499호)
- 2016.12.2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16-536호)
- 2017.02.0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17-37호)
- 2017.03.09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17-91호)
- 2021.07.0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남 고시 제2021-348호)

바. 분양계획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분양 가능 면적					조성 기간	사업시행자
		분양	미분양			계		
			조성	조성중	소계			
합계	738,360.7	168,797.8	132,373.5	-	132,373.5	301,171.3	08.1.03 ~ 17.3.31	(주) 한국 화이바
산업시설구역	357,053.8	168,797.8	59,357.0	-	59,357.0	228,154.8		
지원시설구역	39,437.6	-	39,437.6	-	39,437.6	39,437.6		
공공시설구역	228,623.4	-	33,578.9	-	33,578.9	33,578.9		
녹지구역	113,245.9	-	-	-	-	-		
주거지역	-	-	-	-	-	-		

※ 지원시설구역 : 39,437.6m²(지원시설용지 17,967.6m², 주거용지 21,470.0m²)
 공공시설구역 : 33,578.9m²(주차장 15,615.8m², 폐기물처리시설 17,963.1m²)

사. 입주계획

(단위 : 개사/m²)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m ²)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향후계획	11	10	1	375,021.4	357,053.8	17,967.6

※ 상기 사항은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아. 입지여건

시설명	2021년 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도로망 - 대전-통영 고속도로 동남측 8.8km -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측 7km - 국도 3호선 동측 0.5km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역 67.2km 			

시설명	2021년 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항 공	· 사천공항 65.5km			
항 만	· 부산항 172.6km			
용 수	· 600m ³ /일			
전 력	· 3,500KVA			한전
통 신	· 200회선			KT
환 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500m ³ /일			함양군
	·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17,963.1m ²			사업시행자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1) 목 표

-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업종별로 세분화된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단지 활성화 도모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첨단산업 정책 적극 반영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나.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²%)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주거구역
면적	738,360.7	357,053.8	39,437.6	228,623.4	113,245.9	-
구성비	100.0	48.4	5.3	31.0	15.3	-

※ 공공시설구역 : 228,623.4m²(도로 104,015.9m², 도로사면부 58,334.4m², 주차장 15,615.8m², 폐수종말 처리장 2,673.6m², 폐기물처리시설 17,963.1m², 지류시설 4,741.0m², 배수지 3,100.0m², 공원 22,179.6m²)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면적(738,360.7m²) 중 주거용지 면적(21,470.0m²)은 관리계획대상에서 제외

○ 산업단지 시설구역내 특정용도

합 계(m ²)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비고
20,636.7	2,673.6	17,963.1	폐수종말처리장 1일/500톤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 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단지관리사무소, 우편물취급소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생필품직매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시설 등 건축물

다) 공공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단,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함

라) 녹지 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1**

다.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1)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구 분		배 치 계 획				비 고
		기 정		변 경		
		업체수	면적(m ²)	업체수	변경(m ²)	
계		10	357,053.8	10	357,053.8	면적변경없음
산업시설 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5	209,894.6	4	185,806.2	감)24,088.4
	화학 및 화학물질 제조업(C20)	-	-	1	24,088.4	증)24,088.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	22,877.9	1	22,877.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1	39,685.6	1	39,685.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1	35,749.0	1	35,749.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11,221.2	1	11,221.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1	37,625.5	1	37,625.5	
	부동산 임대업(L6811)	-	-	-	-	전지역
	태양력발전업(D35114)	-	-	-	-	전지역

* 화학 및 화학물질 제조업 추가에 따른 업종별 면적 변경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단위별, 필지별 배치하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지별 적정 배치

나)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계열화 및 협업화에 대비한 합리적인 배치
- 규모의 변동이나 대체 등이 예상되므로 상호보완성 및 융통성 부여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 별첨2

라. 입주관리계획 (변경)

1) 입주대상업종 (변경)

(기정)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력 발전업(D3511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부동산 임대업(L6811)

(변경)

- 화학 및 화학물질 제조업(C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력 발전업(D3511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부동산 임대업(L6811)

2) 입주자격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기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은 일반 창고업(H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H52102), 농산물 창고업(H52103), 기타 보관 및 창고업(H52109)에 한하여 입주 허용
- 부동산임대업(L6811)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태양력 발전업(D35114)은 건축물(공장지붕이나 건축물 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입주업체가 직접 태양력발전업 사업허가를 취득·운영하는 것이나,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동조합(별도법인 설립)이 주체가 되어 사업허가를 취득·운영하는 것에 한함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은 일반 창고업(H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H52102), 농산물 창고업(H52103), 기타 보관 및 창고업(H52109)에 한하여 입주 허용
- 부동산임대업(L6811)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태양력 발전업(D35114)은 건축물(공장지붕이나 건축물 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입주업체가 직접 태양력발전업 사업허가를 취득·운영하는 것이나,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동조합(별도법인 설립)이 주체가 되어 사업허가를 취득·운영하는 것에 한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은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C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C2031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C20313)에 한하여 입주 허용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기존 활동기업으로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업체
- 사전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마친 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요청을 받은 자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4) 입주제한

- 관리기관은 공해다발, 용수 다소비 등 사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5) 토지(분할, 분양) 최소한도

- 조례 및 산집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최소제한 면적

6)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 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단,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공단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공단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분양받은 용지의 지적확정 후 필지를 분할코자 할 경우 개별공장 부지의 최소한도는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함. 단, 관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지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다)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 단지 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마) 분할면적 기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바) 기타사항

-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계획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업무 지원

2) 생산활동 지원계획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융자자금(산업기본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추진
-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

3) 근로자복지사업 계획

- 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와 기업행사에 활용

4)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5)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구 분		비 고
	계획면적(㎡)	설치면적(㎡)	
계	66,273.1	66,273.1	
주차장	15,615.8	15,615.8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시 설 명	구 분		비 고
	계획면적(m ²)	설치면적(m ²)	
폐기물처리시설	17,963.1	17,963.1	
폐수종말처리시설	2,673.6	2,673.6	
저류시설	4,741.0	4,741.0	
배수지(용수)	3,100.0	3,100.0	
공원	22,179.6	22,179.6	

가) 시설설치자

○ 생산지원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분양받은자
- 폐수종말처리시설 : 관리기관

○ 후생복지지원시설(주차장) : 사업시행자

○ 공공지원시설(도로, 도로사면부, 저류지, 배수지, 공원, 녹지) : 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나) 시설관리운영자

○ 생산지원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시행자 또는 분양받은자
- 폐수종말처리시설 : 관리기관 또는 입주협의회

○ 후생복지지원시설(주차장) : 사업시행자 또는 분양받은자

○ 공공지원시설(도로, 도로사면부, 저류지, 배수지, 공원, 녹지) : 관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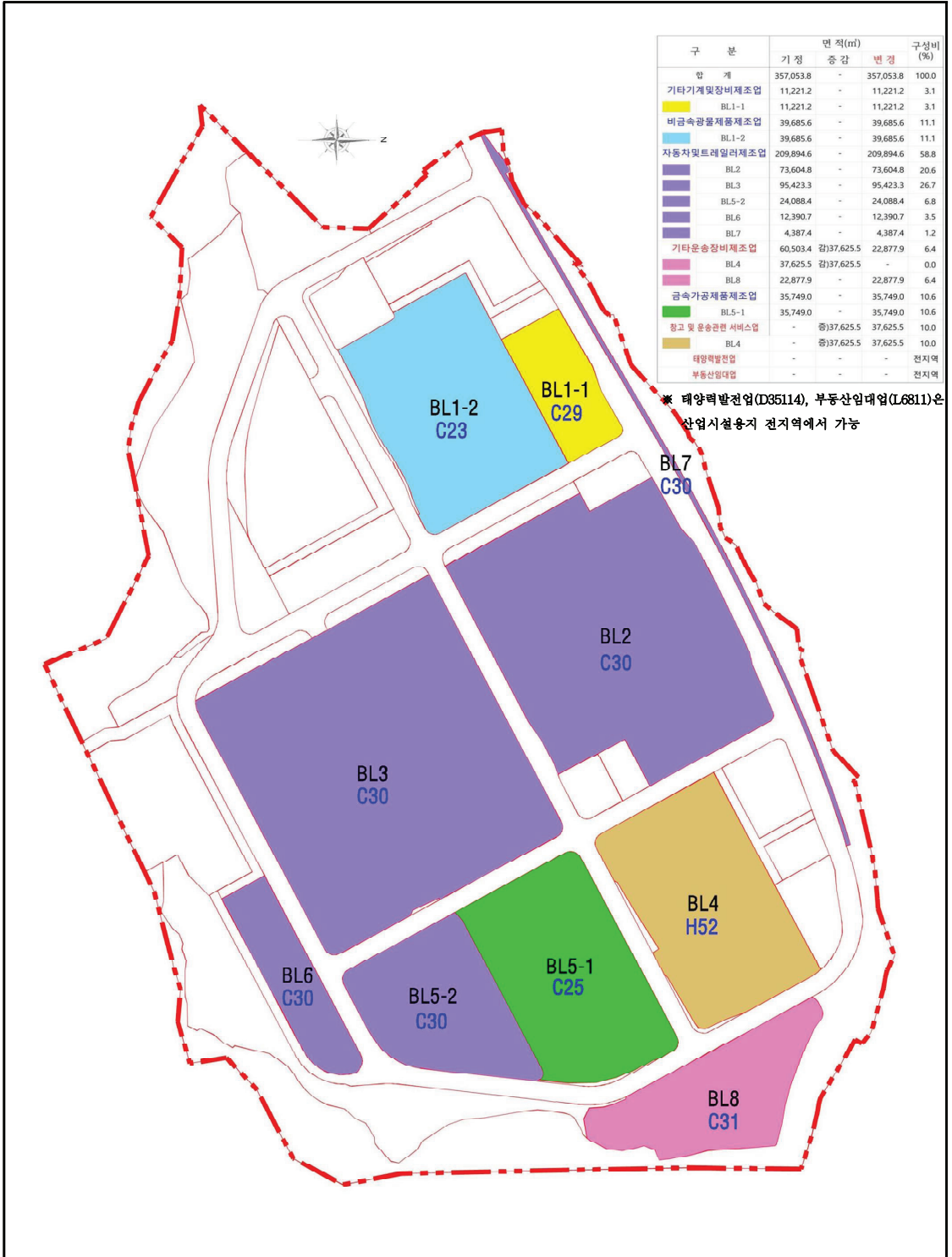
[별첨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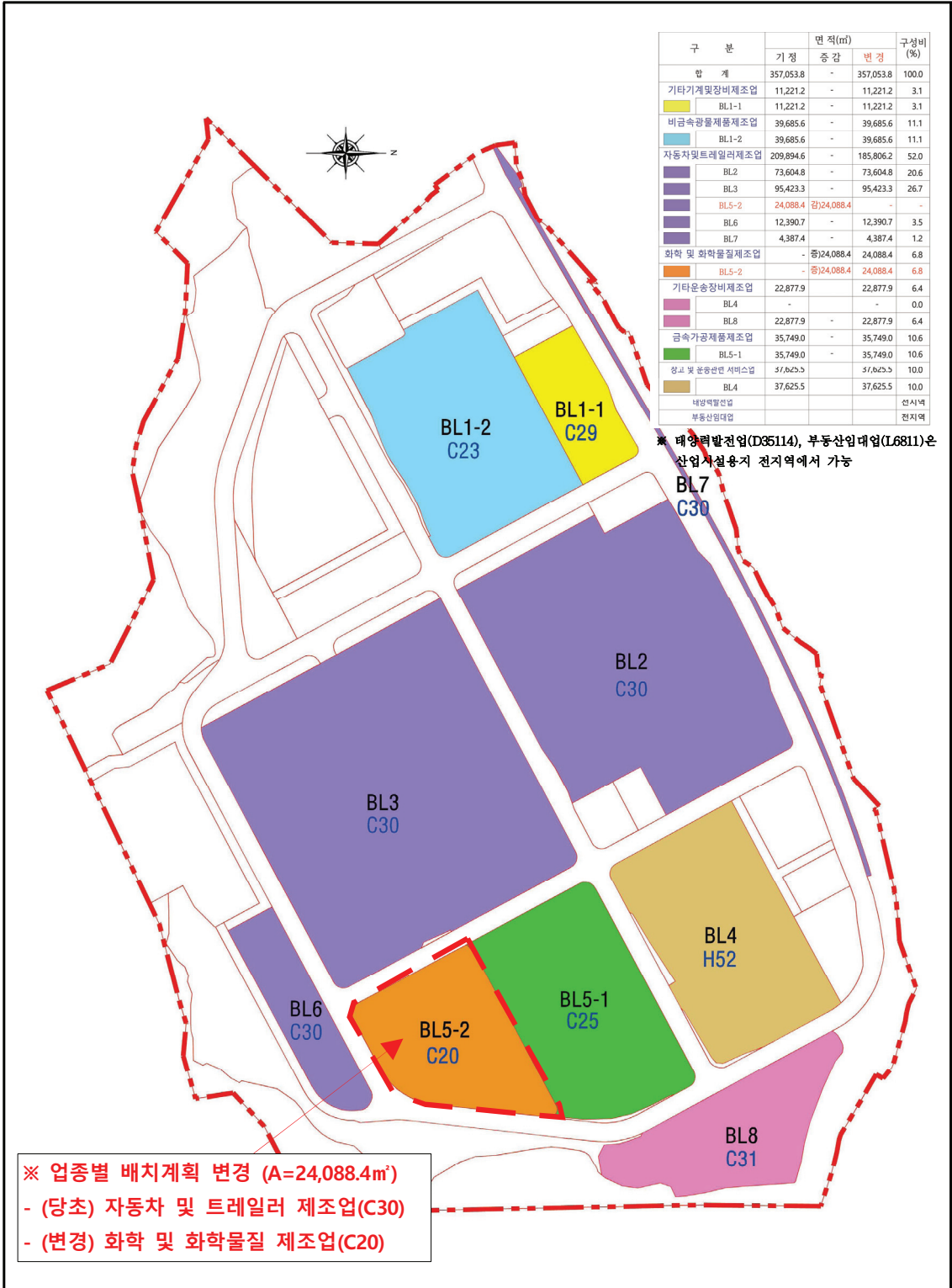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 (기정)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A=24,088.4m²)
 - (당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변경) 화학 및 화학물질 제조업(C20)

[별첨 3] ※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724,957,922	-	724,957,922	100.00		
주거 지역	소 계	2,390,685	-	2,390,685	0.33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718,575	-	718,575	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76,810	-	1,576,810	0.22		
	제3종일반주거지역	95,300	-	95,300	0.01		
	준주거지역	-	-	-	-		
상업 지역	소 계	305,400	-	305,400	0.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05,400	-	305,40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770,979	-	770,979	0.11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15,979	-	615,979	0.08		
	준공업지역	155,000	-	155,000	0.02		
녹지 지역	소 계	15,924,279.7	-	15,924,279.7	2.20		
	보전녹지지역	153,900	-	153,900	0.02		
	생산녹지지역	3,687,746	-	3,687,746	0.51		
	자연녹지지역	12,082,633.7	-	12,082,633.7	1.67		
관리 지역	소 계	238,011,553	-	238,011,553	32.83		
	관리지역	56,921	-	56,921	0.01		
	보전관리지역	83,944,074	-	83,944,074	11.58		
	생산관리지역	65,006,052	-	65,006,052	8.97		
	계획관리지역	89,004,506	-	89,004,506	12.28		
농림지역		371,593,590.3	-	371,593,590.3	51.26		
자연환경보전지역		95,961,435	-	95,961,435	13.24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함양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98-9일대	738,360.7	-	738,360.7	-	

I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토지이용계획(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38,360.7	-	738,360.7	100.0	
I. 산업시설용지	357,053.8	-	357,053.8	48.4	
II. 지원시설용지	17,967.6	-	17,967.6	2.4	
III. 주 거 용 지	21,470.0	-	21,470.0	2.9	
IV. 공공시설용지	341,869.3	-	341,869.3	46.3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단위 : 개, m, m²)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7	6,078	104,015.9	7	6,078	104,015.9	-	-	-	-	-	-
중로	6	5,776	100,609.8	6	5,776	100,609.8	-	-	-	-	-	-
소로	1	302	3,406.1	1	302	3,406.1	-	-	-	-	-	-

* 중로1-1호선 구역 외 부분(연장:1,069m, 면적:21,996m²) 포함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3,820	지구계 서측	중로 1-1호선	일반 도로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구역외부분 (L=1,069m)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 도로	934	중로 1-1호선	중로 1-1호선	일반 도로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246	중로 1-1호선	중로 1-2호선	일반 도로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 도로	241	중로 1-1호선	중로 1-2호선	일반 도로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 도로	238	중로 1-1호선	중로 1-2호선	일반 도로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 도로	297	중로 1-1호선	중로 1-2호선	일반 도로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소로	1	1	10	보조간선 도로	302	중로 1-1호선	폐기물 처리장	일반 도로		2009.9.24. (경상남도고시 제2009-484호)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615.8	-	15,615.8	-	
기정	1	주차장	우명리 산97-3번지 일원	5,272.9	-	5,272.9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2	주차장	우명리 103-1번지 일원	7,373.0	-	7,373.0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3	주차장	우명리 산101-4번지 일원	2,969.9	-	2,969.9	2015.11.19. (경상남도고시 제2015-499호)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179.6	-	22,179.6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원평리 1034	10,408.1	-	10,408.1	2015.11.19. (경상남도고시 제2015-499호)	
기정	2	공원	소공원	우명리 1012	4,484.6	-	4,484.6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3	공원	소공원	우명리 1024	5,267.3	-	5,267.3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4	공원	소공원	우명리 1017	2,019.6	-	2,019.6	2015.11.19. (경상남도고시 제2015-499호)	

라)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3,245.9	-	113,245.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우명리 산102번지 일원	90,610.3	-	90,610.3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산104-14번지 일원	1,097.9	-	1,097.9	2015.11.19. (경상남도고시 제2015-499호)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원평리 산17-12번지 일원	3,094.5	-	3,094.5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715번지 일원	2,171.9	-	2,171.9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55번지 일원	3,576.0	-	3,576.0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65번지 일원	2,506.4	-	2,506.4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산103-1번지 일원	1,863.9	-	1,863.9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산102-3번지 일원	4,202.2	-	4,202.2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산103-7번지 일원	2,055.0	-	2,055.0	2015.11.19. (경상남도고시 제2015-499호)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우명리 110번지 일원	2,067.8	-	2,067.8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마)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우명리 산102-3번지 일원	3,100.0	-	3,100.0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바)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우명리 69-2번지 일원	2,890	-	2,890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우명리 산98-9번지 일원	1,851	-	1,851	2015.11.19. (경상남도고시 제2015-499호)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① 폐수종말처리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우명리 111-1번지 일원	2,673.6	-	2,673.6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②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우명리 산101-22번지 일원	17,963.1	-	17,963.1	2007.10.11. (경상남도고시 제2007-384호)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	-	104,015.9	-	104,015.9	도 로
-	-	58,334.4	-	58,334.4	도로(사면부)
I-1-1	I	44,093.5	I-1-1	5,272.9	주차장①
I-1-2			I-1-2	7,373.0	주차장②
I-1-3			I-1-3	2,969.9	주차장③
I-2			I-2	2,673.6	폐수처리시설①
I-3			I-3	17,963.1	폐기물처리시설①
I-4-1			I-4-1	2,890.0	저류지①
I-4-2			I-4-2	1,851.0	저류지②
I-5			I-5	3,100.0	배수지①
II-1-1			II	357,053.8	II-1-1
II-1-2	II-1-2	39,685.6			산업시설용지
II-2	II-2	73,604.8			산업시설용지
II-3	II-3	95,423.3			산업시설용지
II-4	II-4	37,625.5			산업시설용지
II-5-1	II-5-1	35,749.0			산업시설용지
II-5-2	II-5-2	24,088.4			산업시설용지
II-6	II-6	12,390.7			산업시설용지
II-7	II-7	4,387.4			산업시설용지
II-8	II-8	22,877.9			산업시설용지
III-1	III	17,967.6	III-1	11,701.9	지원시설용지
III-2			III-2	6,265.7	지원시설용지
IV-1	IV	21,470.0	IV-1	21,470.0	주거용지
V-1	V	135,425.5	V-1	90,610.3	경관녹지①
V-2-1			V-2-1	1,097.9	완충녹지①
V-2-2			V-2-2	3,094.5	완충녹지②
V-2-3			V-2-3	2,171.9	완충녹지③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V-2-4	V	135,425.5	V-2-4	3,576.0	완충녹지④		
V-2-5			V-2-5	2,506.4	완충녹지⑤		
V-2-6			V-2-6	1,863.9	완충녹지⑥		
V-2-7			V-2-7	4,202.2	완충녹지⑦		
V-2-8			V-2-8	2,055.0	완충녹지⑧		
V-2-9			V-2-9	2,067.8	완충녹지⑨		
V-3-1			V-3-1	10,408.1	근린공원①		
V-4-1			V-4-1	4,484.6	소공원②		
V-4-2			V-4-2	5,267.3	소공원③		
V-4-3			V-4-3	2,019.6	소공원④		
합계			-	738,360.7	-	738,360.7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II-1-1	II-1-1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1-2	II-1-2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II-1-2	II-1-2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2	II-2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3	II-3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II-4	II-4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5-1	II-5-1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II-5-2	II-5-2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 용도	당초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변경	• 화학 및 화학물질 제조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6	II-6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II-7	II-7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8	II-8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력 발전업(D35114) 관련시설로 건축물(벽면·지붕·옥상)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권장용도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III-1	III-1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양군 계획조례 제27조제6항」 별표6에 의한 건축물 •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I-2	III-2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양군 계획조례 제27조제12항」 별표12에 의한 건축물 •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V-1	IV-1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양군 계획조례 제27조제4항」 별표4에 의한 건축물 •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공동주택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수도공급설비, 유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IV.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근린공원①

가) 부지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408.1	-	10,408.1	시설율 : 29.3%
기정	도로	614.0	-	614.0	
기정	광장	1,309.7	-	1,309.7	
기정	운동시설	547.4	-	547.4	
기정	주차장	499.0	-	499.0	
기정	관리동	75.0	-	75.0	
기정	녹지	7,363.0	-	7,363.0	

나) 시설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10,408.1	-	10,408.1	-	-	
기정	도로	614.0	-	614.0	-	-	
기정	광장	1,309.7	-	1,309.7	-	-	
기정	운동시설	547.4	-	547.4	-	-	
기정	주차장	499.0	-	499.0	-	-	
기정	관리동	75.0	-	75.0	75.3	75.3	
기정	녹지	7,363.0	-	7,363.0	-	-	

다)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0,408.1	-	-	-		
도로	소 계		614.0	-	-	-		
	기정	1-1	보행로1	43.4	-	-	-	
	기정	1-2	보행로2	77.3	-	-	-	
	기정	1-3	보행로3	255.5	-	-	-	
	기정	1-4	보행로4	51.8	-	-	-	
	기정	1-5	보행로5	186.0	-	-	-	
광장	소 계		1,309.7	-	-	-		
	기정	2-1	광장1	640.0	-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광장	기정	2-2	광장2	308.5	-	-	-	
	기정	2-3	광장3	361.2				
운동시설	기정	3	운동시설	547.4	-	-	-	
주차장	기정	4	주차장	499.0	-	-	-	
관리동	기정	5	관리동	75.0	75.0	75.0	1	
녹지	기정	6	녹지	7,363.0	-	-	-	

2) 소공원②

가) 부지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484.6	-	4,484.6	시설율 : 16.1%
기정	도로	350.8	-	350.8	
기정	광장	147.6	-	147.6	
기정	주차장	222.4	-	222.4	
기정	녹지	3,763.8	-	3,763.8	

나) 시설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4,484.6	-	4,484.6	-	-	
기정	도로	350.8	-	350.8	-	-	
기정	광장	147.6	-	147.6	-	-	
기정	주차장	222.4	-	222.4	-	-	
기정	녹지	3,763.8	-	3,763.8	-	-	

다)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4,484.6	-	-	-		
소 계			350.8	-	-	-		
도로	기정	1-1	보행로1	25.6	-	-	-	
	기정	1-2	보행로2	32.5	-	-	-	
	기정	1-3	보행로3	35.1	-	-	-	
	기정	1-4	보행로4	257.6	-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면적(㎡)	시설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광장	기정	2	광장	147.6	-	-	-	
주차장	기정	3	주차장	222.4	-	-	-	
녹지	기정	4	녹지	3,763.8	-	-	-	

3) 소공원③

가) 부지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67.3	-	5,267.3	시설율 : 19.9%
기정	도로	343.3	-	343.3	
기정	광장	389.4	-	389.4	
기정	주차장	316.5	-	316.5	
기정	녹지	4,218.1	-	4,218.1	

나) 시설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			시설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5,267.3	-	5,267.3	-	-	
기정	도로	343.3	-	343.3	-	-	
기정	광장	389.4	-	389.4	-	-	
기정	주차장	316.5	-	316.5	-	-	
기정	녹지	4,218.1	-	4,218.1	-	-	

다)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면적(㎡)	시설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5,267.3	-	-	-	
도로	소 계			343.3	-	-	-	
	기정	1-1	보행로1	71.5	-	-	-	
	기정	1-2	보행로2	170.7	-	-	-	
	기정	1-3	보행로3	101.1	-	-	-	
광장	소 계			389.4	-	-	-	
	기정	2-1	광장1	239.7	-	-	-	
	기정	2-2	광장2	97.6	-	-	-	
	기정	2-3	광장3	52.1	-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장	기정	3	주차장	316.5	-	-	-	
녹지	기정	4	녹지	4,218.1	-	-	-	

4) 소공원④

가) 부지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19.6	-	2,019.6	시설율 : 17.8%
기정	도로	124.2	-	124.2	
기정	광장	235.9	-	235.9	
기정	녹지	1,659.5	-	1,659.5	

나) 시설총괄표

구 분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019.6	-	2,019.6	-	-	
기정	도로	124.2	-	124.2	-	-	
기정	광장	235.9	-	235.9	-	-	
기정	녹지	1,659.5	-	1,659.5	-	-	

다)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2,019.6	-	-	-	
도로	소 계			124.2	-	-	-	
	기정	1-1	보행로1	61.3	-	-	-	
	기정	1-2	보행로2	62.9	-	-	-	
광장	소 계			235.9	-	-	-	
	기정	2-1	광장1	121.0	-	-	-	
	기정	2-2	광장2	114.9	-	-	-	
녹지	기정	3	녹지	1,659.5	-	-	-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37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 등록취소일자 : 2022. 5. 19.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대표자	산림사업의 종 류	소 재 지	등록취소 사 유
주식회사 수피아	경남2021-050	2021.8.13.	문*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경남 통영시 무전7길 150 (무전동)	등록중 자진반납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4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 **등록취소일자 : 2022. 5. 19.**

법인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대표자	산림사업의 종 류	소 재 지	등록취소 사 유
주식회사 청산	경남2020-053	2020.12.23.	이*빈	산림토목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25, 1층	폐업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42호**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507호(2021.09.30.)로 승인 고시한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계획

1. 물류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계획적·종합적 물류단지 조성으로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시설용지 제공과 영남권 물류거점 개발로 지역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서비스 개선
- 물류·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9번지 일원
- 나. 면 적 : 95,600㎡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가. 개발기간 : 2021년 ~ 2024년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가. 사업시행자 : (기정) 주식회사 피디엠 대표이사 김명열
 (변경) 주식회사 피에스엠 대표이사 김명열
- 나. 주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15번길 15(서상동)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가. 지목별 현황(변경없음)

구분	계	구	답	대	도	묘	임	장	전
필지수(개)	104	7	4	3	6	3	27	2	52
면적(㎡)	95,600	1,293	3,329	2,492	611	221	31,376	4,813	51,465
구성비(%)	100.0	1.4	3.5	2.6	0.7	0.2	32.8	5.0	53.8

- 나. 소유자별 현황(변경없음)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경상남도)	사유지	비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필지수(개)	104	3	1	2	98	
면적(㎡)	95,600	789	1,567	234	93,010	
구성비(%)	100.0	0.8	1.7	0.2	97.3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5,600	100.0	
물류단지 시설용지	소 계	58,994	61.7	
	물류시설용지	58,994	61.7	
지원시설 용지	소 계	6,188	6.5	
	지원시설	5,114	5.4	
	주차장	1,074	1.1	
공공시설 용지	소 계	30,418	31.8	
	도 로	14,849	15.6	
	완충녹지	5,549	5.8	
	공원	1,177	1.2	
	유수지	1,072	1.1	
	사면녹지	7,771	8.1	6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2	952	14,849	1	36	920	1	916	13,929	-	-	-	-
중로	2	952	14,849	1	36	920	1	916	13,929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37	20	국지 도로	36	대로3-5-1	중로2-32	일반 도로	-	'21.9.30. (고시 제2021-507호)	-
기정	중로	2	32	15	국지 도로	916	중로1-37	중로1-37	일반 도로	-	'21.9.30. (고시 제2021-507호)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3	주차장	노외 주차장	죽곡리 352-2번지 일원	1,074	-	1,074	'21.9.30. (고시 제2021-507호)	

3) 공원계획(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6	-	소공원	죽곡리 352-1번지 일원	1,177	-	1,177	'21.9.30. (고시 제2021-507호)	

4) 녹지계획(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9	녹지	완충 녹지	죽곡리 366-3번지 일원	3,401	-	3,401	'21.9.30. (고시 제2021-507호)	
기정	5-40	녹지	완충 녹지	죽곡리 371번지 일원	2,148	-	2,148	'21.9.30. (고시 제2021-507호)	

5)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9	유수지	저류시설	죽곡리 352-1번지 일원	1,072	-	1,072	'21.9.30. (고시 제2021-507호)	

6)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급수량 (m ³ /일)	공급계획	비고
상수공급	55.9	• 명동정수장 급수권역으로 시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7)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오수량 (m ³ /일)	공급계획	비고
오수처리	4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인입·처리 	

8)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오수량 (톤/일)	공급계획	비고
폐기물처리	3,6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9)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간 전력 수용량 (MWh/년)	공급계획	비고
전력공급	38,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10) 열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간 열 수용량 (Gcal/년)	공급계획	비고
열공급	3,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 	

11)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수	비고	비고
단지내 통신수요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통신선로는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9. 자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총 사업비 697억원 중 231억원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466억은 타인자본(PF자금)으로 충당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자 금 조 달		비고
	자기자본	타인자본	
69,697	23,140	46,557 (PF)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69,697	19,832	24,420	9,700	9,447	6,298	
용지비	36,340	19,832	16,508	-	-	-	용지비, 용지부담금
공사비	30,850	-	7,152	8,940	8,855	5,903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기타비용	2,507	-	760	760	592	395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금융비용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1. 에너지사용계획 : 해당없음

구분	내용	비고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 (제20조제4항 관련)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해당없음

12. 유치시설의 배치계획(변경없음)

업 종		위 치	면 적(m ²)	구 성 비(%)
코 드	항 목 명			
합계	-	-	58,994	100.0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시설용지	58,994	100.0

13.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일반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설치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없음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해당없음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역 명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5,600	-	95,600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95,600	-	95,600	100.0	

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유통업무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	김해 죽곡일반 물류단지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9번지 일원	95,600	-	95,600	'21.9.30. (고시 제2021-507호)	일반 공업 지역

2)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5,600	-	95,600	100.0	
물류단지시설용지	58,994	-	58,994	61.7	
물류시설용지	58,994	-	58,994	61.7	창고 및 집배송시설 등
지원시설용지	6,188	-	6,188	6.5	지원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30,418	-	30,418	31.9	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등

나) 세부시설 결정조서

■ 물류단지시설용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994	-	58,994	
기정	물류1	물류시설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9번지 일원	52,265	-	52,265	창고 및 집배송시설
기정	물류2	물류시설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15-1번지 일원	6,729	-	6,729	창고 및 집배송시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지원시설용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88	-	6,188	
기정	지원1	지원시설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3-3번지 일원	3,030	-	3,030	
기정	지원2	지원시설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52-2번지 일원	2,084	-	2,084	
기정	주차1	주차장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52-2번지 일원	1,074	-	1,074	

■ 공공시설용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418	-	30,418	-
기정	공원1	공원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52-1번지 일원	1,177	-	1,177	소공원
기정	녹지1	녹지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66-3번지 일원	3,401	-	3,401	완충녹지
기정	녹지2	녹지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71번지 일원	2,148	-	2,148	완충녹지
기정	사면1	녹지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69-2번지 일원	3,103	-	3,103	사면녹지
기정	사면2	녹지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71번지 일원	4,668	-	4,668	사면녹지
기정	저류1	유수지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52-1번지 일원	1,072	-	1,072	저류시설
기정	도로1	도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55-5번지 일원	920	-	920	중로1류 (폭 20m)
기정	도로2	도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5-1번지 일원	13,929	-	13,929	중로2류 (폭 15m)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23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9번지 일원	95,600	-	95,600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2	952	14,849	1	36	920	1	916	13,929	-	-	-	-
중로	2	952	14,849	1	36	920	1	916	13,929	-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7	20	국지 도로	36	대로3-5-1	중로2-32	일반 도로	-	'21.9.30. (고시 제2021-507호)	-
기정	중로	2	32	15	국지 도로	916	중로1-37	중로1-37	일반 도로	-	'21.9.30. (고시 제2021-507호)	-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3	주차장	노외 주차장	죽곡리 352-2번지 일원	1,074	-	1,074	'21.9.30. (고시 제2021-507호)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6	-	소공원	죽곡리 352-1번지 일원	1,177	-	1,177	'21.9.30. (고시 제2021-507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소공원 5-36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합 계		1,177	100.0	
세부시설	소계	234	19.9	
	도로 및 광장	161	13.7	
	운동시설	73	6.2	
녹지 및 기타		943	80.1	

○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	면적(m ²)	비율(%)	비고
1. 도로 및 광장	1-1	주도로	92	7.8	
	1-2	보조도로	6	0.5	
	1-3	보조도로	45	3.8	
	1-4	진입광장	18	1.5	
	소계		161	13.7	
2. 운동시설	2-1	체력단련장	73	6.2	
	소계		73	6.2	
3. 녹지 및 기타	3	녹지	943	80.1	
	소계		943	80.1	
합 계			1,177	100.0	

○ 도로

- 총괄조서

구분		합계		중로		소로	
		연장(m)	면적(m ²)	연장(m)	면적(m ²)	연장(m)	면적(m ²)
합계		948	143	-	-	948	143
기정	1류	-	-	-	-	-	-
기정	2류	-	-	-	-	-	-
기정	3류	948	143	-	-	948	143

- 세부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948	143				
기정	소로	3	1	1.5	61.0	92	연결로	진입광장	출입구	
기정	소로	3	2	1.5	3.9	6	연결로	출입구	주도로	
기정	소로	3	3	1.5	29.9	45	연결로	주도로	주도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9	녹지	완충 녹지	죽곡리 366-3번지 일원	3,401	-	3,401	'21.9.30. (고시 제2021-507호)	
기정	5-40	녹지	완충 녹지	죽곡리 371번지 일원	2,148	-	2,148	'21.9.30. (고시 제2021-507호)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9	유수지	저류시설	죽곡리 352-1번지 일원	1,072	-	1,072	'21.9.30. (고시 제2021-507호)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획지 번호	위치	면적 (m ²)	
물류1	물류1	52,265	1	진영읍 죽곡리 371번지 일원	52,265	물류단지시설용지
물류2	물류2	6,729	1	진영읍 죽곡리 315-1번지 일원	6,729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1	지원1	3,030	1	진영읍 죽곡리 343-3번지 일원	3,030	지원시설용지
지원2	지원2	2,084	1	진영읍 죽곡리 352-2번지 일원	2,084	지원시설용지
주차1	주차1	1,074	1	진영읍 죽곡리 352-2번지 일원	1,074	주차장
공원1	공원1	1,177	1	진영읍 죽곡리 352-1번지 일원	1,177	소공원
저류1	저류1	1,072	1	진영읍 죽곡리 352-2번지 일원	1,072	유수지
-	녹지	5,549	-		5,549	완충녹지
-	녹지	7,771	-		7,771	사면녹지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물류1 물류2	물류1 물류2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라목 집배송시설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라. 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고에서 5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중로2-32호선) 경계로부터 3m 이격 • 구역 경계로부터 7m 이격 	

나) 지원시설용지(편의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지원1 ~ 지원2	지원1 ~ 지원2	용도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내지 제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 「건축법」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지원1 ~ 지원2	지원1 ~ 지원2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중로1-37, 중로2-32호선) 및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 • 도로(대로3-5-1호선) 경계로부터 5m 이격

다)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차1	주차1	용도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불류단지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된다.

제3조(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물류단지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에 따른다.
- ②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 ③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한 일반물류단지계획 승인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한다.
- ④ 획지 상호간 분할·합병에 의하여 서로 규제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폭이 더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전면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면적이 더 큰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밀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⑤ 지침의 내용 중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은 내용들로서 가급적 지침내용을 수용하여 건축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 ⑥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 ⑦ 본 지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본 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 2. “가구 및 획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계획의 목적에 따라 분할된 일단의 지역적 범위로서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획지란 개발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 3. “권장용도”라 함은 당해 획지에서 권장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규제사항은 아니며, 가능한 한 지정된 용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허용용도”라 함은 당해 획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5.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되는 용도일지라도 도시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획지에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 6.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7.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8. “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또는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 또는 층수를 말하며, 높이 또는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9. “전면도로”이라 함은 당해 대지가 접한 도로 중에서 폭원이 가장 큰 도로를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물류단지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6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여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으나,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
- ② 획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각 획지는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에 의하여 분할 전 획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③ 2 이상의 획지가 합병될 경우 각 획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에 의하여 합병 전 획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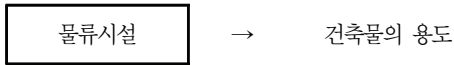
제7조(건축물의 용도)

① 건축물 용도는 다음 표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용지

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물류1 ~ 물류2	물류1 ~ 물류2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라목 집배송시설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라. 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 용도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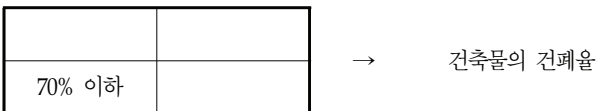


제8조(건폐율)

①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 이후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을 충족(「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한 것으로 본다.

구분	건폐율
물류시설용지	70% 이하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용적률)

- ①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 이후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용적률
물류시설용지	260% 이하

-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260%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제10조(건축물의 최고높이)

-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구 분	최고높이
물류시설용지	지반고에서 55m 이하

-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반고에서 55m 이하	→	건축물의 최고높이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내부동선)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등 내부동선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주차장의 설치)

- ① 물류단지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며,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

- 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관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14조(건축선)

- ① 도로(중로2-32호선) 경계로부터 3m, 물류단지B 남측 경계로부터 7m 후퇴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방음식재를 한다.

제15조(생태면적률)

- 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34조를 따른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절 지원시설1, 지원시설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6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여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으나,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
- ② 획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각 획지는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에 의하여 분할 전 획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③ 2 이상의 획지가 합병될 경우 각 획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에 의하여 합병 전 획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7조(건축물의 용도)

- ① 건축물 용도는 다음 표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원시설1, 2

구 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2	지원1 ~ 지원2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내지 제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 「건축법」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시설1	→	건축물의 용도
-------	---	---------

제18조(건폐율)

①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 이후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을 충족(「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한 것으로 본다.

구 분	건폐율
지원시설1, 2	70% 이하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70% 이하	→	건축물의 건폐율
--------	---	----------

제19조(용적률)

①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 이후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용적률
지원시설1,2	350% 이하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350%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	---	----------

제20조(건축물의 최고높이)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구 분	최고높이
지원시설1, 2	8층 이하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8층 이하	→	건축물의 최고높이
-------	---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21조(내부동선)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등 내부동선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주차장의 설치)

① 지원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며,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

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 경관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24조(건축선)

① 도로(중로1-37, 중로2-32호선) 및 대지경계로부터 3m, 대로3-5-1호선 경계로부터 5m 후퇴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방음식재를 한다.

제25조(생태면적률)

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34조를 따른다.

제2절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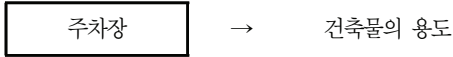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26조(건축물의 용도)

- ①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③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1	주차1	용도	권장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④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7조(건폐율)

①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 이후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건폐율
주차장	70% 이하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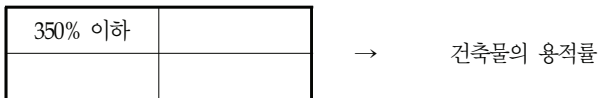


제28조(용적률)

①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 이후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용적률
주차장	350% 이하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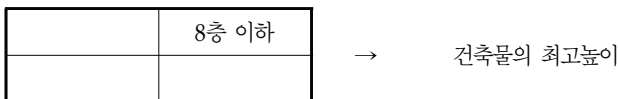


제29조(건축물의 최고높이)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구 분	최고높이
주차장	8층 이하

②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30조(건축선)

- ① 차로와 건물사이에는 건축선 3m이상 후퇴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방음식재를 한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31조(내부동선)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등 내부동선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주차장의 설치)

- ① 주차장의 설치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며,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

- 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관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4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제34조(생태면적률)

- ① 쾌적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 전체의 생태면적률은 다양한 기법(자연지반녹지, 잔디블럭, 투수블럭, 인공지반녹지 등)을 활용하여 34%이상 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제35조(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본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②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없음)

18.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사(변경없음)

번호	X좌표	Y좌표	번호	X좌표	Y좌표
1	198405.9620	178749.6370	35	198179.9199	178484.6865
2	198406.6810	178745.3750	36	198154.4595	178501.0810
3	198406.9580	178743.7340	37	198147.9628	178517.8671
4	198413.1320	178736.3280	38	198138.3580	178539.9672
5	198415.3380	178731.1750	39	198125.6899	178572.9146
6	198409.2820	178724.3380	40	198121.8532	178580.4199
7	198402.1970	178712.4550	41	198120.0673	178583.0986
8	198406.9390	178697.1940	42	198099.7040	178610.6672
9	198403.8710	178677.0570	43	198096.0989	178617.1661
10	198402.3440	178670.5540	44	198094.3847	178621.9819
11	198393.2710	178649.2420	45	198093.7276	178627.8378
12	198380.2930	178611.4300	46	198095.0707	178633.7719
13	198360.9660	178578.1680	47	198104.1570	178635.4260
14	198357.7850	178568.4720	48	198114.0190	178637.2210
15	198359.1584	178528.6135	49	198123.7220	178643.3060
16	198352.0491	178526.1653	50	198131.1740	178648.0070
17	198342.7222	178523.0570	51	198132.0771	178648.5764
18	198333.3635	178520.0427	52	198103.4134	178748.8473
19	198323.9750	178517.1214	53	198108.7890	178751.3490
20	198314.5587	178514.2951	54	198116.8540	178755.1019
21	198305.1134	178511.5618	55	198097.0800	178787.5450
22	198295.6419	178508.9237	56	198087.3950	178803.7670
23	198286.1456	178506.3806	57	198083.0600	178807.4190
24	198276.6229	178503.9326	58	198082.5050	178807.8870
25	198267.0770	178501.5805	59	198081.3860	178808.5860
26	198257.5067	178499.3233	60	198077.7950	178810.8270
27	198247.9153	178497.1613	61	198089.0400	178819.5560
28	198238.3040	178495.0965	62	198087.3430	178823.3180
29	198236.6468	178494.7580	63	198100.6140	178826.8030
30	198211.2221	178489.8227	64	198132.8620	178830.2220
31	198209.3480	178489.4786	65	198150.3510	178831.8750
32	198199.6601	178487.7996	66	198148.0980	178849.1550
33	198189.9568	178486.2167	67	198146.1960	178863.7380
34	198180.2381	178484.7318	68	198145.9960	178865.2780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번호	X좌표	Y좌표	번호	X좌표	Y좌표
69	198149.2110	178866.7620	85	198290.1690	178869.2430
70	198161.2910	178872.6210	86	198309.7000	178852.0460
71	198179.9490	178880.6770	87	198332.3180	178831.9980
72	198179.6820	178886.2570	88	198341.9750	178823.4280
73	198182.7360	178889.8150	89	198355.6080	178811.3070
74	198190.6330	178890.3410	90	198382.0110	178791.7220
75	198202.5970	178891.1390	91	198393.5730	178783.7790
76	198227.3060	178896.8440	92	198400.1930	178779.3650
77	198229.2125	178898.9744	93	198412.4299	178772.3498
78	198230.7775	178900.3835	94	198405.8715	178773.9999
79	198232.6616	178901.2408	95	198398.7744	178778.1860
80	198236.0120	178900.1240	96	198398.6780	178776.4120
81	198248.0990	178895.0060	97	198401.8500	178769.9330
82	198258.0920	178890.6490	98	198403.2380	178764.3700
83	198270.1200	178884.0280	99	198404.4890	178759.3580
84	198280.6650	178876.1370			

19.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변경없음)

가. 토지(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처분계획
합 계		95,600	100.0	
물류단지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58,994	61.7	시행자귀속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5,114	5.4	시행자귀속
	주차장	1,074	1.1	시행자귀속
공공시설용지	도로	14,849	15.6	김해시 귀속
	완충녹지	5,549	5.8	김해시 귀속
	공원	1,177	1.2	김해시 귀속
	유수지	1,072	1.1	김해시 귀속
	사면녹지	7,771	8.1	시행자귀속

나. 시설물(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규격	처분대상시설	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1-37호선	B=20m L=36m	도로구조물 및 도로의 부속물	김해시에 무상귀속	
	중로2-32호선	B=15m L=916m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김해서부경찰서에 무상귀속	

시설의 종류		규격	처분대상시설	처분계획	비고
공원	소공원	A=1,177㎡	공원시설 일체	김해시에 무상귀속	
유수지	저류시설	A=1,072㎡	저류시설 일체	김해시에 무상귀속	
녹지	완충녹지	A=3,401㎡	녹지시설 일체	김해시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A=2,148㎡			

2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청(물류공항철도과) 및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II.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진출입로 접속부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가. 사업시행자 : (기정) 주식회사 피디엠 대표이사 김명열
 (변경) 주식회사 피에스엠 대표이사 김명열
-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15번길 15(서상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목 적 : 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교차로를 설치하여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나. 개 요
 - 폭 원 : 3.25m
 - 연 장 : 227m(감속차로 59m, 가속차로 86m, 좌회전차로 70m)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물류단지계획 승인일 ~ 2024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3-3번지 일원
- 면 적 : 700㎡

6.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1	25~ 33	주간선 도로	8,570 (223)	대로1-1-1	신월지구	일반 도로		'95. 02.23	지방도 1042호선

주) ()는 확폭구간의 연장임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가. 토지(변경없음)

용지의 분류		면적(m ²)	처분계획	공급시기
도로용지	지방도1042호선 (대로3-5-1호선)	700	경상남도에 무상으로 귀속	사업 준공 후

나. 공공시설물(변경없음)

종류	규격	처분대상시설	처분계획	공급시기	
도 로	지방도1042호선 (대로3-5-1호선)	B = 0~5m	도로구조물 및 도로의 부속품	경상남도에 무상귀속	사업 준공 후
		L = 223m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김해서부경찰서에 무상귀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청(물류공항철도과) 및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4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하천공사 시행계획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비고
		시 점			종 점						
		시군	읍면	리동	시군	읍면	리동				
양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양동천	밀양	하남	대사	밀양	하남	파서	재해예방	하천정비 2.96km	2022. 05. ~ 2025. 05.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경상남도지사

└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 관계도면은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밀양	하남	양동	88	답	1,045	1,045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내길 20-1	이철규			
2	밀양	하남	양동	86-2	임	13,415	506	창원시 남양동 17 우성아파트 103동 702호	이창권			
3	밀양	하남	양동	656-1	구	6,093	1,224		국(건설부)			
4	밀양	하남	양동	124-1	묘	21,068	30	부산 서구 부민동3가 20-1	박문호			
5	밀양	하남	양동	657-5	도	3,284	7		국(건설부)			
6	밀양	하남	양동	89-1	답	284	178	밀양군 하남읍 대사리 396-6	박숙이			
7	밀양	하남	양동	89-2	구	499	1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	밀양	하남	양동	89-4	임	661	47	대사리 396-6	손진성			
9	밀양	하남	대사	562	구	6,198	19		국(건설부)			
10	밀양	하남	대사	564-6	도	2,783	392		국(건설부)			
11	밀양	하남	대사	398	답	1,777	177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5번길 44 (명장동)	이경훈			
12	밀양	하남	대사	399	답	1,392	68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99 205동 1107호 (남양동 성원2차아파트)	유우선			
13	밀양	하남	대사	417-1	답	1,848	47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113-401	하은미			
14	밀양	하남	대사	418-1	전	281	28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113-401	하은미			
15	밀양	하남	대사	418-2	구	519	5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	밀양	하남	대사	419-1	구	1,226	1,2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	밀양	하남	대사	418-3	도	3	3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38-10 산정아파트 13호	김준석			
18	밀양	하남	대사	416-1	답	73	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113-401	하은미			
19	밀양	하남	대사	400-1	답	1,950	42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1길 4-6	송주근			
20	밀양	하남	대사	401-1	답	1,207	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1길 4-6	송주근			
21	밀양	하남	대사	401-3	도	86	12		밀양시			
22	밀양	하남	대사	400-2	도	66	54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서상가길 12 에이동 307호 (수산상가아파트)	조영애			
23	밀양	하남	대사	400-3	답	13	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서상가길 12 에이동 307호 (수산상가아파트)	조영애			
24	밀양	하남	대사	417-2	도	60	6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38-10 산정아파트 13호	김준석			
25	밀양	하남	대사	408	답	1,491	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4-8 107동 401호(팔용동 벽산블루밍아파트비단지)	송정희			
26	밀양	하남	대사	417-3	답	46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113-401	하은미			
27	밀양	하남	대사	416-4	도	63	63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38-10 산정아파트 13호	김준석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군	읍 면	리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8	밀양	하남	대사	416-5	답	208	2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113-401	하은미			
29	밀양	하남	대사	416-2	구	621	62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0	밀양	하남	대사	415-1	답	502	340	387	조영규			
31	밀양	하남	대사	415-2	구	122	12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2	밀양	하남	대사	414-2	구	1,349	97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3	밀양	하남	대사	414-1	전	60	60		밀양시			
34	밀양	하남	대사	410-5	전	809	149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98-10	박성영			
35	밀양	하남	대사	411-2	구	17	17	부북면 전사포리	안희원			
36	밀양	하남	대사	413-5	도	69	42		밀양시			
37	밀양	하남	대사	413-8	창	53	36		밀양시			
38	밀양	하남	대사	413-2	구	1,078	97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9	밀양	하남	대사	413-4	창	1,076	197	389	조홍재			
40	밀양	하남	대사	422-5	도	145	28		밀양시			
41	밀양	하남	대사	422-7	도	36	8		밀양시			
42	밀양	하남	대사	422-8	답	45	6		밀양시			
43	밀양	하남	대사	422-3	답	183	5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2길 3-3	김증환			
44	밀양	하남	대사	564-5	도	60	16		국(건설부)			
45	밀양	하남	대사	422-2	구	1,223	1,22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6	밀양	하남	대사	422-4	전	83	83	파서리 355	민영돈			
47	밀양	하남	대사	413-1	도	102	61	389	조유석			
48	밀양	하남	대사	564-1	도	324	198		국(건설부)			
49	밀양	하남	대사	361	답	1,278	24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42 1010호 (우암동 우암자유3차아파트)	김인환			
50	밀양	하남	대사	359	답	648	7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42 1010호 (우암동 우암자유3차아파트)	김인환			
51	밀양	하남	대사	558-1	구	13,243	322		국(건설부)			
52	밀양	하남	대사	559-1	도	5,536	60		국(건설부)			
53	밀양	하남	대사	422-1	도	46	46	파서리 356	민영돈			
54	밀양	하남	대사	560	도	1,190	315		국(건설부)			
55	밀양	하남	대사	358-2	구	20	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6	밀양	하남	대사	358-1	답	536	133	부산 동래구 명장동 131	김종환			
57	밀양	하남	대사	358-3	구	89	8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8	밀양	하남	대사	357-1	답	896	313	부산 동래구 명장동 131	김종환			
59	밀양	하남	대사	357-2	구	89	8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0	밀양	하남	대사	산48	임	6,942	27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199-11 삼해대립타운 110동 1303호	이명천			
61	밀양	하남	대사	447-7	답	430	12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385	김정대			
62	밀양	하남	대사	447-1	구	46	4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3	밀양	하남	대사	447-117	구	43	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4	밀양	하남	과서	1144-4	구	807	74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5	밀양	하남	과서	1144-5	구	122	1		국(농림수산부)			
66	밀양	하남	과서	1142-3	장	5,169	638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61번길 26-48(도화동)	주식회사세우글로벌			
67	밀양	하남	과서	산1	임	1,992	336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48-22	제성내장주식회사			
68	밀양	하남	과서	1266	도	1,135	62		국(건설부)			
69	밀양	하남	과서	1143-1	구	370	33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0	밀양	하남	과서	1142-1	답	72	3	873	성병주			
71	밀양	하남	과서	1142-2	구	744	6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2	밀양	하남	과서	1144-2	구	760	63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3	밀양	하남	과서	1142-4	장	953	45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48-22	주식회사서울세라텍			
74	밀양	하남	과서	738-2	구	1,735	1,73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5	밀양	하남	과서	740-1	전	929	298	부산 북구 덕천2동 334-1 은호아파트 606호	이희동			
76	밀양	하남	과서	1145-3	도	49	1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11	주식회사세우글로벌			
77	밀양	하남	과서	1265-8	도	179	16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11	주식회사세우글로벌			
78	밀양	하남	과서	1146-2	창	673	190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61번길 26-48(도화동)	주식회사세우글로벌			
79	밀양	하남	과서	732-1	구	823	82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0	밀양	하남	과서	732-5	답	271	179	대사리 304	김상도			
81	밀양	하남	과서	1265-1	도	766	708		국(건설부)			
82	밀양	하남	과서	734-4	구	836	83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3	밀양	하남	과서	728-9	구	1,963	1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4	밀양	하남	과서	734-9	답	469	2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 206 101동 301호(화인태양맨션)	노승필			
85	밀양	하남	과서	739-1	전	313	180	1042	김만영			
86	밀양	하남	과서	739-3	전	218	75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빗내1길 108	박영덕			
87	밀양	하남	과서	739-4	전	447	168	명례리 758	박영목			
88	밀양	하남	과서	738-1	전	602	198	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로5길 24 (내이동)	김병철			
89	밀양	하남	과서	737-1	묘	132	68	대사리	안철문			
90	밀양	하남	과서	737-2	구	66	66	대사리	안철문			
91	밀양	하남	과서	748-1	전	1,062	14	경상남도 밀양시 수월2길 12-15 (삼문동)	노옥희			
92	밀양	하남	과서	736-1	묘	43	43	대사리	안철문			
93	밀양	하남	과서	748-8	전	1,679	911	밀양시 하남읍 과서리 1028	안화진			
94	밀양	하남	과서	735	구	3,513	3,15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5	밀양	하남	과서	750-4	전	392	206	1028	안화진			
96	밀양	하남	과서	750-2	잡	600	246	1028	안화진			
97	밀양	하남	과서	1085-3	대	664	231	1028	안화진			
98	밀양	하남	과서	1265-13	도	423	102		국(건설부)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면	리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99	밀양	하남	과서	1052-6	도	13	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0	밀양	하남	과서	1052-10	답	163	75	1046	과내동새마을회			
101	밀양	하남	과서	1052-5	대	288	4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동3리1길 9-4	김준호			
102	밀양	하남	과서	1052-7	대	254	3	1055	최돈식			
103	밀양	하남	과서	751-2	구	2,972	2,76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4	밀양	하남	과서	751-1	답	681	59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156-9	송승민			
105	밀양	하남	과서	1052-4	답	53	2	1082	이명순			
106	밀양	하남	과서	1052-9	대	376	40	1063	박윤기			
107	밀양	하남	과서	1054-1	도	301	16	1045	장팔이			
108	밀양	하남	과서	1052-1	도	23	2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9	밀양	하남	과서	1267-1	구	1,536	216		국(건설부)			
110	밀양	하남	과서	1262-1	도	6,810	593		국(건설부)			
111	밀양	하남	과서	1055-15	대	301	27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과내1길 4	김미연			
112	밀양	하남	과서	1055-13	대	36	36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과서리 1055-22	김영혜			
113	밀양	하남	과서	1055-14	도	60	60		국(기획재정부)			
114	밀양	하남	과서	1055-2	구	3	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15	밀양	하남	과서	1055-12	대	320	105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과서리 1055-22	김영혜			
116	밀양	하남	과서	1055-28	대	16	7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과내길 15	김영혜			
117	밀양	하남	과서	1055-21	대	254	1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과내길 17	김철영			
118	밀양	하남	과서	1055-11	도	23	23		국(기획재정부)			
119	밀양	하남	과서	1055-5	도	50	16		국(기획재정부)			
120	밀양	하남	과서	1045-3	도	17	8	1055	김종기			
121	밀양	하남	과서	1045-1	대	353	7	1025	김영환			
122	밀양	하남	과서	1046-3	답	17	17	1046	과내동새마을회			
123	밀양	하남	과서	1047-3	도	20	20	밀양읍 용평리 75	허수			
124	밀양	하남	과서	1047-1	대	440	117	1046	과내동새마을회			
125	밀양	하남	과서	1047-2	구	1,028	1,02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26	밀양	하남	과서	1265-10	도	410	216		국(건설부)			
127	밀양	하남	과서	1051-1	구	69	4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28	밀양	하남	과서	1051-2	임	208	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1 307동 1204호 (진영자이아파트)	송승민			
129	밀양	하남	과서	777	답	11,077	247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156-9	송승민			
130	밀양	하남	과서	773-2	도	36	36	1082	김종탁			
131	밀양	하남	과서	774-1	도	23	23	부산 동래구 은천동 152-18	김종성			
132	밀양	하남	과서	775-1	도	23	23	1082	김종탁			
133	밀양	하남	과서	776-1	도	13	13	1082	김종탁			
134	밀양	하남	과서	778-7	도	10	7		국(건설부)			
135	밀양	하남	과서	794-2	도	40	29	1082	김종탁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36	밀양	하남	파서	793	답	2,440	259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450	공보옥			
137	밀양	하남	파서	1049-3	도	7	7	1067	김종철			
138	밀양	하남	파서	1049-1	구	50	5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39	밀양	하남	파서	1048-1	구	271	26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0	밀양	하남	파서	1018-2	구	675	65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1	밀양	하남	파서	1020-8	대	56	2	1046	과내동새마을회			
142	밀양	하남	파서	1018-5	대	47	14	1046	과내동새마을회			
143	밀양	하남	파서	795-1	구	1,791	1,29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4	밀양	하남	파서	1018-4	답	3,475	33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545-4 경남맨션 1613	장성호			
145	밀양	하남	파서	798-2	구	1,527	1,0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6	밀양	하남	파서	798-3	도	668	82		국(건설부)			
147	밀양	하남	파서	1249-5	천	4,291	216		국(건설부)			
148	밀양	하남	파서	800-1	전	79	13	1220	김종진			
149	밀양	하남	파서	800-2	구	869	83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0	밀양	하남	파서	1263	도	436	246		국(건설부)			
151	밀양	하남	파서	889-2	구	245	6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2	밀양	하남	파서	888	구	555	52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3	밀양	하남	파서	800-3	도	66	31	1220	김종진			
154	밀양	하남	파서	801-2	도	420	38		국(건설부)			
155	밀양	하남	파서	801-1	구	949	93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6	밀양	하남	파서	803-1	구	278	25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7	밀양	하남	파서	887-1	구	1,104	9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8	밀양	하남	파서	887-2	답	76	5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내2길 5-9	박수흠			
159	밀양	하남	파서	885-2	구	744	47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0	밀양	하남	파서	883-2	구	787	23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1	밀양	하남	파서	1261-1	구	202	7		국(건설부)			
162	밀양	하남	파서	882-2	구	572	7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3	밀양	하남	파서	881-2	구	549	8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4	밀양	하남	파서	1255-1	도	2,035	7		국(건설부)			
165	밀양	하남	파서	880-1	구	476	25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6	밀양	하남	파서	879-2	구	1,514	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7	밀양	하남	파서	871-1	구	1,064	20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8	밀양	하남	파서	379-1	구	750	14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9	밀양	하남	파서	359-2	구	2,370	39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0	밀양	하남	파서	359-4	도	440	7		민영돈			
171	밀양	하남	파서	1249-3	천	3,494	10		국(건설부)			
172	밀양	하남	파서	360-2	구	1,428	20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3	밀양	하남	파서	1251-9	도	3,778	59		국(건설부)			
174	밀양	하남	파서	368-1	구	245	2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5	밀양	하남	파서	산33	임	496	32		김종만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군	읍 면	리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76	밀양	하남	과서	320-3	구	2,638	36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7	밀양	하남	과서	211-5	구	5,302	40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8	밀양	하남	과서	1251-7	도	149	14		국(건설부)			
179	밀양	하남	과서	213-3	구	2,757	17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0	밀양	하남	과서	211-2	구	1,078	2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1	밀양	하남	과서	1251-4	도	631	8		국(건설부)			
182	밀양	하남	과서	210-3	구	3,458	46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3	밀양	하남	과서	1254	구	1,015	74		국(건설부)			
184	밀양	하남	과서	219-2	전	4,423	46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5-9	심진식			
185	밀양	하남	과서	122-1	구	2,919	1,05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6	밀양	하남	과서	1253-1	도	807	103		국(건설부)			
187	밀양	하남	과서	171	구	2,254	88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8	밀양	하남	과서	1269-1	구	1,352	119		국(건설부)			
189	밀양	하남	과서	172-2	도	532	15	354	민우식			
190	밀양	하남	과서	170-6	도	1,861	164		국(건설부)			
191	밀양	하남	과서	176-2	제	245	7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92	밀양	하남	과서	1251-18	도	220	99		국(건설부)			
193	밀양	하남	과서	181-3	제	1,815	4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94	밀양	하남	과서	170-3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95	밀양	하남	과서	1251-17	도	35	35		국(건설부)			
196	밀양	하남	과서	169-3	도	344	38		국(건설부)			
197	밀양	하남	과서	99-6	답	2,227	199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29-12 부민주택 2-605	박근영			
198	밀양	하남	과서	168-2	도	72	72		국(농림수산부)			
199	밀양	하남	과서	177-2	구	106	106		국(농림수산부)			
200	밀양	하남	과서	176-1	구	450	27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01	밀양	하남	과서	98-9	도	1,173	119		국(건설교통부)			
202	밀양	하남	과서	181-2	구	628	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03	밀양	하남	과서	98-17	도	298	12		국(건설교통부)			
204	밀양	하남	과서	177-1	구	291	16		국(농림수산부)			
205	밀양	하남	과서	168-1	도	643	28		국(농림수산부)			
206	밀양	하남	과서	99-11	도	1,149	1		국(건설교통부)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천시장(지역경제과)
-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2. 공사내용

- 해수공급시설 설치 1식

3. 위 치

- 사천시 서금동 127-6 번지 지선 공유수면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2. 5. 17.
- 준공예정일 : 2023. 6. 30.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자 : 2022. 5. 17.

공 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884호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컬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글로벌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 1. 허가번호 : 제2022-001호
-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컬협회
- 3. 사무소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224번길 40, 4층
- 4. 대 표 자 : 박수정
- 5. 설립목적
 - 대한민국 정부 기관 및 준정부기관 연계 민관협력 ODA 사업
 - 국민외교 기반 구축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주민 참여 확대 사업
 - 저개발국가 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 주체 참여 확대 사업
 - 국제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

● **경상남도 공고 제2022-886호**

2022년도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중단 명령 공시송달 공고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에 따라 2022.3.29. 0시부터 경상남도의 그 밖의 어업(대형기저 등 기타어업)에 대하여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중단 되어 그 명령서를 2회(이상)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수산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포획중단 명령 어선 내역(명령서 미수령자)

연번	허가어선	성명	주업종	명령내용
1	제2016*진호	정태건	근해통발어업 제2018-28호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 중지
2	제707*덕호	유동주	근해통발어업 제2021-2호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 중지
3	제7*복호	서증원	서남해구의끌이중형저인망 제2018-6호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 중지
4	제203*광호	김성봉	근해자망어업 제2018-11호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 중지
5	덕*호	조찬욱	근해자망어업 제2018-33호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 중지

2. 명령내용(상세)

-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 및 위판은 일체 불가하며, 조업 중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흔획) 시 모든 개체를(중량 무관) 즉시 해상 방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획 중단 명령 위반 시 「수산업법」 제43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어업·해기사면허 각각 20일 정지) 및 사법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3. 기타

- 「수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2-887호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지정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제31호	가야환경분석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번길 11, 3층	2022.04.27.

● **경상남도 공고 제2022-895호**

방치 선박 제거 공고

우리 도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이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 고 기 간 : 2022. 5. 19. ~ 2022. 6. 8. 까지

2. 보관 및 폐기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4-10번지 지선 공유수면

3. 폐 기 처 리 일시 : 공고기간 만료이후

4. 폐 기 처 리 대 상 : 2개소(붙임내역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항만운영담당(☎055-211-3955)로 연락바랍니다.

공고 제2022 - 895 호

방치 선박 제거 공고

발 견 장 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4-10번지 지선 공유수면		
선 박	선명(명칭)	사랑(추정)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 원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 / 약 10톤 추정
관 리 청		경남도청	관 리 번 호	제2022 - 001호
제거예정일자		2022. 6. 8.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보증금		해 당 없 음		

방 치 선 박
전 경 사 진



위 대상은 방치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6월 8일까지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항만운영담당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담당자 :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항만운영담당(055-211-3955)

공고 제2022 - 895 호

방치 선박 제거 공고

발 견 장 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4-10번지 지선 공유수면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 원	선 적 항	미상	톤 수	튜브형 어선 / 약 3톤 추정
관 리 청	경남도청		관 리 번 호	제2022 - 002호
제거예정일자	2022. 6. 8.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보증금	해 당 없 음			

방 치 선 박
전 경 사 진



위 대상은 방치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6월 8일까지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항만운영담당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담당자 :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항만운영담당(055-211-3955)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03호

항만공사 준공 공고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장승포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항만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가. 성명(또는 명칭) : 경상남도지사
-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 가. 항만명 : 장승포항
- 나. 사업의 종류 : 일반항 건설

3. 사업의 목적 : 항만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해상수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 가. 사 업 명 : 장승포항 개발사업
- 나. 장 소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 다. 규 모 : 어선부두 L=251m, 지원시설 L=92m
- 라. 사업기간 : 2019. 1. 14. ~ 2022. 4. 13.
- 마. 사업방법 : 해양수산부 권한위임 시행
- 바. 사 업 비 : 9,906백만원

5. 지목 및 면적

구분	위 치			지목	면적(m ²)	비 고
	시군	읍면동	지번			
지원시설	거제	장승포	685-4	잡종지	1,965.9	신규등록측량 (‘22.5.10.)
어선부두	거제	장승포	718-1	잡종지	5,970.6	

6.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2. 4. 13.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05호

2022/2023년도 경남도 외해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경남도 “2022/2023년도 경남도 외 해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 다 음 -

□ 2022/2022년도 경남도 외해양식장 이용개발계획

○ 개발계획 개요

어업의 명칭	양식 방법	양식물	면적 (건/ha)	수면 위치	개발사유
외해 양식업	외해 가두리식	어류	1 / 5.0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지선	재해대응 중층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어장 신규개발

○ 개발 제한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해당 외해면허양식장은 중층침설식 가두리 시설로 양식시설 제한

2) 내만 가두리양식장을 포기하는 가두리 시설과 동일면적 내로 시설면적 제한

※ 재해대응 중층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은 내만가두리 양식장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고 외해양식장에 수심조절이 가능한 중층침설식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외해양식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22. 5. 19. ~ 6. 20일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와 관련사항(개발수면 등)은 경남도 수산자원과 스마트양식담당(☎055-211-4023)으로 문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 계획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
2.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4.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5.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 각 1부
6.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 1부

210mm×297mm[백상지(80g/㎡)]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08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리사항	
				폐업일	폐업사유
맑은샘화장품	경남 2020-제163호	김세나	경상남도 통영시 비석1길 49, 103동 103호 (태평동, 주영라이프)	2022-05-02	자진폐업
인셀덤 grace beauty	경남 2021-제33호	안보라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50, 102동 140호 (별리동, 비룡광장타운)	2022-05-02	자진폐업
자현	경남 2021-제90호	이선아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2로4길 10, 106동 104호 (아주동, 대동 다숲 아파트 1단지)	2022-05-02	자진폐업
인셀덤 마리골드 대리점	경남 2021-제199호	황은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73, 101동 801호(오동동, 서광아침의빛)	2022-05-02	자진폐업
프리미 인셀덤	경남 2022-제5호	정남주	경상남도 진주시 축석로211번길 4 (수정동)	2022-05-02	자진폐업

2. 처리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3. 문의처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일자리경제과
(☎ 055-211-3354)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12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550429	주식회사 메타정보통신	김병택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60번길 17(칠암동)	2022. 5. 17.(화)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18호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변경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변경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변경사항			적용일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인셀덤 더샵대리점	경남 2022-제52호	이명화	소재지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60번길 9-11(도계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8번길 20, 201호(소답동, 한효맨션)	2022-05-10
인셀덤 거창점	경남 2022-제78호	민현욱	소재지 변경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삼교로1길 6-1, 305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례길 189-20	2022-05-10
인셀덤 조아 대리점	경남 2022-제31호	장미영	업체명 변경	인셀덤 빅크라운 대리점	인셀덤 조아 대리점	2022-05-13
			소재지 변경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8길 22-55, 308호(무전동, 진우하이빌 3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90, 보광빌딩 3층 301호	

2. 처리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3. 문 의 처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도청 일자리경제과
(☎ 055-211-3354)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32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주)동화기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27, 204호	제38호	2022. 5. 9.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35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550430	위고(WEGO)	송지숙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출발로 52, 7(자산동)	2022.5.17.

● 경상남도 공고 제2022-938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550431	(주)부경전기통신	박진환	김해시 분성로454번길9 (삼정동,백제테파트)	2022.5.17.

알 림

● **창원시 고시 제2022-98호**

창원 도시계획시설(감계2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5-296호(2015.12.24.)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2-86호(2022.04.28.)로 공
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감계2근린공원 시설개선공사)」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
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창 원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8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창원도시계획시설(감계2근린공원)사업
- 나. 명 칭 : 감계2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1,000㎡
- 나. 규 모 : 게이트볼장 차양시설 594㎡, 관리동 43㎡, 축구수로관 50m

공 원 명	시설의세분	공원면적(㎡)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	비 고
감계2근린공원	근린공원	28,002.2	1,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창원시장(의창구 산립농정과)
- 나.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사

구 분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합 계				28,002.2	1,000.0		
1	북면 감계리	286 외 6필지	공, 도, 유	28,002.2	1,000.0	창원시	

7. 관계도서 : 실음생략(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비치)

● **통영시 고시 제2022-76호**

통영 도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교부 고시 제91-679호(1991. 11. 14.)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충무시 고시 제1993-11호(1993. 01. 14.)로 고시된 도남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통영시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19일

통 영 시 장

1. 통영 도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 결정조사 : 붙임

2. 관계도면 : 실음(계재)생략

3. 서류열람 : 통영시 건축과(☎055-650-5743)

[붙임] 통영 도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업의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의 명칭 : 통영 도남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의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통영 도남 주거환경정비구역	통영시 도남동 190번지 일원	20,030	감) 20,030	-	건설부 고시 제679호 (1991.11.14.)

- 정비구역 해제사유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1991년 결정 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건설부고시 제91-679호(1991.11.14.))가 지정 이후 약 30년이 지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자

-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시행자
 - 정비기반시설 : 통영시장
 - 주택개량 : 토지 등 소유자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030	감) 20,030	-	
주택용지	13,516	감) 13,516	-	
공공시설용지	6,514	감) 6,514	-	
도시계획도로	3,112	감) 3,112	-	
기준도로	1,652	감) 1,652	-	
동사무소	661	감) 661	-	
어린이놀이터	319	감) 319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탁아소	304	감) 304	-	
교회	215	감) 215	-	
새마을금고	30	감) 30	-	
운동장	221	감) 221	-	

5.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030	-	20,03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55	-	11,855	59.2	
준주거지역	8,141	-	8,141	40.6	
자연녹지지역	5	-	5	0.1	
보전녹지지역	29	-	29	0.1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12.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해당없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없음

● 통영시 고시 제2022-77호

통영 동피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245호(1992. 05. 2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충무시 고시 제1993-201호(1993. 11. 18.)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통영시 고시 제2002-703호(2002. 12. 07.)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된 『통영 동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통영시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19일

통 영 시 장

- 1. 통영 동피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정비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 2. 관계도면 : 실음(계재)생략
- 3. 서류열람 : 통영시 건축과(☎055-650-5743)

[붙임] 통영 동피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정비계획(변경)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업의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의 명칭 : 통영 동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의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통영 동피랑 주거환경정비구역	통영시 동호동 118-1번지 일원	20,379	증) 557	20,936	건설부 고시 제245호 (1992.05.21.)

- 정비구역 변경사유
 - 2002년 가로망 신설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이후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및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기간

- 기정 : 1993년 ~ 2004년 12월 31일
- 변경 : 1993년 ~ 2023년 12월 31일

4. 정비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자

- 시행방법 : 현지개발방식
- 시 행 자
 - 정비기반시설 : 통영시장
 - 주택개발 : 토지 등 소유자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379	증) 557	20,936	100.0	
주택용지	15,125	감) 1,380	13,745	65.8	
단독주택용지	12,840	증) 905	13,745	65.8	
공동주택용지	2,285	감) 2,285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시설용지	5,254	증) 1,937	7,191	34.2	
도시계획도로	4,541	증) 681	5,222	24.9	도시계획시설
보행자도로	411	증) 434	845	4.0	정비기반시설
어린이놀이터	149	감) 149	-	-	
노유자시설	153	감) 3	150	0.7	공동이용시설
경관광장	-	증) 800	800	3.8	정비기반시설
체육시설	-	증) 68	68	0.3	공동이용시설
마을공동구관장	-	증) 106	106	0.5	

6.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379	증) 557	20,93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10	증) 1,102	20,612	98.5	
일반상업지역	869	감) 545	324	1.5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2	8	국지도로	144	중로3-18	소로3-30	일반도로	-	72.08.26	
기정	소로	2	53	8	국지도로	27	중로1-2	소로3-36	일반도로	-	72.08.26	
변경	소로	2	53	8	국지도로	33	중로1-2	소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442	소로2-52	소로3-36	일반도로	-	72.08.26	
변경	소로	3	30	6	국지도로	442	소로2-52	소로2-5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202	소로2-52	소로3-30	일반도로	-	91.01.05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53	소로2-53	○ 노선 연장 증가 - 규모 : L = 27m → 33m(증 6m)	○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기존 노선 연장 증가
소로3-30	소로3-30	○ 종점 도로번호 변경	○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종점 도로번호 변경

8.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보행자도로	태평동, 동호동 일원	411	증) 434	845	
경관광장	태평동 449-11번지 일원	-	증) 800	800	동포루

9.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3	증) 171	324	
노유자시설	동호동 118번지 일원	153	감) 3	150	
체육시설	태평동 449-24번지 일원	-	증) 68	68	주민운동시설
마을공동구관장	동호동 121-7번지 일원	-	증) 106	106	

10.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용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마을공동구관장	
건폐율 용적률 높이및층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및 고도지구에 정하는 바에 따름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지구내 경관요소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및 자원의 질적 상태를 유지
 - 기존 동포루를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확보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인공 또는 자연비탈면 안정화를 도모하여 수해에 대비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하여 계획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1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5	동피랑 지구단위계획구역	통영시 동호동 118-1번지 일원	-	증) 20,936	20,936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936	-	20,93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12	-	20,612	98.5	
일반상업지역	324	-	324	1.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2	8	국지도로	144	중로3-18	소로3-30	일반도로	-	72.08.26	
기정	소로	2	53	8	국지도로	27	중로1-2	소로3-36	일반도로	-	72.08.26	
변경	소로	2	53	8	국지도로	33	중로1-2	소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442	소로2-52	소로3-36	일반도로	-	72.08.26	
변경	소로	3	30	6	국지도로	442	소로2-52	소로2-5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202	소로2-52	소로3-30	일반도로	-	91.01.05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53	소로2-53	○ 노선 연장 증가 - 규모 : L = 27m → 33m(증 6m)	○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기존 노선 연장 증가
소로3-30	소로3-30	○ 종점 도로번호 변경	○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종점 도로번호 변경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14,869	-		-	
-	BL1	11,994	1	동호동 118-1번지 일원	10,870	단독주택용지
			2	태평동 449-11번지 일원	800	경관광장
			3	동호동 121-7번지 일원	106	마을공동구관장
			4	동호동 118번지 일원	150	노유자시설
			5	태평동 449-24번지 일원	68	체육시설
-	BL2	2,875	1	동호동 124-3번지 일원	2,875	단독주택용지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1-1, BL2-1	-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고도지구에 정하는 바에 따름
		용 적 률		
		높이 및 층수		
		배치		-
		형태		• 민간부문 자율형태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환경친화적 색채(권장)
건축선		-		
BL1-3	동호동 121-7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의 마을공동구관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고도지구에 정하는 바에 따름
		용 적 률		
		높이 및 층수		
		배치		-
		형태		• 민간부문 자율형태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환경친화적 색채(권장)
건축선		-		
BL1-4	동호동 118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 나목의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고도지구에 정하는 바에 따름
		용 적 률		
		높이 및 층수		
배치		-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1-4	동호동 118번지 일원	형태	• 민간부문 자율형태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환경친화적 색채(권장)
		건축선	-

1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을 따름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재해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건축물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가. 가로등 설치계획
 - 현황조사 결과 본 대상지 내 가로등은 구역주변에 충분히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범 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 나. 방법·순찰계획
 - 대상지 입구에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순찰이 용이하고, 유관기관(시청, 경찰서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
 - 공가 발생 시 폐이불, 폐가구 등을 처리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부에 공가안내문 부착 및 외부출입을 차단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해당없음

● 통영시 고시 제2022-79호

통영도시관리계획(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관내 도남동 190번지 일원의 도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통영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19일

통 영 시 장

1. 통영도시관리계획(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실음(계재)생략

3. 서류열람 : 통영시 도시과(☎055-650-5612)

[붙임1] 통영도시관리계획(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6	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남동 190번지 일원	-	증) 19,735	19,735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19,735㎡	· 통영 도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에 따라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를 통해 기존시가지를 보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735	-	19,735	100.0	
준주거지역	8,125	-	8,125	41.2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10	-	11,610	58.8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9,735	100.0	
주거용지	18,935	95.9	
도로	800	4.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11	6	국지 도로	139	도남동 중로1-3	도남동 186-4답	일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111	· 노선 신설 -L=139m, B=6m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개설된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노선 신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적 (m ²)	위 치	비 고
계	19,735	-	-
BL1	6,717	도남동 194-3번지 일원	주거용지
BL2	6,902	도남동 191-1번지 일원	주거용지
BL3	4,353	도남동 165번지 일원	주거용지
BL4	963	도남동 132-8번지 일원	주거용지
-	800	도남동 184-2번지 일원	도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L1	도남동 194-3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 주거지역에 정하는 바에 따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나목 봉안당
BL3	도남동 165 일원	건폐율	•6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정하는 바에 따름
			•2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정하는 바에 따름
			•250% 이하	
		높이 및 층수	•건축법 및 통영시 건축조례에 따름	
		배치	•남향, 남동향, 남서향 배치 (권장)	
		형태	•민간부문 자율형태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환경친화적 색채 (권장)	
건축선	•건축법 및 통영시 건축조례에 따름			
BL2	도남동 191-1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준주거지역에 정하는 바에 따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나목 봉안당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 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BL4	도남동 132-8 일원	건폐율	•7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준주거지역에 정하는 바에 따름
			•3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준주거지역에 정하는 바에 따름
			•350% 이하	
		높이 및 층수	•건축법 및 통영시 건축조례에 따름	
		배치	•남향, 남동향, 남서향 배치 (권장)	
		형태	•민간부문 자율형태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환경친화적 색채 (권장)	
건축선	•건축법 및 통영시 건축조례에 따름			

● 통영시 공고 제2022-884호

통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 공고

우리시 명정동 산4-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시청 도시과 및 해양개발과에 비치합니다.

2022년 5월 19일

통 영 시 장

□. 인가신청의 요지

1. 사업시행지 : 통영시 명정동 산4-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
- 명칭 :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유화시설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9,615㎡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1,389.16㎡ / 2,316.31㎡(지상 2층)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통영시장(해양개발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 붙임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공람일시 및 장소

1.. 공람기간 : 공보게 제일로부터 15일간

2.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통영시청 도시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34) 및 해양개발과(055-650-0872)에 문의 바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m ²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통영시 명정동	638	전	463	127	통영시					
2		639	전	116	116	통영시					
3		640	전	618	618	통영시					
4		641	전	386	386	통영시					
5		642	전	1,471	1,471	국 (기획재정부)					
6		643	전	331	331	통영시					
7		644	전	78	78	통영시					
8		644-1	도	1,834	326	통영시					
9		646	도	519	98	통영시					
10		649	전	39	39	통영시					
11		649-1	도	50	50	통영시					
12		650	전	694	694	통영시					
13		651	전	53	53	통영시					
14		652	전	231	231	통영시					
15		1144-5	구	3,381	1,117	국 (국토교통부)					
16		산4-18	입	13,873	3,843	통영시					
17		산4-19	도	37	37	통영시					

● 통영시 공고 제2022-898호

통영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 공고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합니다.

2022년 5월 19일

통 영 시 장

□. 인가신청의 요지

1.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용남 원평(적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9,695㎡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통영시장(도시과)
- 주 소 :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5. 사업기간

- 당 초 : 2017. 6. 22. ~ 2022. 6. 21.
- 변 경 : 2017. 6. 22. ~ 202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 붙임

□. 열람일시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2.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통영시청 도시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32)에 문의 바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사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권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58필지		85,906	63,500						
1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91-5	답	102	1	통영시					
	변경		791-5	답	102	1	통영시					
2	기정		791-3	도	26	3	통영시					
	변경		791-3	도	26	3	통영시					
3	기정		1204	도	875	7	국토교통부					
	변경		1204	도	875	7	국토교통부					
4	기정		615-2	전	1355	8	이홍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7				
	변경		615-2	전	1355	8	이홍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7				
5	기정		615-3	대	360	360	김길선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86, 502동1702호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변경		615-3	대	360	360	김길선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1길 1				근저당권 설정
6	기정	615-1	도	30	30	통영시		남창원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1			
	변경	615-1	도	30	30	통영시						
7	기정	616-3	대	190	190	조철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48-1					
	변경	616-3	대	190	190	통영시						
8	기정	616-1	대	223	36	김영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416-25, 801호(동남전원맨션2차)					근저당권 설정
	변경	616-6	대	36	36	김영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416-25, 801호(동남전원맨션2차)	통영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6(복신동)			근저당권 설정
9	기정	625-7	대	255	104	박정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7	통영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6(복신동)			
	변경	625-7	대	255	104	박정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7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집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3	대	329	329	정계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1길 13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달포큰길6	근저당권 설정	
	변경		625-3	대	329	329	김미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3				
11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8	대	157	157	정재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				
	변경		625-8	대	157	157	통영시					
12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2	대	307	307	정문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2				
	변경		625-2	대	307	307	정문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2				
13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1	대	127	127	김영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0-2	용남단위농업협동조합	통영군 용남면 동달리 854-3	근저당권 설정	
	변경		625-1	대	127	127	통영시					
14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6-2	대	320	38	손접이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6-2				
	변경		626-2	대	320	38	김옥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1길 27-31				
15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9	대	190	190	천영식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5-9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근저당권 설정	
	변경		625-9	대	190	190	통영시					
16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2	대	413	5	박옥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288-2 동림그린파크 102-203				
	변경		702	대	413	5	박옥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288-2 동림그린파크 102-203				
17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4-2	대	159	159	김동균	서울 중랑구 상봉동 63 건영2차아파트 212동 404호				
	변경		704-2	대	159	159	통영시					
18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3-1	도	10	10	통영시					
	변경		703-1	도	10	10	통영시					
19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3-2	대	182	182	조재연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3-2				
	변경		703-2	대	182	182	통영시					
20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8-2	도	7	5	통영시					
	변경		708-2	도	7	5	통영시					
21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8-3	도	33	5	통영시					
	변경		708-3	도	33	5	통영시					
22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92-2	도	30	12	통영시					
	변경		692-2	도	30	12	통영시					
23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8-1	대	352	352	정태식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51				
	변경		708-1	대	352	352	통영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4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92-1	대	301	5	정광혁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92-1				
	변경		692-1	대	301	5	정광혁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92-1				
25	기정		709-6	도	294	294	통영시					
	변경		709-6	도	294	294	통영시					
26	기정		691	대	357	357	엄갑연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277-10				
	변경		691	대	357	357	통영시					
27	기정		681	묘	707	66	김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117동402호				
							김임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60-14				
	변경						김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632현대아파트				
							김임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804-14				
28	기정	718-3	도	66	66	통영시						
	변경	718-3	도	66	66	통영시						
29	기정	718-2	대	195	191	배홍안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18-2					
	변경	718-2	대	195	191	배근실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건유1길 58, 201동 806호 (동원로알듀크아파트)					
30	기정	718-6	전	241	164	조석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2길 49-1	통영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20-5	근저당권 설정		
								통영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1-2	지상권 설정		
	변경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2길 49-1	통영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18-5	근저당권 설정		
								통영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1437-2	지상권 설정		
31	기정	718-1	대	137	137	정성열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613					
	변경	718-1	대	137	137	통영시						
32	기정	719	대	264	264	박수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08-86					
	변경	719	대	264	264	통영시						
33	기정	726	대	179	179	도미정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4 옥포5차덕산타운 503동 1506호					
	변경	726	대	179	179	도미정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74 옥포5차덕산타운 503동 1506호					
34	기정	729-2	도	43	43	통영시						
	변경	729-2	도	43	43	통영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5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27-1	대	195	195	김광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27-1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근저당권 설정	
	변경		727-1	대	195	195	김광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27-1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근저당권 설정	
36	기정		729-4	대	61	27	반주희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291-3 현대아파트 103동 1407호				
	변경		729-6	대	27	27	통영시					
37	기정		729-3	대	166	9	김정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29-3				
	변경		729-3	대	166	9	김정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29-3				
38	기정		737-2	도	26	26	통영시					
	변경		737-2	도	26	26	통영시					
39	기정		729-1	대	619	61	반주희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291-3 현대아파트 103동 1407호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2	근저당권 설정	
	변경		729-5	대	61	61	통영시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2	지상권 설정	
40	기정	737-1	답	192	46	반주희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291-3 현대아파트 103동 1407호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2	근저당권 설정		
	변경	737-3	답	46	46	통영시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2	지상권 설정		
41	기정	736-2	대	321	66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851-1					
	변경	736-2	대	321	66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851-1					
42	기정	1196-2	도	179	93	국토교통부						
	변경	1196-2	도	179	93	국토교통부						
43	기정	미등기	도	342	216	국유지						
	변경	738-20	도	335	216	국유지						
44	기정	736-1	대	119	28	정광윤	충무시 북신동 661-4 거송뉴웰드맨션 106호					
	변경	736-9	도	28	28	통영시						
45	기정	736-4	잡	164	26	정광윤	북신동 661-1 거송뉴웰드맨션 106호					
	변경	736-4	도	26	26	통영시						
46	기정	736-5	도	237	1	통영시						
	변경	736-5	도	237	1	통영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7	기정		736-3	도	79	79	용남단위농업협동조합	통영군 용남면 동달리 854-3				
	변경		736-3	도	79	79	용남단위농업협동조합	통영군 용남면 동달리 854-3				
48	기정		738-14	구	136	10	국토교통부					
	변경		738-14	구	136	10	국토교통부					
49	기정		738-6	도	690	6	국토교통부					
	변경		738-6	도	690	6	국토교통부					
50	기정		738-9	대	44	27	통영시					
	변경		738-9	대	44	27	통영시					
51	기정		738-2	대	132	40	김장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588				
	변경		738-2	대	132	40	김장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588				
52	기정		738-10	대	5	5	김복도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17				
	변경		738-10	대	5	5	황춘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1길 74				
53	기정	통영시 용남면	738-3	대	127	32	김복도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17				
	변경		738-3	대	127	32	황춘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1길 74				
54	기정	원평리	727-2	도	3	3	통영시					
	변경		727-2	도	3	3	통영시					
55	기정		717-3	대	59	55	김복도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17				
	변경		717-3	대	59	55	황춘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1길 74				
56	기정		1197	구	982	134	농림수산부					
	변경		1197	구	982	134	농림수산부					
57	기정		738-1	답	662	27	김민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57				
	변경		738-1	답	662	27	김민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2길 54-8				
58	기정		717-1	전	192	192	김기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19				
	변경		717-1	전	192	192	통영시					
59	기정		738-18	답	993	23	김민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2길 54-8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근저당권 설정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지상권 설정	
	변경		738-18	답	993	23	김민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2길 54-8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근저당권 설정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지상권 설정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0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17-2	도	245	245	통영시						
	변경		717-2	도	245	245	통영시						
61	기정		716-2	도	23	23	통영시						
	변경		716-2	도	23	23	통영시						
62	기정		716-1	대	192	192	조윤조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46					
	변경		716-1	대	192	192	조윤조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46					
63	기정		711-3	도	20	20	통영시						
	변경		711-3	도	20	20	통영시						
64	기정		711-1	답	360	15	이주석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6					
	변경		711-1	답	360	15	이주석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6					
65	기정		710-3	도	3	3	통영시						
	변경		710-3	도	3	3	통영시						
66	기정		710-1	답	284	7	김태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289-2					
	변경		710-1	답	284	7	김갑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110동 802(원앙마을 1단지부영아파트)					
67	기정		709-1	도	3	3	통영시						
	변경		709-1	도	3	3	통영시						
68	기정		710-4	답	209	47	김재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57					
	변경		710-4	답	209	47	김재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57					
69	기정		709-5	답	155	155	김정광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94					
	변경		709-5	답	155	155	김정광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94					
70	기정	709-2	대	233	233	조옥식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9-1						
	변경	709-2	대	233	233	조옥식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9-1						
71	기정	709-3	대	267	68	김정광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9-3						
	변경	709-3	대	267	68	김정광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9-3						
72	기정	709-7	도	43	27	통영시							
	변경	709-7	도	43	27	통영시							
73	기정	1201	구	536	28	농림수산부							
	변경	1201	구	536	28	농림수산부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74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8-4	대	347	347	정종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2길 47-7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6 (북신동)	근저당권 설정	
	변경		708-4	대	347	347	통영시					
75	기정		708-8	대	7	7	서자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2길 47-5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근저당권 설정	
	변경		708-8	대	7	7	서자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적촌2길 47-5	용남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1-1	근저당권 설정	
76	기정		705-2	대	238	238	김접이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50 덕산3차베스트타운 302-607				
	변경		705-2	대	238	238	통영시					
77	기정		705-6	대	215	215	강문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87 (팔용동)				
	변경		705-6	대	215	215	강문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87 (팔용동)				
78	기정		705-4	도	23	23	통영시					
	변경		705-4	도	23	23	통영시					
79	기정		705-7	대	175	175	김정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05-8				
	변경		705-7	대	175	175	통영시					
80	기정		705-5	도	36	4	통영시					
	변경		705-5	도	36	4	통영시					
81	기정		1181-1	도	3897	800	국토교통부					
	변경		1181-1	도	3114	800	국토교통부					
82	기정	622-2	대	301	27	김용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878-1 주공아파트 113동 307호					
	변경	622-2	대	301	27	김용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878-1 주공아파트 113동 307호					
83	기정	624-3	도	26	26	김전용이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4-1					
	변경	624-3	도	26	26	김전용이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4-1					
84	기정	624-1	대	261	261	김수성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4-1					
	변경	624-1	대	261	261	김수성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24-1					
85	기정	618-3	대	311	32	김추수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800 거제더샵101-1702	신현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1길 23(고현동)	근저당권 설정		
	변경	618-3	대	311	32	김추수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800 거제더샵101-1702					
86	기정	617-2	도	96	84	통영시						
	변경	617-2	도	96	84	통영시						
87	기정	625-5	도	27	27	통영시						
	변경	625-5	도	27	27	통영시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일련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8	기정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17-1	전	264	251	김종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18-8				
	변경		617-1	전	264	251	김광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49, 106동 103호 (광안동,비치-그린아파트)				
89	기정		617-4	대	119	119	유용택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17				
	변경		617-4	대	119	119	통영시					
90	기정		618-7	답	333	95	김수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618-6				
	변경		618-16	답	95	95	통영시					
91	기정		617-3	도	7	7	통영시					
	변경		617-3	도	7	7	통영시					
92	기정		618-14	도	21	10	통영시					
	변경		618-14	도	21	10	통영시					
93	기정	618-10	도	96	44	통영시						
	변경	618-10	도	96	44	통영시						
94	기정	1203-3	구	860	27	농림수산부						
	변경	1203-3	구	860	27	농림수산부						

● 사천시 고시 제2022-100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①:취수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57호(2022.3.17.)로 최초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①:취수시설)에 대하여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서금동 127-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①:취수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해수공급시설 펌프장 기계실(7.6m*4.5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사천시장(지역경제과)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2.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055-831-3058), 도시과(☎055-831-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사천시 서금동	127-6	도	957.0	34.2		국(국토교통부)				무상귀속 대상
	합계	1필지		957	34.2						

● **사천시 고시 제2022-101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동부 소로3-9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65호(2012.10.04.)로 최초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동부 소로3-9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그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7	6.0	국지 도로	660	반용리 546-2(도)	소로 2-1호선	일반 도로	-	2012.10.04. (사천2012-165)	농어촌도로 301호선
변경	소로	3	97	6.0	국지 도로	660	반용리 546-2(도)	소로 2-1호선	일반 도로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97호선	소로3-97호선	·면적 변경 : 8,917㎡ → 9,144㎡ (증 227㎡)	· 굴곡도로 개선을 위해 일부 구간 선형 변경

2. 관계도서[관련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 장소 : 사천시청 도로과 및 도시과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055-831-2290) 및 도시과(☎055-831-3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 고시 제2022-1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동부 소로3-170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35호(2022.2.24.)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동부 소로3-170호선)에 대하여 축동 구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897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동부 소로3-170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축동 구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진입로 확포장 A=1,29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사천시장(도로과)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2.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 (☎ 055-831-2290), 도시과(☎055-831-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붙임]

■ 편입토지조서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 고
	번	리	지번		대장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축동	구호	897	천	23,111	1,009	국(국토교통부)					무상 귀속대상
2	축동	구호	3-5	답	56	56	김*민	진주시 새평거리				미등기
3	축동	구호	8-2	장	6,612	18	주식회사**금속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	주식회사* *은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근저당 권설정	
4	축동	구호	5	장	5,373	32	**기업주식회사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주식회사* *은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근저당 권설정	
5	축동	구호	5-1	장	48	48	사천시		주식회사* *은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근저당 권설정	
6	축동	구호	4-6	답	58	58	사천시					
7	축동	구호	4-5	대	828	23	김*석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	**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 권설정	
8	축동	구호	4-1	대	829	8	김*석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	**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 권설정	
9	축동	구호	138-1	전	40	38	신*식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미등기

■ 편입물건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축동면 구호리	3-5	벚나무	H3.5xR8	2	주	김*민	진주시 새평거리				
			복숭아나무	H1.2	6	주						
2	축동면 구호리	5-1	문주	블록, 1.2x1.0 xH2.0	2.4	㎡	**기업 주식회사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소나무	H1.2xW1.5	1	주						
			석류나무	H2.0xR4	2	주						
			대추나무	H3.0xR8	3	주						

● 사천시 공고 제2022-740호

도시계획시설(중합의료시설:삼천포서울병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사천시 고시 제2020-321호(2020.9.2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합의료시설:삼천포서울병원)의 삼천포서울병원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동금동 6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합의료시설:삼천포서울병원)사업
- 명 칭 : 삼천포서울병원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층수 및 규모
 - 층 수 : 지하1층~지상6층
 - 건축면적 : 2,887.22㎡
 - 연 면 적 : 15,459.28㎡
- 동수 및 구조 : 주건축물 3동, 일반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
- 주 소 : 사천시 남일로 33(동서금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20. 9. 29.
- 준공(예정)일 : 2022. 9. 28.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 고시 제2022-13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밀양아리랑대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4-80호(2004. 4. 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밀양아리랑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밀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밀양시 교동 5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밀양아리랑대공원)사업
- 명 칭: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공사

3. 사업면적 및 규모: 관리창고 신축 264㎡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성 명: 밀양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	교동	544	전	12,175	264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재생과(☎ 055-359-52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 고시 제2022-13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제2006-198호(2006. 6. 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1-104호(2021. 4. 29.)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밀 양 시 장

1. 실시계획 인가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 위치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 일원	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변경없음
	밀양노벨C.C 조성사업	변경없음
사업면적 및 규모	·986,608㎡, 18홀 대중골프장	변경없음
	·규 격: 72파, L=5,875m	변경없음
	·클럽하우스 등 건축부지면적: 8,785㎡	변경없음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 건축연면적 : 7,479.63㎡	변경없음
	·오수처리시설: 1 식	변경없음
	·주 차 장: 10,055㎡(203대)	변경없음
	·진입도로: L=679m, B=8~10m	변경없음
	·내부도로 L=10,514m, B=2.7m(카트로)	변경없음
	·편 도: 8개소	변경없음
	·조명시설: 조명탑 113개	변경없음
	·생활용수: 지하수 200㎡/일	변경없음
	·관개용수: 우·오수 재활용, 지하수 800㎡/일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340	변경없음
	주식회사 밀양관광개발 우정수	변경없음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2008. 4. 30. ~ 2022. 4. 29.	2008. 4. 30. ~ 2023. 4. 29.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재생과(☎ 055-359-52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합 계				986,608	986,608						
1	단장면 안법리	산1	임	397	39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	단장면 안법리	산2	임	893	8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	단장면 안법리	산3-3	임	49,964	49,96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	단장면 안법리	산3-5	임	50,009	50,00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	단장면 안법리	산4-4	임	44,535	44,5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	단장면 안법리	산6	임	30,645	30,6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	단장면 안법리	산7	임	11,603	11,6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	단장면 안법리	산10	임	1,983	1,98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9	단장면 안법리	산11	임	298	29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0	단장면 안법리	산12	임	397	39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1	단장면 안법리	산13	임	595	59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2	단장면 안법리	산14-1	임	1,785	1,78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3	단장면 안법리	산14-2	임	1,488	1,4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4	단장면 안법리	산14-3	임	14,380	14,3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5	단장면 안법리	산14-4	임	20,826	20,8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6	단장면 안법리	산14-12	임	31,052	31,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7	단장면 안법리	산14-13	임	20,355	20,3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8	단장면 안법리	산14-9	임	3,174	3,17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19	단장면 안법리	산14-14	임	22,196	22,19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0	단장면 안법리	산15-2	임	153,039	153,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1	단장면 안법리	산16	임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2	단장면 안법리	산18-2	임	121,982	121,9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3	단장면 안법리	산21	임	4,661	4,66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4	단장면 안법리	산22-10	임	88,431	88,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5	단장면 안법리	산22-12	임	153,255	153,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6	단장면 안법리	산22-17	임	37,398	37,39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7	단장면 안법리	산74	구	329	329		기획재정부				
28	단장면 안법리	340	임	704	7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9	단장면 안법리	340-1	전	2,018	2,0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0	단장면 안법리	384	답	843	84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1	단장면 안법리	389	답	1,570	1,5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2	단장면 안법리	390	답	119	1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3	단장면 안법리	391	답	512	5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4	단장면 안법리	392	임	208	2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5	단장면 안법리	393	임	1,537	1,53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6	단장면 안법리	394	임	585	58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7	단장면 안법리	395	답	420	4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38	단장면 안법리	396	답	569	5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39	단장면 안법리	397	답	1,015	1,0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0	단장면 안법리	398	전	2,093	2,0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1	단장면 안법리	399	전	1,531	1,5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2	단장면 안법리	400-1	임	159	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3	단장면 안법리	400-2	전	258	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4	단장면 안법리	401	임	1,507	1,50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5	단장면 안법리	402-1	임	803	8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6	단장면 안법리	402-2	전	2,866	2,86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7	단장면 안법리	403	답	1,451	1,4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8	단장면 안법리	404	임	466	46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49	단장면 안법리	405-1	임	311	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0	단장면 안법리	405-2	전	493	4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1	단장면 안법리	406-1	전	493	4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2	단장면 안법리	406-2	전	215	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3	단장면 안법리	407	답	426	4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4	단장면 안법리	408	답	433	4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5	단장면 안법리	409-1	답	1,689	1,6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6	단장면 안법리	409-2	임	218	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7	단장면 안법리	409-3	임	50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8	단장면 안법리	410-1	임	1,111	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59	단장면 안법리	410-2	전	1,240	1,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0	단장면 안법리	410-3	임	2,063	2,06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61	단장면 안법리	410-4	전	777	7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2	단장면 안법리	411	답	3,243	3,24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3	단장면 안법리	412	답	942	9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4	단장면 안법리	413	답	1,729	1,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5	단장면 안법리	414	답	2,093	2,0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6	단장면 안법리	414-2	전	7,522	7,5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7	단장면 안법리	415	답	251	2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8	단장면 안법리	416	전	529	52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69	단장면 안법리	417	전	400	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0	단장면 안법리	418	전	36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1	단장면 안법리	419	전	294	2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2	단장면 안법리	420	대	1,517	1,5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3	단장면 안법리	421	답	380	3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4	단장면 안법리	422	임	271	2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5	단장면 안법리	423	답	360	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6	단장면 안법리	424-1	전	2,258	2,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7	단장면 안법리	424-2	임	2,056	2,05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8	단장면 안법리	425	임	555	5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79	단장면 안법리	426	답	1,349	1,34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0	단장면 안법리	427	답	2,116	2,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1	단장면 안법리	428	답	1,111	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2	단장면 안법리	429-1	답	3,633	3,6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83	단장면 안법리	429-2	임	50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4	단장면 안법리	430	임	724	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5	단장면 안법리	431	답	2,588	2,5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6	단장면 안법리	432	답	569	5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7	단장면 안법리	433	답	1,302	1,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8	단장면 안법리	434	유지	760	7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89	단장면 안법리	435	답	1,583	1,58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90	단장면 안법리	441	답	40	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91	단장면 안법리	442	임	780	7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92	단장면 안법리	443	답	261	26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93	단장면 안법리	801	구	3,896	3,896		기획재정부				
94	단장면 안법리	802	도	129	129		기획재정부				
95	단장면 안법리	803	도	268	268		기획재정부				
96	단장면 감물리	산309-1	임	44,094	44,0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 **거제시 고시 제2022-13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1-124호(2011.04.14.)로 거제(술역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나. 명 칭 : 서전리젠시 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

3. 사업개요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체육시설	골프장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	946,921	946,921	

4. 사업시행자 : (주)서전리젠시 시시 대표 김원우/경상남도 거제시 중곡1로 28, 2층(고현동, 해변빌딩)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5-639-4445)로 문의 바랍니다.

● **거제시 고시 제2022-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0-140호(2020.06.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문동동 55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상동·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중로1-5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개요

시설명	등급 및 규모			시설결정규모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면적(m ²)	
도 로	중로	1	5	4,516 (1,402)	20~25	390	20	8,583	

※ ()는 지구단위 구역 내 연장임

4. 사업시행자 :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대표 장동기) / 거제시 상동동 72-1번지

5. 사업기간

가.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2. 12. 30.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붙임1] 중로1-5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문동동	517-4	517-4	구	4,453	287		농림부	-			-	
2	문동동	705-1	705-1	구	337	124		농림부	-			-	
3	문동동	480-3	480-3	도	8,212	263		건설교통부	-			-	
4	문동동	540-4	540-4	도	185	149		거제시	-			-	
5	문동동	559-2	559-2	도	390	390		환경부	-			-	
6	문동동	566-2	566-2	도	383	383		환경부	-			-	
7	문동동	567-2	567-2	도	218	218		경상남도	-			-	
8	문동동	576-2	576-2	도	83	83		거제시	-			-	
9	문동동	577-2	577-2	도	129	129		경상남도	-			-	
10	문동동	578-3	578-3	도	60	60		환경부	-			-	
11	문동동	578-4	578-4	도	30	30		환경부	-			-	
12	문동동	579-2	579-2	도	129	129		거제시	-			-	
13	문동동	580-2	580-2	도	33	33		건설교통부	-			-	
14	문동동	580-3	580-3	도	142	142		환경부	-			-	
15	문동동	580-7	580-7	도	14	14		경상남도 교육청	-			-	
16	문동동	580-17	580-17	도	9	9		김 수 근	신현읍 문동리 585			-	
17	문동동	581-2	581-2	도	215	215		거제시	-			-	
18	문동동	598-4	598-4	도	3	3		거제시	-			-	
19	문동동	598-5	598-5	도	618	618		거제시	-			-	
20	문동동	598-7	598-7	도	7	7		거제시	-			-	
21	문동동	599-2	599-2	도	231	231		거제시	-			-	
22	문동동	600-2	600-2	도	149	149	1/2	거제시	-			-	
							1/2	거제시	-			-	
23	문동동	605-2	605-2	도	10	10		김 흥 진	신현읍 문동리 584			-	
24	문동동	606-2	606-2	도	238	238		경상남도	-			-	
25	문동동	607-2	607-2	도	136	136		거제시	-			-	
26	문동동	609-2	609-2	도	264	264		거제시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7	문동동	610-1	610-1	도	99	99	60/65	거제시	-			-	
							4/65	노순옥	카와고에시 나카하라구 마루코도리1초메 640				
							1/65	옥춘용	대전시 중구 용두로28번길 21-20(동두동)				
28	문동동	716-9	716-9	도	523	177		환경부	-				
29	문동동	717-1	717-1	도	307	94		건설교통부	-				
30	문동동	717-7	717-7	도	12	12		환경부	-				
31	문동동	558-10	558-10	대	11	11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32	문동동	599-7	599-7	대	23	23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33	문동동	599-13	599-13	대	80	80		경상남도교육감	-			-	
34	문동동	599-10	599-10	대	59	59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35	문동동	599-11	599-11	대	39	39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36	문동동	555-1	555-6	답	30	29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37	문동동	555-2	555-7	답	9	9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38	문동동	555-3	555-3	답	55	47		건설교통부	-			-	
39	문동동	555-4	555-4	답	70	70		김 종 균	부산 동래구 낙민동 90-6 중앙하이츠2차 202동 601호	대방종합건설(주)		매매예약	
40	문동동	555-5	555-5	답	40	40		김우원	신현읍 문동리 578-13	대방종합건설(주)		매매예약	
41	문동동	557-2	557-2	답	148	148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42	문동동	557-1	557-1	답	158	158			대방종합건설(주)	-	(주)명보설비	가압류	
											마산세무서	압류	
											거제시	압류	
											진해시	압류	
											창원시	압류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	압류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압류	
근로복지공단마산지사	압류												
43	문동동	558-9	558-9	답	84	84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4	문동동	558-8	558-8	답	17	17	대방종합건설(주)	-	(주)명보설비			가압류	
									마산세무서			압류	
									진해시			압류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			압류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압류	
									근로복지공단마산지사			압류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			압류	
대구광역시달서구			압류										
45	문동동	566-4	566-11	답	120	120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46	문동동	566-9	566-9	답	79	79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47	문동동	567-4	567-11	답	153	153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48	문동동	567-9	567-9	답	94	94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49	문동동	576-5	576-12	답	73	73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50	문동동	576-11	576-11	답	41	41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51	문동동	577-4	577-6	답	136	136	경상남도교육감	-			-		
52	문동동	577-5	577-5	답	73	73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53	문동동	578-2	578-19	답	55	55	경상남도교육감	-			-		
54	문동동	578-18	578-18	답	25	25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55	문동동	581-1	581-8	답	146	146	경상남도교육감	-			-		
56	문동동	581-7	581-7	답	85	85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57	문동동	598-1	598-14	답	242	242	경상남도교육감	-			-		
58	문동동	598-13	598-13	답	215	215	대한주택보증(주)	-			-		
59	문동동	599-1	599-12	답	54	54	경상남도교육감	-			-		
60	문동동	599-9	599-9	답	1	1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61	문동동	605-1	605-4	답	67	67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2	문동동	605-3	605-3	답	21	21		대한주택 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63	문동동	606-1	606-5	답	193	193		삼성거제지 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64	문동동	606-4	606-4	답	144	144		대한주택 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65	문동동	608	608-2	답	15	15		삼성거제지 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66	문동동	609-1	609-5	답	153	153		삼성거제지 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67	문동동	609-4	609-4	답	132	132		대한주택 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68	문동동	580-1	580-1	전	33	33	2/9	김대형	대구 북구 읍내동 1276-13	대방종합건 설(주)		매매예약	
							2/9	김동형	대구 북구 읍내동 1276-13				
							2/9	김민희	대구 북구 읍내동 1276-13				
							3/9	이순자	대구 북구 읍내동 1276-13				
69	문동동	580-16	580-16	전	40	40		대한주택 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70	문동동	607-1	607-5	전	83	83		삼성거제지 역주택조합	신현읍 장평리 530	거제시		압류	
71	문동동	607-4	607-4	전	72	72		대한주택 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72	문동동	601	601-1	학	528	528		경상남도 교육감	-			-	
합 계	72필지				21,725	8,583							

● **거제시 고시 제2022-14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식물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1-183호(2011.12.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최초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 2016-357호(2016.12.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식물원)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식물원)사업

나. 명 칭 : 농업개발원 문화시설(식물원) 화장실 증축공사

3.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시설결정규모(m ²)	사업시행규모(m ²)	비고
문화시설	식물원	거제면 서정리 856-17번이 일원	109,625	22,017	농업개발원

※ 건축개요 : 화장실 증축(건축면적 17.40m²)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농업육성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개월간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붙임] 문화시설:식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소유자		권리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거제면 서정리	855-9	대	3,347	3,347		거제시					
2	거제면 서정리	855-16	원	1,834	1,834		거제시					
3	거제면 서정리	855-17	도	251	251		거제시					
4	거제면 서정리	855-18	원	2,520	2,520		거제시					
5	거제면 서정리	855-19	원	4,587	4,587		거제시					
6	거제면 서정리	855-20	원	4,921	4,921		거제시					
7	거제면 서정리	855-21	대	2,558	2,558		거제시					
8	거제면 서정리	855-23	도	645	645		거제시					
9	거제면 서정리	855-26	도	1,354	1,354		거제시					
합계		9필지		22,017	22,017							

● **거제시 공고 제2022-1045호**

도시계획시설(항만:함박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호(2011.11.2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함박항)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81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함박항)사업

나. 명 칭 : 함박항 물양장 확장공사

3.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규모 (㎡)	사업시행규모 (㎡)	비고
항만	정주어항	동부면 가배리 818-5번지 일원	20,883	926	함박항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해양항만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열람기간 : 2022.05.19.~2022.06.03.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45)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공유수면)

● 거제시 공고 제2022-1046호

도시계획시설(항만:신교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호(2011.11.2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신교항)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8-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신교항)사업

나. 명 칭 : 신교항 방파제 연장공사

3.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규모(㎡)	사업시행규모(㎡)	비고
항만	정주어항	사등면 창호리 18-6번지 일원	70,682	1,155	신교항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해양항만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열람기간 : 2022.05.19. ~ 2022.06.03.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45)

8. 관계도면 : “실읍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공유수면)

● **거제시 공고 제2022-1072호**

도시계획시설(항만:군령포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호(2011.11.2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군령포항)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808-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군령포항)사업
- 나. 명 칭 : 군령포항 방파제 연장공사

3.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규모 (㎡)	사업시행규모 (㎡)	비고
항만	정주어항	사등면 창호리 1808-12번지 일원	272,498	553	군령포항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해양항만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열람기간 : 2020.05.19. ~ 2022.06.03.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45)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공유수면)

● **양산시 고시 제2022-14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양 산 시 장

1.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 용 자	주 소	양산시 중앙로 39
	성 명	양산시장(문화관광과장)
점 용 지 역	위 치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216번지 일원
	면 적	일시 : 192㎡
점 용 목 적		2022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야외무대 설치
점 용 내 용		야외무대 설치
점 용 기 간		일시점용 2022.05.26. ~ 2022.05.30.(5일)

※ 관계도서는 양산시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 고시 제2022-1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160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관련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양 산 시 장

1. 사업명 : 양산 중부동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상호 및 대표자 : 양산중부동지역주택조합 최병철 / ㈜우방 송동근
- 주소 :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114, 211호(범서미라클)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침산동, 연우빌딩

3. 주택건설사업승인 현황

- 위 치 : 양산시 중부동 160번지 외 19필지
- 대지면적 : 4,952㎡
- 건축면적 : 3,820,4598㎡
- 연 면 적 : 52,067.5805㎡
- 규 모 : 아파트 4동, 308세대, 22호, 부대복리시설 12동
- 변경승인일자 : 2022. 5. 12.(2021-공동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4. 사업시행기간 : 2022.1.30. ~ 2025.5.30.

5.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없음

● 양산시 고시 제2022-156호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양 산 시 장

가. 실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실효일자 : 2022. 5. 17

다.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 시행

라.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055-392-27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양산지구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448	중로2-27	소로2-93	일반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소로	2	28	5.8	국지도로	448	중로2-27	소로2-93	일반도로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92	8	국지도로	92	어곡동 28-16	소로1-55	일반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폐지	소로	2	193	8	국지도로	108	어곡동 28-14	소로1-55	일반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90	4	특수도로	138	중로1-65	소로2-157	보행자 전용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91	4	특수도로	79	대로1-1	소로2-157	보행자 전용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8호선	소로2-28호선	○ 폭원축소 - B=8m → 5~8m, 감)3m - L=448m	○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폭원축소
소로2-192호선	소로2-192호선	○ 폐지 - B=8m - L=92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도로) 폐지
소로2-193호선	소로2-193호선	○ 폐지 - B=8m - L=108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도로) 폐지
소로3-90호선	소로3-90호선	○ 폐지 - B=4m - L=138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도로) 폐지
소로3-91호선	소로3-91호선	○ 폐지 - B=4m - L=79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도로) 폐지

2) 웅상지구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22	8	국지도로	336	대로1-2	대로1-2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2호선	소로2-22호선	○ 폐지 - B=8m - L=336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3) 상북지구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48	8	국지도로	2,826	중로1-8	홍룡사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소로	2	248	7~8	국지도로	2,026	중로1-8	대석리 산109-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0	5	국지도로	46	중로3-8	소로2-8	일반 도로	-	경고 258호 ('75.12.11)	
변경	소로	3	10	5	국지도로	46	중로3-8	소로2-8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48호선	소로2-248호선	○ 연장 및 폭원축소 - B=8m → 7~8m, 감)1m - L=2,826m → 2,026m, 감)800m	○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노선연장 및 폭원축소
소로3-10호선	소로3-10호선	○ 선형변경 - B=5m - L=46m	○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

4) 하북지구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	12	보조간선 도로	1,280	대로1-1	용연리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중로	3	4	6~12	보조간선 도로	1,280	대로1-1	용연리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 도로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500	지방하천29	중로2-15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13	6	국지도로	86	소로3-15	소로3-14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14	6	국지도로	265	중로3-4	소로1-4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138	소로1-4	소로3-14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소로	3	15	6	국지도로	93	소로1-4	소로3-1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339	중로3-4	소로1-3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소로	3	21	6	국지도로	124	소로1-3	소로3-2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34	소로1-4	소로1-4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소로	3	22	5~6	국지도로	134	소로1-4	소로1-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50	대로1-1	소로1-4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소로	3	23	4~6	국지도로	50	대로1-1	소로1-4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4호선	중로3-4호선	○ 폭원축소 - B=12m → 6~12m, 감)6m - L=1,280m, 변경없음	○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노선폭원 축소
소로3-12호선	소로3-12호선	○ 폐지 - B=6m - L=500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소로3-13호선	소로3-13호선	○ 폐지 - B=6m - L=86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소로3-14호선	소로3-14호선	○ 폐지 - B=6m - L=265m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5호선	소로3-15호선	○시중점변경 - B=6m - L=138m → 93m, 감)45m	○최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로 인한 단절 도로의 시중점 변경
소로3-21호선	소로3-21호선	○시중점변경 - B=6m - L=339m → 124m, 감)215m	○최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로 인한 단절 도로의 시중점 변경
소로3-22호선	소로3-22호선	○폭원축소 - B=6m → 5~6m, 감)1m - L=134m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노선폭원 축소
소로3-23호선	소로3-23호선	○폭원축소 - B=6m → 4~6m, 감)2m - L=50m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노선폭원 축소

4) 원동지구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2,870	소로1-16	소로1-324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변경	중로	1	1	18~20	집산도로	2,870	소로1-16	소로1-324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1	1	10	국지도로	807	소로1-16	중로3-1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243	소로1-16	중로1-1	일반 도로	-	양고 33호 ('02.05.17)	전체실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폭원축소 - B=20m → 18~20m, 감)2m - L=2,870m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노선폭원 축소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폐지 - B=10m - L=807m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소로2-1호선	소로2-1호선	○폐지 - B=8m - L=243m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 양산시 공고 제2022-1279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산72-4번지 일원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양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산7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명칭 :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공원 조성 A=7,00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양산시장(문화관광과)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39

5. 열람기간 : 2022년 5월 19일 ~ 2022년 6월 2일(14일간)

6.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후생관 3층(50624)(T: 055-392-2722)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의 견 서

사 업 명 :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양산시장(문화관광과)

제 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의 견

기 타

제 출 처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 055-392-2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양산시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리	지번				성명	주소
1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72 2	임	112,385	210	김형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24-1, 준아트빌 1402호
2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72 4	공	19,716	6,795	양산시	
계				132,101	7,005		

● **함안군 공고 제2022-710호**

군계획시설(공공청사:법수면사무소)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80-1번지 일원 법수우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공공청사 : 법수면사무소)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함 안 군 수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1. 사업의 위치 :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80-1번지 일원(법수우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위 치	시설의 종류 (시설명)	사업규모	비고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행정복합센터)	법수면 우거리 780-1번지 일원 (법수우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면사무소)	○ 행정복합센터(1동, 2층) - 부지면적 2,385㎡ - 건축면적 546.45㎡ - 연 면 적 994.81㎡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함안군고시 제2021-126호) -공공청사 결정면적 : 3,014㎡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0개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함안군수(혁신전략담당관)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5.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함안군 도시건축과((☎055-580-2705)로 제출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3,297	2,385						
1	법수면	우거리	780-1	대	2,365	1,986	함안군					
2	법수면	우거리	781	전	238	238	함안군					
3	법수면	우거리	782-7	대	380	28	함안군					
4	법수면	우거리	782-11	대	43	39	함안군					
5	법수면	우거리	783-1	전	271	94	함안군					

※ 금회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함안군 도시건축과(055-580-2705) 및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 고시 제2022-90호

고성군계획시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지원시설 건축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1029번지의 고성군계획시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지원시설 건축공사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6)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102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명칭: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원시설 건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19,794.1㎡
- 건축면적 / 연면적: 210.89㎡ / 202.23㎡
- 건축물 개요
 - 주1동: 자동차관련시설(휴게소),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184.23㎡)
 - 부1동: 자동차관련시설(관리사무소),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18.0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성명: 고성군수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협의일
-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9,794.1	19,794.1						
1	고성읍 울대리	1029	주차 장	19,794.1	19,794.1	고성군					

7.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 고성군 고시 제2022-91호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조성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1.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89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사업
 - 명칭: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연장 100.5m, 폭원 23.0~26.5m, 면적 2,18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 성명: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희천
5.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시

● 고성군 고시 제2022-92호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1.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89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사업
 - 명칭: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연장 100.5m, 폭원 23.0~26.5m, 면적 2,18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 성명: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희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3년 4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616,344	2,187						
1	하이면 덕호리	988-4	채	9,947.0	178.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2	하이면 덕호리	988-3	장	33,558.0	580.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3	하이면 덕호리	988-2	도	1,732.0	995.0	기획재정부					
4	하이면 덕호리	889	장	144,594.0	48.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5	하이면 덕호리	993	도	6,937.0	37.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6	하이면 덕호리	952	장	419,576.0	349.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7.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 고성군 고시 제2022-93호

고성군계획시설(거류면 체육시설) 내 거류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 증축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888번지의 고성군계획시설(거류면 체육시설) 내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 시설 증축공사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6)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88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거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 명칭: 거류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 증축공사

3. 사업의 규모(증축)

- 부지면적: 23,155㎡
- 건축면적 / 연면적: 33.00㎡ / 33.00㎡
- 건축물 개요: 1동(부1동), 운동시설(휴게시설),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성명: 고성군수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협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23,155	23,155						
1	거류면 신용리	888	체	23,155	23,155	고성군					

7.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 하동군 고시 제2022-99호

하동군계획시설(적량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동군계획시설사업인 적량체육시설(하동스포츠파크) 조성공사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하 동 군 수

1. 인가신청의 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9-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적량체육시설)사업
 - 명 칭 : 하동스포츠파크 조성공사
-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명 칭 : 적량체육시설(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전체면적 : 229,410㎡
 - 사업면적 : 83,804㎡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하 동 군 수(문화체육과)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2년 04월 30일
 - 변 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

사.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붙임1. 참조]

2.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055-880-2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위 치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장물	
	읍면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285,526	229,410	-	-	-	-		
1	적량면	고절리	1201-5	묘	167	43	-	하동군	-	-	1식
2	적량면	고절리	1202-6	도	180	101	-	국(국토교통부)	-	-	1식
3	적량면	고절리	1202-9	구	3	1	-	국(농림축산식품부)	-	-	1식
4	적량면	고절리	1202-21	체	972	972	-	하동군	-	-	1식
5	적량면	고절리	1202-23	체	15,862	15,862	-	하동군	-	-	1식
6	적량면	고절리	1202-26	도	1,674	113	-	경상남도	-	-	1식
7	적량면	고절리	1202-28	도	83	70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40	조**직주식회사	-	-	1식
8	적량면	고절리	1202-37	도	175	25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41	조**직주식회사	-	-	1식
9	적량면	고절리	1202-49	전	676	674	-	하동군	-	-	1식
10	적량면	고절리	1202-50	잡	612	611	-	하동군	-	-	1식
11	적량면	고절리	1202-65	도	252	197	-	하동군	-	-	1식
12	적량면	고절리	1202-67	전	85	1	-	하동군	-	-	1식
13	적량면	고절리	1202-69	전	258	48	-	하동군	-	-	1식
14	적량면	고절리	1202-71	전	167	6	-	하동군	-	-	1식
15	적량면	고절리	1202-73	대	26	3	-	하동군	-	-	1식
16	적량면	고절리	1202-76	잡	35	34	-	하동군	-	-	1식
17	적량면	고절리	1202-77	체	222	130	-	하동군	-	-	1식
18	적량면	고절리	1202-78	체	696	696	-	하동군	-	-	1식
19	적량면	고절리	1203-1	임	628	628	-	하동군	-	-	1식
20	적량면	고절리	1203-2	임	122	122	-	하동군	-	-	1식
21	적량면	고절리	1203-3	전	1,197	1,197	-	하동군	-	-	1식
22	적량면	고절리	1203-4	임	53	53	-	하동군	-	-	1식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번호	위 치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장물	
	읍면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23	적량면	고절리	1205-6	도	251	251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41	조**직주식회사	-	-	1식
24	적량면	고절리	1205-8	도	507	244	-	하동군	-	-	1식
25	적량면	고절리	1205-9	도	171	171	-	하동군	-	-	1식
26	적량면	고절리	1206	임	145	145	-	국(기획재정부)	-	-	1식
27	적량면	고절리	1207-1	임	159	159	-	국(기획재정부)	-	-	1식
28	적량면	고절리	1207-2	도	3	3	-	국(기획재정부)	-	-	1식
29	적량면	고절리	1207-3	전	109	109	-	하동군	-	-	1식
30	적량면	고절리	1208-3	답	10	10	하동군 옥종면 월령리 297	조*제의 6인	-	-	1식
31	적량면	고절리	1209-1	체	97,802	97,802	-	하동군	-	-	1식
32	적량면	고절리	1209-2	도	1,527	1,329	-	국(국토교통부)	-	-	1식
33	적량면	고절리	1209-7	구	268	3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	-	1식
34	적량면	고절리	1209-8	도	17	16	-	국(국토교통부)	-	-	1식
35	적량면	고절리	1209-9	답	430	430	하동군 적량면 신기공항길 306	정*운	-	-	1식
36	적량면	고절리	1209-10	도	218	218	-	국(국토교통부)	-	-	1식
37	적량면	고절리	1209-11	도	20	20	-	국(국토교통부)	-	-	1식
38	적량면	고절리	1209-19	답	98	98	-	하동군	-	-	1식
39	적량면	고절리	1209-22	도	585	585	-	경상남도	-	-	1식
40	적량면	고절리	1209-31	도	205	91	-	경상남도	-	-	1식
41	적량면	고절리	1209-32	도	142	80	-	경상남도	-	-	1식
42	적량면	고절리	1209-86	도	30	30	-	경상남도	-	-	1식
43	적량면	고절리	1209-87	도	255	255	-	경상남도	-	-	1식
44	적량면	고절리	1209-88	도	680	680	-	경상남도	-	-	1식
45	적량면	고절리	1209-93	도	13	13	-	경상남도	-	-	1식
46	적량면	고절리	1209-94	도	112	112	-	경상남도	-	-	1식
47	적량면	고절리	1209-97	도	138	137	-	경상남도	-	-	1식
48	적량면	고절리	1209-100	답	17	3	-	국(기획재정부)	-	-	1식
49	적량면	고절리	1209-104	답	26	26	-	하동군	-	-	1식
50	적량면	고절리	1209-105	답	7	7	-	하동군	-	-	1식
51	적량면	고절리	1209-110	임	604	604	-	하동군	-	-	1식
52	적량면	고절리	1211-8	답	1,140	1,140	-	하동군	-	-	1식
53	적량면	고절리	1211-11	답	1,387	1,387	-	하동군	-	-	1식
54	적량면	고절리	1211-12	답	607	607	-	하동군	-	-	1식
55	적량면	고절리	1211-16	도	791	460	-	하동군	-	-	1식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번호	위 치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장물	
	읍면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56	적량면	고절리	1211-17	도	1,222	470	-	국(국토교통부)	-	-	1식
57	적량면	고절리	1211-18	답	321	321	-	하동군	-	-	1식
58	적량면	고절리	1211-19	도	703	99	-	국(국토교통부)	-	-	1식
59	적량면	고절리	1211-20	도	464	346	-	국(국토교통부)	-	-	1식
60	적량면	고절리	1211-21	도	210	210	-	국(국토교통부)	-	-	1식
61	적량면	고절리	1212-1	답	198	198	-	하동군	-	-	1식
62	적량면	고절리	1212-2	답	1,779	1,779	-	하동군	-	-	1식
63	적량면	고절리	1212-3	답	1,772	1,772	-	하동군	-	-	1식
64	적량면	고절리	1212-4	답	1,653	1,653	-	하동군	-	-	1식
65	적량면	고절리	1212-5	답	1,058	1,058	-	하동군	-	-	1식
66	적량면	고절리	1212-6	답	1,015	1,015	-	하동군	-	-	1식
67	적량면	고절리	1212-7	답	1,106	1,106	-	하동군	-	-	1식
68	적량면	고절리	1212-8	대	600	600	-	하동군	-	-	1식
69	적량면	고절리	1212-9	답	1,458	1,458	-	하동군	-	-	1식
70	적량면	고절리	1212-10	답	1,574	1,574	-	하동군	-	-	1식
71	적량면	고절리	1212-11	답	1,537	1,537	-	하동군	-	-	1식
72	적량면	고절리	1212-12	답	1,501	1,501	-	하동군	-	-	1식
73	적량면	고절리	1212-13	답	1,623	1,623	-	하동군	-	-	1식
74	적량면	고절리	1212-14	답	1,418	1,418	-	하동군	-	-	1식
75	적량면	고절리	1212-15	답	1,640	1,640	-	하동군	-	-	1식
76	적량면	고절리	1212-16	답	1,448	1,448	-	하동군	-	-	1식
77	적량면	고절리	1212-17	도	83	83	-	국(농림축산식품부)	-	-	1식
78	적량면	고절리	1212-18	도	101	101	-	하동군	-	-	1식
79	적량면	고절리	1212-19	답	81	81	-	하동군	-	-	1식
80	적량면	고절리	1212-20	답	814	814	-	하동군	-	-	1식
81	적량면	고절리	1212-21	답	1,114	1,114	-	하동군	-	-	1식
82	적량면	고절리	1212-22	답	1,817	1,817	-	하동군	-	-	1식
83	적량면	고절리	1212-23	답	1,067	1,067	-	하동군	-	-	1식
84	적량면	고절리	1212-24	답	1,287	1,287	-	하동군	-	-	1식
85	적량면	고절리	1212-25	답	446	446	-	하동군	-	-	1식
86	적량면	고절리	1212-26	도	169	169	-	국(농림축산식품부)	-	-	1식
87	적량면	고절리	1212-27	도	32	15	-	하동군	-	-	1식
88	적량면	고절리	1212-28	도	831	326	-	하동군	-	-	1식
89	적량면	고절리	1212-29	도	22	4	-	하동군	-	-	1식
90	적량면	고절리	1212-30	도	27	27	-	하동군	-	-	1식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번호	위 치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장물	
	읍면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91	적량면	고절리	1212-31	도	30	30	-	하동군	-	-	1식
92	적량면	고절리	1212-32	도	47	47	-	하동군	-	-	1식
93	적량면	고절리	1212-33	도	31	31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297	조*계 외 6인	-	-	1식
94	적량면	고절리	1212-34	도	45	45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88-11	김*진	-	-	1식
95	적량면	고절리	1212-35	도	5	5	-	하동군	-	-	1식
96	적량면	고절리	1212-36	도	224	224	-	하동군	-	-	1식
97	적량면	고절리	1212-37	도	376	375	-	하동군	-	-	1식
98	적량면	고절리	1212-38	도	144	144	-	하동군	-	-	1식
99	적량면	고절리	1212-39	답	642	642	-	하동군	-	-	1식
100	적량면	고절리	1212-40	답	171	171	-	하동군	-	-	1식
101	적량면	고절리	1214-1	도	88	88	-	국(농림축산식품부)	-	-	1식
102	적량면	고절리	1214-2	도	5	5	-	국(농림축산식품부)	-	-	1식
103	적량면	고절리	1214-3	도	3,279	2,20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1식
104	적량면	고절리	1217-2	도	93	1	-	국(국토교통부)	-	-	1식
105	적량면	고절리	1220-6	잡	300	300	-	하동군	-	-	1식
106	적량면	고절리	1221-1	묘	463	463	-	하동군	-	-	1식
107	적량면	고절리	1222-1	전	281	281	-	하동군	-	-	1식
108	적량면	고절리	1222-9	임	296	296	-	하동군	-	-	1식
109	적량면	고절리	1222-12	임	367	367	-	하동군	-	-	1식
110	적량면	고절리	1300	도	219	189	-	국(국토교통부)	-	-	1식
111	적량면	고절리	1300-3	도	280	97	-	국(국토교통부)	-	-	1식
112	적량면	고절리	1300-4	채	42	42	-	하동군	-	-	1식
113	적량면	고절리	1304-1	도	1,288	854	-	국(국토교통부)	-	-	1식
114	적량면	고절리	산174	임	59,653	56,525	-	하동군	-	-	1식
115	적량면	고절리	산175-1	도	642	392	-	하동군	-	-	1식
116	적량면	고절리	산181-3	임	3,372	335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775	김*곤 외 3인	-	-	1식
117	적량면	고절리	산184-2	도	694	694	-	경상남도	-	-	1식
118	적량면	고절리	산184-3	임	311	311	-	하동군	-	-	1식
119	적량면	고절리	산184-4	임	4,367	4,367	-	하동군	-	-	1식
120	적량면	고절리	산185	임	496	496	-	하동군	-	-	1식
121	적량면	고절리	산188-2	도	198	32	-	국(국토교통부)	-	-	1식
122	적량면	고절리	산188-3	도	397	238	-	국(국토교통부)	-	-	1식
123	적량면	고절리	산188-5	도	3,174	1	-	경상남도	-	-	1식

● 산청군 고시 제2022-73호

군계획시설(공원: 단성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산청군 고시 제2015-109호(2015.11.26.) 산청군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로 최초 결정, 산청군 고시 제2022-38호(2022.3.31.)로 결정 (변경)되었으며, 산청군 고시 제2016-18호(2016.2.25.)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후 산청군 고시 제2016-131호(2016.12.22.)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되어 산청군 고시 제2018-144호(2018.2.8.)호로 완료공고된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120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공원:단성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19.

산 청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1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공원: 단성문화공원)사업
- 명 칭: 단성문화공원 유림회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1,158㎡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합계	공	구	비고
면적(㎡)	11,158	10,675	483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1,158	-	11,158	100.0	
공원시설	7,240	증) 96	7,336	65.7	
도로 및 광장	3,086	증) 183	3,269	29.3	
조경시설	306	-	306	2.7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휴양시설	870	-	870	7.8	
운동시설	1,406	감) 181	1,225	11.0	
교양시설	187	증) 652	839	7.5	유림회관
편익시설	1,385	감) 558	827	7.4	
녹지	3,918	감) 96	3,822	3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산청군수
- 주 소: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 준공예정일
 - 당초: 2017. 6. 30.(완료)
 - 변경: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조서		
연번	읍·면	리·동			지적	편입	이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15,044	11,158					
1	단성면	성내리	109	공	843	804	산청군				
2	단성면	성내리	120	공	2,112	2,028	산청군				
3	단성면	성내리	121	공	2,053	2,008	산청군				
4	단성면	성내리	122	공	342	310	산청군				
5	단성면	성내리	122-1	공	1,708	1,708	산청군				
6	단성면	성내리	123-1	공	860	730	산청군				
7	단성면	성내리	123-2	공	1,140	1,087	산청군				
8	단성면	성내리	146	공	2,000	2,000	산청군				
9	단성면	성내리	222	구	3,986	483	국(농수산부)				

7. 기타: 관계도서는 산청군 지역발전과(055-970-7302) 및 문화체육과(055-970-6403)에 비치 열람.

● 함양군 고시 제2022-88호

함양군계획시설[소로1-20호선(함양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5-24번지 일원의 “함양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소로1-20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5-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1-20호선	함양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L=283m, B=10m A=9,064㎡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주민행복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3. 12. 31.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사업시행자가 협의(협의)를 득한 내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국도24호선 연결협의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농지전용허가(농지부담금 면제대상), 산지전용허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행복과(☎055-960-4920) 및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총 계 (36필지)				9,160	9,064						
1	구룡리	산5-26	도	385	385	행정안전부					
2	구룡리	844-3	도	140	140	국토교통부					
3	구룡리	844-5	도	103	103	국토교통부					
4	구룡리	844-9	도	18	18	함양군					
5	구룡리	845-3	전	50	50	행정안전부					
6	구룡리	845-5	전	59	59	함양군					
7	구룡리	845-1	전	10	10	함양군					
8	구룡리	845-4	전	11	11	함양군					
9	구룡리	산5-6	임	50	50	행정안전부					
10	구룡리	845-2	전	337	241	함양군					
11	구룡리	764-1	전	36	36	전*주 외3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55, ***동 ****호 (풍덕천동, 한성아파트)				
12	구룡리	765-1	전	171	171	전*주 외3인					
13	구룡리	산5-24	임	1,761	1,761	행정안전부					
14	구룡리	767-3	답	86	86	함양군					
15	구룡리	768-3	답	645	645	함양군					
16	구룡리	775-4	전	66	66	함양군					
17	구룡리	769-1	전	1,201	1,201	기획재정부					
18	구룡리	752-6	전	20	20	함양군					
19	구룡리	753-3	전	9	9	이*욱	함양군 함양읍 교산길 16 *동 ***호				
20	구룡리	산12-13	임	31	31	함양군					
21	구룡리	754-1	전	203	203	함양군					
22	구룡리	755-3	전	40	40	함양군					
23	구룡리	773-1	전	1,056	1,056	함양군					
24	구룡리	산5-25	임	9	9	함양군					
25	구룡리	770	전	241	241	함양군					
26	구룡리	산5-8	임	298	298	강*규	503	강*수			
27	구룡리	760-2	창	902	902	행정안전부					
28	구룡리	산5-22	도	556	556	행정안전부					
29	구룡리	산5-21	도	77	77	이*석	전북 남원군 동면 만월리 ***	유*달			
30	구룡리	산5-14	도	55	55	행정안전부					
31	죽림리	3-2	구	163	163	기획재정부					
32	죽림리	312-13	도	42	42	국토교통부					
33	죽림리	311-11	답	1	1	장*용	대구 북구 태전동 ***				
34	죽림리	312-12	도	69	69	국토교통부					
35	죽림리	311-10	도	1	1	임*규					
36	구룡리	산7-5	도	258	258	국토교통부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위치도 >



● **함양군 고시 제2022-89호**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3호선) 인도 설치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7-3번지 일원의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3호선) 인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1-33호선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3호선) 인도 설치공사	도로개설 L=437m, B=9.7' 18.0m A=1,734㎡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

- 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총 계 (36필지)				23,624	1,734						
1	함양읍 교산리	327-3	도	239	25	함양군					
2	함양읍 교산리	1100-76	도	5	5	국(기획재정부)					
3	함양읍 교산리	329-1	대	1	1	강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4길 ***				1/2
						박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4길 ***				1/2
4	함양읍 교산리	330-2	도	167	8	국(기획재정부)					
5	함양읍 교산리	330-18	대	25	25	조성*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				1/2
						조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				1/2
6	함양읍 교산리	330-16	도	38	9	함양군					
7	함양읍 교산리	1155-2	도	54	1	국(국토교통부)					
8	함양읍 교산리	1155-5	도	55	3	국(국토교통부)					
9	함양읍 교산리	1155-7	대	5	5	염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				
10	함양읍 교산리	304-6	대	41	41	염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				
11	함양읍 교산리	302-6	대	28	28	김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				1/3
						김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중앙길 ***				1/3
						김종*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				1/3
12	함양읍 교산리	301-2	대	23	23	송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				
13	함양읍 교산리	210-4	도	4,463	144	함양군					
14	함양읍 교산리	238-16	전	23	23	김정*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				
15	함양읍 교산리	238-17	전	26	26	김성*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				
16	함양읍 교산리	241-5	전	13	13	한경*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				
17	함양읍 교산리	240-2	대	9	9	이광*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				1/2
						김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동길 ***				1/2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8	함양읍 교산리	238-15	전	29	29	노재*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 ***				
19	함양읍 교산리	239-5	전	10	10	노재*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				
20	함양읍 교산리	244-24	전	12	12	노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				
21	함양읍 교산리	242-9	전	38	38	정창*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				
22	함양읍 교산리	257	대	15,051	206	한국자산 신탁(주)		함양웰가아 파트			미분할
23	함양읍 교산리	1100-53	도	52	4	국(국토교통부)					
24	함양읍 교산리	1100-64	도	8	8	국(국토교통부)					
25	함양읍 교산리	1100-63	도	49	46	국(국토교통부)					
26	함양읍 교산리	265-2	전	19	19	이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길 ***				
27	함양읍 교산리	210-6	학	62	38	함양군					
28	함양읍 교산리	73-9	도	567	538	함양군					
29	함양읍 교산리	266-6	전	373	16	이경*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				미분할
30	함양읍 교산리	266-4	전	135	114	함양군					
31	함양읍 교산리	266-5	차	981	16	이경*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				미분할
32	함양읍 교산리	266-2	전	674	4	이경*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				미분할
33	함양읍 교산리	73-7	전	40	40	함양군					
34	함양읍 교산리	73-12	장	49	49	정상*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인당강변길 ***				
35	함양읍 교산리	1100-6	도	151	82	국(국토교통부)					
36	함양읍 교산리	210-7	학	109	76	함양군					

● **함양군 고시 제2022-90호**

2025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군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정정고시)

2025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함양군 고시 제2022-64호(2022.4.14.)로 고시하였으나 일부 오기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함 양 군 수

1. 2025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3	10	국지 도로	283	소로 1-34	함양읍 백연리 667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35	10	국지 도로	283	소로 1-34	함양읍 백연리 667	일반도로	-	-	오기정정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33	소로1-35	○ 노선명 변경	○ 노선명 오기정정

2.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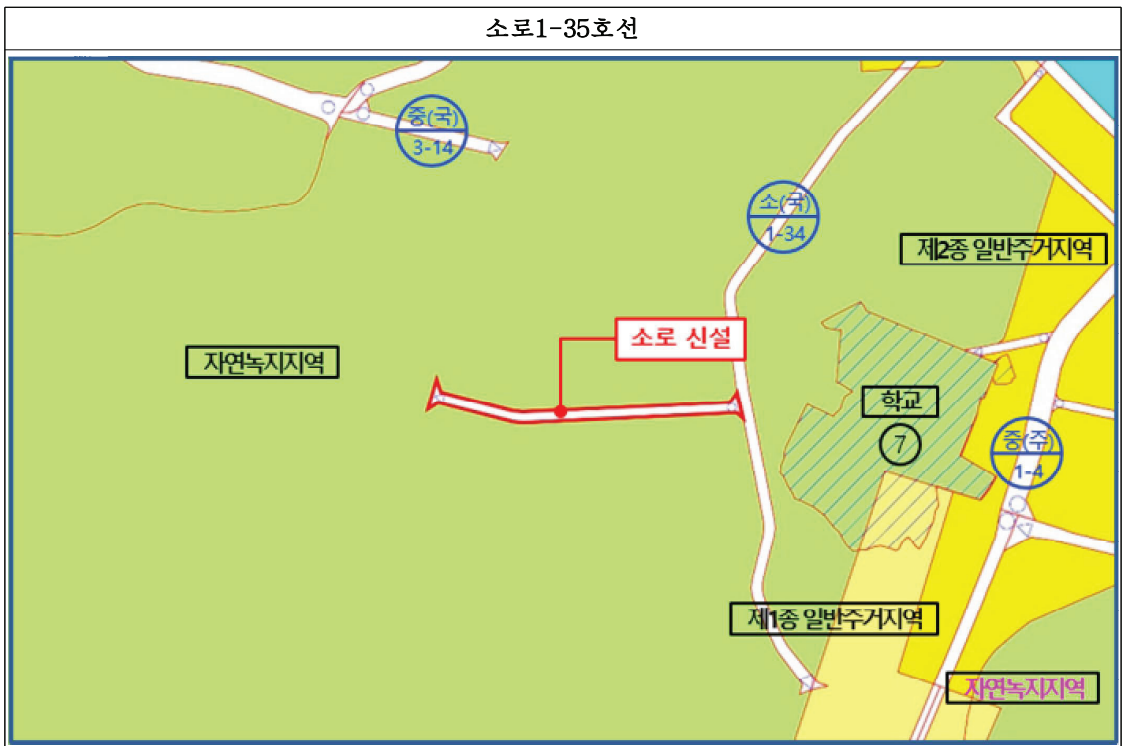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 다. 지형도면승인고지도(축척 1:5,000)

4. 군관리계획 결정도 : 붙임1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바랍니다.

[붙임1] 군관리계획 결정 도면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2-12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주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2. 5. 19.(목) ~ 2022. 6. 2.(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2. 8. 8.(월)까지
 ※ 농협 289-01-007146(경남도금고)

6. 정상부과 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당사자	주소	과태료 금액(원)	반송 사유
1	전남92사7102, 전남83바9234	2021.11.24. 02:20분경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지방도 1042호선 상	폭 3.20미터 초과	박영형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1**동 1*02호	1,000,000	폐문 부재
2	부산99사4110, 부산96사9862	2021.12.28. 15:53분경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지방도 1042호선 상	길이 9.41미터 초과	이국제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8*번길 1*4*2	1,000,000	폐문 부재

7. 이의신청 기간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2. 8. 1.(월)까지 팩스 (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wetax.go.kr)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

1.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귀하께서는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해당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告知)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는 제외).
3. 위와 같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기간 최장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징수됩니다.
4.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제3호에 따른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 일부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마. 전 화 번 호 :

2. 통지받은 위반행위

3. 위반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용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술 인 : (서명 또는 인)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2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6-251호(2006.8.3.), 창원시 고시 제2017-213호(2017.9.1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36호(2020.7.1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58호(2021.12.23.)에 의거 결정(변경)고시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부 산 · 진 해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 변경사유

- 사업 준공 이후 토지이동(확정측량)에 따른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면적 변경
-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휴게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관녹지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가. 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 개발사업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성 명	주 소	비 고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 창원시(공원녹지과)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PNC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가. 목적(변경없음)
- 나. 개요(변경없음)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42,199.7	-	2,442,199.7	100.0		
주택건설용지	319,307.2	-	319,307.2	13.1		
상업시설용지	116,041.5	-	116,041.5	4.8		
업무시설용지	135,766.0	-	135,766.0	5.6		
물류시설용지	소 계	764,455.5	-	764,455.5	31.3	
	항만물류단지	764,455.5	-	764,455.5	31.3	
공공시설용지 (1)	소 계	910,989.5	-	910,989.5	37.2	
	공 원	85,148.7	증) 32,333.5	117,482.2	4.8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 (4개소) 체육공원 (신설1개소)
	녹 지	261,028.7	감) 32,322.9	228,705.8	9.4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5→4개소)
	공공공지	49,847.0	-	49,847.0	2.0	총 2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44,150.0	-	44,150.0	1.8	
	도 로	470,815.1	감) 10.6	470,804.5	19.2	
공공시설용지 (2)	소 계	195,640.0	-	195,640.0	8.0	
	전시시설	107,620.4	-	107,620.4	4.4	
	교육시설	51,163.0	-	51,163.0	2.1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문화시설	11,898.4	-	11,898.4	0.5	
	공용의 청사	4,615.0	-	4,615.0	0.2	공공청사(2)
	주차장	20,343.2	-	20,343.2	0.8	총 3개소

3. 소요토지의 확보계획(변경없음)

4.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참조

6.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변경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변경없음)

9.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 개발지원과 (051-979-512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끝.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일원	2,442,199.7	-	2,442,199.7	'06.8.3 경고251호

2.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42,199.7	-	2,442,199.7	100.0	-
주 거 지 역	소 계	570,941.6	-	570,941.6	2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528,416.6	-	528,416.6	21.6	-
	준주거지역	42,525.0	-	42,525.0	1.7	-
상 업 지 역	소 계	439,438.1	-	439,438.1	18.0	-
	일반상업지역	439,438.1	-	439,438.1	18.0	-
공 업 지 역	소 계	1,137,426.2	-	1,137,426.2	46.6	-
	일반공업지역	1,010,405.4	-	1,010,405.4	41.4	-
	준공업지역	127,020.8	-	127,020.8	5.2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 지 지 역	소 계	294,393.8	-	294,393.8	12.1	-
	자연 녹지 지역	294,393.8	-	294,393.8	12.1	-

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3	17,776	514,965.1	16	6,475	178,465.7	21	6,864	183,297.1	6	4,437	153,202.3
	변경	43	17,776	514,954.5	16	6,475	178,765.6	21	6,864	182,997.2	6	4,437	153,191.7
광로	기정	1	2,490	104,115.9	-	-	-	-	-	-	1	2,490	104,115.9
	변경	1	2,490	104,115.9	-	-	-	-	-	-	1	2,490	104,115.9
대로	기정	15	9,990	313,936.2	1	3,196	111,805.3	9	4,847	153,044.5	5	1,947	49,086.4
	변경	15	9,990	311,726.3	1	3,196	111,805.3	9	4,847	150,845.2	5	1,947	49,075.8
중로	기정	27	5,296	96,913.0	15	3,279	66,660.4	12	2,017	30,252.6	-	-	-
	변경	27	5,296	99,112.3	15	3,279	66,960.3	12	2,017	32,152.0	-	-	-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1	40~46	주간선 도로	5,651 (2,490)	행정 구역계	광로3-13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1	28	35~50	보조 간선 도로	3,196	행정 구역계	배후부지 서측경계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29	30~50	보조 간선 도로	2,614	배후부지 북동측 경계	광로3-11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30	30~42	보조 간선 도로	277	광로3-11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1	30~36	보조 간선 도로	277	대로1-28	광로3-11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32	30~35	집산 도로	280	광로3-11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33	30~36	보조 간선 도로	323 (202)	대로2-29	배후부지 북측경계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34	30~36	보조 간선 도로	274	광로3-11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35	30~36	보조 간선 도로	277	대로1-28	광로3-11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36	30	집산 도로	100	대로2-29	대로3-121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2	37	30	집산 도로	546	광로3-11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3	101	25	주간선 도로	4630 (414)	대로1-6	대로1-28	일반 도로	-	'97.10.23. 경고322호	
기정	대로	3	118	25~31	집산 도로	314	대로1-28	광로3-11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3	119	25	집산 도로	53	배후부지 북측경계	대로2-29	일반 도로	-	'08.12.4. 경고617호	
기정	대로	3	121	25	집산 도로	729	대로2-29	대로2-33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대로	3	122	25~31	집산 도로	797 (437)	광로3-12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14	20	국지 도로	280	광로3-11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15	20	국지 도로	110	대로2-32	중로1-214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16	20	국지 도로	70	중로1-217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17	20	국지 도로	335	대로2-34	대로2-32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18	20	특수 도로	215	중로1-219	대로2-32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1	218	20	특수 도로	215	중로1-219	대로2-32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19	20	국지 도로	100	중로1-221	중로1-217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0	20	특수 도로	100	대로2-34	중로1-21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변경	중로	1	220	20	특수 도로	100	대로2-34	중로1-219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1	20	국지 도로	335	대로2-34	대로2-32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2	20	국지 도로	520	대로2-37	대로2-34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3	20	특수 도로	100	중로1-224	대로2-34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4	20	국지 도로	100	중로1-226	중로1-222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5	20	특수 도로	170	근린 공원61	중로1-224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6	20	국지 도로	520	대로2-37	대로2-34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7	20	국지 도로	224	중로1-222	대로2-29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1	228	20	국지 도로	100	대로2-29	대로3-121	일반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28	15	특수 도로	545	대로2-30	대로2-29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29	15	특수 도로	133	중로2-328	대로2-29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0	15	특수 도로	485	중로1-214	대로2-30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1	15	특수 도로	133	중로2-330	대로2-29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32	15	특수 도로	180	대로2-332	경관 녹지63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3	15	특수 도로	70	중로1-217	대로2-29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4	15	특수 도로	40	중로1-218	중로1-217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5	15	특수 도로	40	중로1-221	중로1-218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6	15	특수 도로	70	광로3-11	중로1-221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7	15	특수 도로	100	대로2-29	대로3-121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8	15	특수 도로	151	중로1-222	대로2-29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기정	중로	2	339	15	특수 도로	70	광로3-11	중로1-226	보행자 전용 도로	-	'06.8.3. 경고251호	

()안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부에 포함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비 고
중로 1-218호선	중로 1-21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 정정 - 기정 : 일반도로 - 변경 : 보행자전용도로 • 기타 확정측량에 따른 도로 면적정정 (도로면적 감소 : 감 10.6㎡) 	
중로 2-220호선	중로 2-220호선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	-	-	20,343.2	-	20,343.2		
기정	주차장24	노외주차장	업무2블록 서측	6,943.6	-	6,943.6	'06.8.3 경고251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주차장25	노외주차장	상업12블록 동측	7,451.9	-	7,451.9	'06.8.3 경고251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주차장26	노외주차장	업무8블록 남측	5,947.7	-	5,947.7	'06.8.3 경고251호	일반상업지역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261,028.7	감)32,322.9	228,705.8	-	-
기정	99	완충 녹지	완충 녹지	항만물류 3단지 북측	11,512.4	-	11,512.4	'06.8.3. 경고251호	일반공업지역
기정	100	완충 녹지	완충 녹지	항만물류 2단지 북측	11,866.6	-	11,866.6	'06.8.3. 경고251호	일반공업지역
기정	145	완충 녹지	완충 녹지	항만물류 6단지 동측	6,800.5	-	6,800.5	'08.12.4. 경고617호	일반공업지역
변경	61	경관 녹지	경관 녹지	항만물류 4단지 동측	164,009.2	10.6	164,019.8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62	경관 녹지	경관 녹지	배후부지 북측경계	14,217.4	-	14,217.4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63	경관 녹지	경관 녹지	배후부지 북측경계	9,200.7	-	9,200.7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64	경관 녹지	경관 녹지	배후부지 북측경계	21,893.1	감)10,804.7	11,088.4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폐지	65	경관 녹지	경관 녹지	배후부지 동측경계	21,528.8	감)21,528.8	-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1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기정 : 164,009.2㎡ - 변경 : 164,019.8㎡ (10.6㎡) 	• 토지대장 면적을 반영한 오차 정정
64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축소 - 기정 : 21,893.1㎡ - 변경 : 11,088.4㎡ (감 10,804.7㎡) 	•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휴게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녹지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신설코자 함
65	경관녹지	• 시설 폐지 [감]21,528.8㎡	

2)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후		비 고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	
합 계	9	85,148.7	10	117,482.2	
근린공원	4	60,046.6	4	60,046.6	
어린이공원	5	25,102.1	5	25,102.1	
체육공원	-	-	1	32,333.5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7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주거2블록 서측	6,544.7	-	6,544.7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80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주거4블록 동측	5,622.4	-	5,622.4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8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주거7블록 동측	5,126.9	-	5,126.9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8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주거12블록 북측	3,023.0	-	3,023.0	'06.8.3. 경고251호	준주거지역
기정	183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주거8블록 동측	4,785.1	-	4,785.1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59	근린공원	근린공원	주거2블록 동측	13,342.5	-	13,342.5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60	근린공원	근린공원	상업11블록 동측	11,594.4	-	11,594.4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61	근린공원	근린공원	업무9블록 북측	22,939.7	-	22,939.7	'06.8.3. 경고251호	자연녹지지역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8	근린공원	근린공원	주거6블록 북측	12,170.0	-	12,170.0	'08.12.4. 경고617호	자연녹지지역
신설	10	체육공원	체육공원	진시블록 북측	-	32,333.5	32,333.5	-	자연녹지지역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공원 신설 - A=32,3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휴게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 녹지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신설코자 함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부지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면 적		-	증) 32,333.5	32,333.5	100.0	
시 설 면 적		-	증) 12,274.0	12,274.0	38.0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	증) 3,898.0	3,898.0	12.1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	-	-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	증) 6,397.0	6,397.0	19.8	
	교양시설	-	-	-	-	
	편익시설	-	증) 1,772.0	1,772.0	5.5	
	공원관리시설	-	증) 207.0	207.0	0.6	
녹지		-	증) 20,059.5	20,059.5	62.0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건축면적)

구 분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증) 83.0	83.0	-	증) 83.0	83.0	
휴양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공원관리시설	-	증) 83.0	83.0	-	증) 83.0	83.0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사무소	-	증) 36.0	36.0	-	증) 36.0	36.0	
화장실	-	증) 29.0	29.0	-	증) 29.0	29.0	
창고	-	증) 18.0	18.0	-	증) 18.0	18.0	
물탱크	-	-	-	-	-	-	

○ 시설물 및 녹지율

구 분	합 계		시 설 율		녹 지 율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신 설	32,333.5	100.0	12,274.0	38.0	20,059.5	62.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체육공원	○도로 및 광장 : 신설 A=3,898㎡ ○운동시설 : 신설 A=6,397㎡ ○편의시설 : 신설 A=1,772㎡ ○공원관리시설 : 신설 A=207㎡ ○녹 지 : 신설 A=20,059.5㎡	•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휴게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 녹지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신설코자 함

○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기능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2,333.5	83.0	83.0	
	신설		공원시설소개		12,274.0	83.0	83.0	시설율 38.0%
도로 및 광장			소개		3,898.0	-	-	
	신설	1-1	보행자도로	용원동 1347-7	1,429.0	-	-	
	신설	1-2	보행자도로	용원동 1335	2,469.0	-	-	
운동 시설			소개		6,397.0	-	-	
	신설	2-1	파크골프장(A1)	용원동 1347-7	250.0	-	-	
	신설	2-2	파크골프장(A2)	용원동 1347-7	386.0	-	-	
	신설	2-3	파크골프장(A3)	용원동 1347-7	217.0	-	-	
	신설	2-4	파크골프장(A4)	용원동 1335	609.0	-	-	
	신설	2-5	파크골프장(A5)	용원동 1335	327.0	-	-	
	신설	2-6	파크골프장(A6)	용원동 1335	217.0	-	-	
	신설	2-7	파크골프장(A7)	용원동 1335	362.0	-	-	
신설	2-8	파크골프장(A8)	용원동 1335	262.0	-	-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기능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신설	2-9	파크골프장(A9)	용원동 1335	356.0	-	-	
	신설	2-10	파크골프장(B1)	용원동 1335	256.0	-	-	
	신설	2-11	파크골프장(B2)	용원동 1335	287.0	-	-	
	신설	2-12	파크골프장(B3)	용원동 1335	250.0	-	-	
	신설	2-13	파크골프장(B4)	용원동 1335	500.0	-	-	
	신설	2-14	파크골프장(B5)	용원동 1335	315.0	-	-	
	신설	2-15	파크골프장(B6)	용원동 1335	440.0	-	-	
	신설	2-16	파크골프장(B7)	용원동 1347-7	351.0	-	-	
	신설	2-17	파크골프장(B8)	용원동 1347-7	323.0	-	-	
	신설	2-18	파크골프장(B9)	용원동 1347-7	256.0	-	-	
	신설	2-19	체력단련장	용원동 1347-7	53.0	-	-	
신설	2-20	배드민턴장	용원동 1347-7	380.0	-	-		
편의 시설		소계			1,772.0	-	-	
	신설	3-1	주차장	용원동 1347-7	1,672.0	-	-	
	신설	3-2	쉼터(1)	용원동 1347-7	65.0	-	-	
	신설	3-3	쉼터(2)	용원동 1335	35.0	-	-	
공원 관리 시설		소계			207.0	83.0	83.0	
	신설	4-1	관리사무소	용원동 1347-7	70.0	36.0	36.0	
	신설	4-2	화장실	용원동 1347-7	50.0	29.0	29.0	
	신설	4-3	창고	용원동 1347-7	40.0	18.0	18.0	
	신설	4-4	물탱크	용원동 1347-7	47.0	-	-	
녹지	신설	소계			20,059.5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연 장 (m)	면 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399.5	3,898.0				
신설	소로	1	1	6	24.0	132.0	연결도로	대로2-29	세로1	
신설	소로	1	2	6	24.0	135.0	연결도로	대로2-29	세로13	
신설	세로		1	3	28.0	72.0	산책로	소로1-1	세로4	
신설	세로		2	3	232.0	695.0	산책로	세로1	경관녹지64	
신설	세로		3	2	3.0	5.0	산책로	경관녹지64	쉼터	
신설	세로		4	3	156.0	418.0	산책로	대로 2-29	경관녹지64	
신설	세로		5	3	10.0	37.0	산책로	세로4	대로3-121	
신설	세로		6	4	7.0	30.0	연결도로	세로4	주차장	
신설	세로		7	2	2.5	5.0	연결도로	세로4	관리사무소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규모				연 장 (m)	면 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세로		8	2	4.0	8.0	연결도로	세로4	창고	
신설	세로		9	2	3.0	6.0	연결도로	세로4	화장실	
신설	세로		10	2	2.0	4.0	연결도로	세로4	화장실	
신설	세로		11	2	8.0	17.0	연결도로	주차장	체력단련장	
신설	세로		12	2.5	28.0	71.0	산책로	소로1-2	세로15	
신설	세로		13	3	411.0	1,231.0	산책로	세로13	경관녹지229	
신설	세로		14	3	448.0	1,014.0	산책로	대로 2-29	경관녹지229	
신설	세로		15	2	9.0	18.0	연결도로	세로14	쉼터	

3)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49,847.0		49,847.0	-	
기정	7	공공공지	주거4블록 남측	10,724.2	-	10,724.2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8	공공공지	주거4블록 서측	335.9	-	335.9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9	공공공지	주거2블록 남측	1,669.0	-	1,669.0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0	공공공지	주거3블록 북측	2,625.9	-	2,625.9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1	공공공지	주거2블록 남측	1,285.5	-	1,285.5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2	공공공지	주거3블록 북측	214.9	-	214.9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3	공공공지	초등학교38 북측	705.7	-	705.7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4	공공공지	고등학교45 북측	1,642.9	-	1,642.9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5	공공공지	고등학교45 동측	308.5	-	308.5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6	공공공지	주거5블록 동측	179.3	-	179.3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7	공공공지	주거6블록 북측	2,404.8	-	2,404.8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8	공공공지	주거6블록 서측	184.6	-	184.6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9	공공공지	주거7블록 서측	93.4	-	93.4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0	공공공지	주거7, 10블록 남측	14,408.5	-	14,408.5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1	공공공지	초등학교39 남측	725.0	-	725.0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2	공공공지	중학교46 북측	295.9	-	295.9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3	공공공지	주거8블록 남측	1,255.6	-	1,255.6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4	공공공지	주거9블록 북측	1,776.3	-	1,776.3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5	공공공지	주거8블록 남측	2,215.8	-	2,215.8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6	공공공지	주거11블록 북측	1,341.2	-	1,341.2	'06.8.3. 경고251호	준주거지역
기정	27	공공공지	주거12블록 동측	204.6	-	204.6	'06.8.3. 경고251호	준주거지역
기정	28	공공공지	주거12블록 남측	3,265.0	-	3,265.0	'06.8.3. 경고251호	준주거지역
기정	29	공공공지	주거13블록 남측	1,984.5	-	1,984.5	'06.8.3. 경고25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4,615.0	-	4,615.0	-	
기정	25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주거3블록 서측	1,353.6	-	1,353.6	'06.8.3. 경고251호	
기정	26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어린이공원182 북측	3,261.4	-	3,261.4	'06.8.3. 경고251호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2)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	51,163.0	-	51,163.0		
기정	245	초등학교	초등학교	창원시 용원동 1337-1	11,220.6	-	11,220.6	'06.8.3. 경고251호	
기정	246	초등학교	초등학교	창원시 용원동 1341	11,223.1	-	11,223.1	'06.8.3. 경고251호	
기정	243	고등학교	고등학교	창원시 용원동 1337-2	15,805.2	-	15,805.2	'06.8.3. 경고251호	
기정	244	중학교	중학교	창원시 용원동 1338-1	12,914.1	-	12,914.1	'06.8.3. 경고251호	

3) 문화시설(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문화시설	문화시설	업무8블록 북측	11,898.4	-	11,898.4	'06.8.3. 경고251호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	319,307.2	-	319,307.2	
주거2	2	30,373.9	1	30,373.9	
주거3	3	32,250.2	1	32,250.2	
주거4	4	38,358.5	1	38,358.5	
주거5	5	15,666.2	1	15,666.2	
주거6	6	27,141.6	1	27,141.6	
주거7	7	22,703.0	1	22,703.0	
주거8	8	60,364.6	1	60,364.6	
주거9	9	16,784.5	1	16,784.5	
주거10	10	21,275.9	1	21,275.9	
주거11	11	6,260.4	1	6,260.4	
주거12	12	10,758.1	1	10,758.1	
주거13	13	37,370.3	1	37,370.3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	116,041.5	-	116,041.5	
상업1	1	3,972.0	1	1,334.5	
			2	1,319.1	
			3	1,318.4	
상업2	2	3,974.3	1	1,335.1	
			2	1,320.2	
			3	1,319.0	
상업3	3	3,975.8	1	1,319.6	
			2	1,320.0	
			3	1,336.2	
상업4	4	3,975.7	1	1,320.3	
			2	1,320.1	
			3	1,335.3	
상업5	5	3,951.1	1	1,294.9	
			2	1,321.3	
			3	1,334.9	
상업6	6	3,947.0	1	1,293.9	
			2	1,319.8	
			3	1,333.3	
상업7	7	3,947.1	1	1,334.4	
			2	1,318.7	
			3	1,294.0	
상업8	8	3,951.1	1	1,335.5	
			2	1,320.2	
			3	1,295.4	
상업9	9	6,767.7	1	1,293.3	
			2	1,318.3	
			3	1,318.6	
			4	1,318.9	
			5	1,518.6	
상업10	10	6,780.5	1	1,296.0	
			2	1,321.5	
			3	1,321.0	
			4	1,320.5	
			5	1,521.5	
상업11	11	17,714.4	1	17,714.4	
상업12	12	19,085.4	1	19,085.4	
상업13	13	14,348.0	1	14,348.0	
상업14	14	19,651.4	1	19,651.4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다.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135,766.0	-	135,766.0	
업무1	1	6,948.2	1	3,453.2	
			2	3,495.0	
업무2	2	6,953.5	1	3,502.0	
			2	3,451.5	
업무3	3	6,585.0	1	3,436.9	
			2	3,148.1	
업무4	4	15,066.1	1	3,501.7	
			2	3,501.0	
			3	3,501.8	
			4	4,561.6	
업무5	5	24,157.4	1	3,497.6	
			2	3,854.0	
			3	4,130.5	
			4	4,988.7	
			5	7,686.6	
업무6	6	19,974.8	1	4,564.5	
			2	3,851.2	
			3	3,852.1	
			4	3,853.0	
			5	3,854.0	
업무7	7	13,895.4	1	13,895.4	
업무8	8	27,455.0	1	27,455.0	
업무9	9	14,730.6	1	3,766.7	
			2	3,455.8	
			3	3,855.8	
			4	3,652.3	

라. 향만물류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	764,455.5	-	764,455.5	
향만물류1단지	1	43,567.9	1	43,567.9	
향만물류2단지	2	261,691.5	1	261,691.5	
향만물류3단지	3	245,263.4	1	245,263.4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항만물류4단지	4	88,287.1	1	88,287.1	
항만물류5단지	5	37,364.8	1	37,364.8	
항만물류6단지	6	88,280.8	1	88,280.8	

마. 전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	107,620.4	-	107,620.4	
전시	1	107,620.4	1	107,620.4	

바.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	51,163.0	-	51,163.0	
초교1	1	11,220.6	1	11,220.6	
초교2	2	11,223.1	1	11,223.1	
중교1	1	12,914.1	1	12,914.1	
고교1	1	15,805.2	1	15,805.2	

사.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	11,898.4	-	11,898.4	
문화	1	11,898.4	1	11,898.4	

아.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	-	4,615.0	-	4,615.0	
공공청사1	1	1,353.6	1	693.4	
			2	660.2	
공공청사2	2	3,261.4	1	878.4	
			2	753.5	
			3	752.4	
			4	877.1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자.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	-	20,343.2	-	20,343.2	
주차장1	1	6,943.6	1	6,943.6	
주차장2	2	7,451.9	1	7,451.9	
주차장3	3	5,947.7	1	5,947.7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거2~ 주거13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에서 정하는바에 의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단, 준주거지역(주거11, 주거12)은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이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 이하 같다.) - 주거2~10, 13 : 200% 이하 - 주거11~12 : 280% 이하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추가한 용적률. 이하 같다.) - 주거2~10, 13 : 230% 이하 - 주거11~12 : 300% 이하
		높 이	○주거2~4 : 20층 이하 ○주거5~7 : 25층 이하 ○주거8~13 : 30층 이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도에서 별도의 높이제한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교육시설용지 정남방향부분 13.5m, 주거용지 13내 동측부분 10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 공동주택 세대수 결정(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세대수 (호)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최고층수(층)
합 계	319,307.2	6,803	-	-	-
주거 2	30,373.9	647	200 이하	230 이하	20 이하
주거 3	32,250.2	687	200 이하	230 이하	20 이하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면 적 (㎡)	세대수 (호)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최고층수(층)
주거 4	38,358.5	817	200 이하	230 이하	20 이하
주거 5	15,666.2	334	200 이하	230 이하	25 이하
주거 6	27,141.6	578	200 이하	230 이하	25 이하
주거 7	22,703.0	484	200 이하	230 이하	25 이하
주거 8	60,364.6	1,286	200 이하	230 이하	30 이하
주거 9	16,784.5	358	200 이하	230 이하	30 이하
주거 10	21,275.9	453	200 이하	230 이하	30 이하
주거 11	6,260.4	133	280 이하	300 이하	30 이하
주거 12	10,758.1	229	280 이하	300 이하	30 이하
주거 13	37,370.3	797	200 이하	230 이하	30 이하

* 위 표에서 규제사항 : 세대수,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최고층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인센티브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 ~ 상업 10		용 도	○1층 권장용도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상업1, 2 블록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높 이	○60m 이하
		건축선	○벽면지정선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1m 지정. 1층 내지 3층은 벽면지정선에 2/3 이상 접할 것 ○건축한계선 : 3~6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고층부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6층 이상부분은 벽면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3m~6m 이상 후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 권장용도, 지정용도 면적산정 : 주차장, 기계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이하 같다)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1 ~ 상업 14		용 도	○권장용도 (연면적의 40% 이상) - 상업 12 : 판매 및 영업시설 - 상업 11, 13 : 판매 및 영업시설, 위탁시설(유원시설업에 한함) - 상업 14 :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위탁시설(유원시설업 제외). 단, 상업 11,12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800% 이하 ○허용용적률 : 1,000% 이하
		높 이	○110m 이하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인 경우 130m 이하로 완화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인 경우 150m 이하로 완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6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고층부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6층 이상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다. 업무용지(변경없음)

○ 일반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1 ~ 업무 7, 업무 9		용 도	○권장용도 (연면적의 40% 이상) - 업무시설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800% 이하 ○허용용적률 : 1,000% 이하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1 ~ 업무 7, 업무 9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m 이하. 단, 업무2, 3은 80m 이하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인 경우 130m 이하로 완화. 단, 업무2,3은 100m 이하로 완화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인 경우 150m 이하로 완화. 단, 업무2,3은 120m 이하로 완화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1m~6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고층부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6층 이상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8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용도 (연면적의 4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용적률 : 800% 이하 ○허용용적률 : 1,0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m 이하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인 경우 250m 이하로 완화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인 경우 300m 이하로 완화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6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고층부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6층 이상부분은 도로와의 경계선에서 20m 이상 후퇴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라. 항만물류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항만물류 1, 2, 3, 4, 5, 6		용 도	○지정용도 : - 「항만법」 제2조 6호 항만시설 중 '다'목(지원시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시설 ※ 항만물류 6은 공컨테이너 장치장 및 화물차 휴게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7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5m~20m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마.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학교 1 ~ 학교 4		용 도	○지정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0m 이하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바.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1		용 도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4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6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고층부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6층 이상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사.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청사1 ~ 공공청사2	용 도	○지정용도 :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분국, 소방파출소 등)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2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3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아.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1 ~ 주차장3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높 이	○80m 이하(단, 주차장1은 6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6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고층부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6층 이상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
		기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전시1 특별계획구역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3번지	107,620.4	-	107,620.4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준공업지역	107,620.4	-	107,620.4	100.0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

구분	지구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	중로	2	340	15	국지 도로	296	대로 3-122	대로 2-37	일반 도로	-	2016.01.07. 창원제2016-1호	
기정	진해구	소로	2	438	8	국지 도로	128	중로 2-340	대로 3-122	일반 도로	-	2016.01.07. 창원제2016-1호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전시	BL1	60,378	BL1-1	3,306	업무용지
			BL1-2	4,464	
			BL1-3	7,769	
			BL1-4	6,401	
			BL1-5	3,595	
			BL1-6	7,759	
			BL1-7	8,383	
	BL1-8	18,701	전시용지		
	BL2	3,405	BL2-1	3,405	업무용지
	BL3	38,217	BL3-1	4,285	
BL3-2			4,285		
BL3-3			10,000		
BL3-4			9,823		
BL3-5			9,824	물류용지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세 부 개 발 계 획	
용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전시장 설치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소매점) 및 나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라목(서점), 아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자목(일반 음식점), 하목(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단,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전시장 설치시) ▪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경 남 공 보

제2553호

2022. 5. 19.(목)

구 분	세 부 개 발 계 획	
용 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 해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창고시설(단, BL3-1~2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 해당)
밀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단, BL3-1~2에 창고시설만 설치시는 70% 이하) ▪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 이하 (단, BL3-1~2에 창고시설만 설치시는 350% 이하) ▪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m 이하 ▪ 업무용지(BL3-1~2),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m 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2-23호선에 접한 획지면은 건축한계선 20m -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 - 향만물류용지에 접한 획지면은 건축한계선 10m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별로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전면공지면 차량진출입구 중 대로변은 폭 8m 이하, 물류시설 용지는 폭 12m 이상 확보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전면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20m 이상 : 대규모 이용자를 위한 전면광장으로 조성 • 건축한계선 6m 이상 : 통로 3m(보도와 동일하게 조성)-식수대 1.5m 이상-건물진입통로 	

나) 공개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의 결절부 및 외부에서 배후부지로의 관문을 형성하는 곳에 지정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도록 함 	

다) 공공보행통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축 형성을 위하여 블록 내부로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지정 • 폭은 4m 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분할가능선 부분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 •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유도 	

3) 대지내 조경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만물류용지5에 접한 획지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B=10m)으로 발생한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소음 및 공해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도록 계획. 다만, 차량 및 이용자의 대지내 진출입구간은 제외 	

사.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 없음)

7.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침서(변경)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1. 총 칙(변경없음)

제1조(목적)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지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계획적 필요에 의한 사항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④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 내용을 따른다.
- ⑤ 대지상호간 분할·합병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시행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 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⑦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의 관리가 필요한 일단의 구역으로서,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3. “획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획지를 분할할 경우에 있어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분할 가능한 대강의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4.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권장용도”라 함은 계획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필지에 대하여 계획적 필요에 의해 선정된 용도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권장용도 준수시 용적률등의 인센티브 부여)
6.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7.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이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8.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기준용적률에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할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한 용적률의 상한선을 말한다.
9. “인센티브”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개발시 공공 기여도가 크거나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계획 요소를 준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일정범위의 건축기준(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10. “최고높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에 의한다.
11. “최고층수제한지역”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최고층수완화지역”이라 함은 도시의 Land-mark기능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도시 경관의 향상을 위해 지정된 층수까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주건축물”이라 함은 대지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건축물 중 주된 용도(본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정용도 또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4. “타워형”이라 함은 기준층 평면의 단변과 장변의 비가1:3이상인 주동을 말한다.
15.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16. “고층부건축한계선”이라 함은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그 선을 넘어서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7.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특정층 벽면의 위치를 지정한 선으로, 건축물의 특정층이 지정선의 2/3 이상 접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서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정층은 1층 내지 3층으로 한다.
18. “3분할디자인”이라 함은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디자인을 말한다.
19. “기단부(Podium)”라 함은 건축물의 저층부가 고층부보다 돌출된 형태를 말한다.
20.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내로의 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21.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 및 주건축물로의 보행출입구를 당해 방향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23. “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 중 일반대중의 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24.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25. “옥외생활공간면적”이라 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과 옥외주차장 및 단지내도로(보도 제외) 면적 등을 제외한 면적에 건축물 상부의 휴게·녹지공간 및 필로티 면적 등을 합한 건축물의 외부공간면적을 말한다.
26. “옥외생활공간비율”이라 함은 옥외생활공간면적을 주거용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옥외생활공간비율 = 옥외생활공간면적 ÷ 주거용 연면적 x 100)
27.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8.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9.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2. 주거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5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획지는 분할 및 합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획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의 용도)

다음 표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7조(건축물의 규모)

- ①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아래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아파트용지내 최고층수완화지역은 지정된 층수이하까지 가능하며, 최고층수제한지역은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정				변 경
	건 폐 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최고층수	
주거 2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3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4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5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6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7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8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30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9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30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10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30층 이하	변경없음

기 정					변 경
구 분	건 폐 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최고층수	
주거 11	60% 이하	280% 이하	300% 이하	30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12	60% 이하	280% 이하	300% 이하	30층 이하	변경없음
주거 13	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30층 이하	변경없음

② 도면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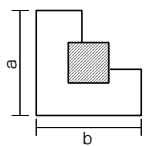
30%	200%
:	30층
	230%

예 : 건폐율 3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
 허용용적률 230% 이하

③ 최고층수제한지역

1. 최고층수제한지역이 지정된 용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된 층수이하로 제한한다. 건축물의 일부만이 최고층수제한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최고층수제한지역(10층이하)에는 10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3. 최고층수제한지역(12층이하)에는 12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4. 최고층수제한지역(15층이하)에는 15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④ 판상형주동은 6호 초과 연립을 불허한다.

제8조(건축물의 형태)



a:b는 1:3이상
 즉, a/b는 1/30이상일 것

주호동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타워형(기준층 평면의 단변과 장변의 비 1:3 이상. 이하 같음)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동주택 타워형 배치지역'에 판상형을 배치할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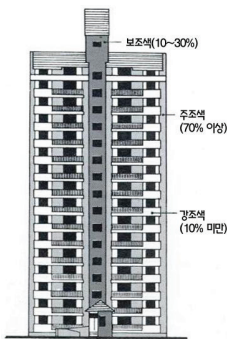
제9조의2(대지내 조경)

결정도상에 대지내 조경이 표시된 곳에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 및 이용자가 대지내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 및 이를 관리하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제10조(단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11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주조색은高明도·高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색상에 명도 및 채도의 변화를 주어 전체적인 색상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경사지붕의 경우 색상 및 명도, 채도의 제한을 두어 주거용지 전체의 조화를 도모 하도록 한다.

② 주거단지별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채계획(면셀 H V/C)		색채예시
주거용지	주거2 (청록계열)	주조색	○색상 : N8.0 이상, 5G~5BG ○명도/채도 : 8이상/ 2이하	5BG 9/2 6.5G 8.9/1.3
		보조색	○색상 : N6.0 이상, 10GY~10BG ○명도/채도 : 5~7/ 3~4	5BG 7/4 5G 7/3
	주거3~5 (청색계열)	주조색	○색상 : N8.0 이상, 2.5BG~7.5B ○명도/채도 : 8.5이상/ 2이하	5B 9/2 5B 8.5/2
		보조색	○색상 : N6.0 이상, 2.5BG~7.5B ○명도/채도 : 6~8/ 3~5	7.5B 8/4 5B 8/4
	주거6~7, 9~10 (주황계열)	주조색	○색상 : N8.0 이상, 10R~5YR ○명도/채도 : 8.5이상/ 2이하	2.5YR 8.5/1.5 10R 8.5/2
		보조색	○색상 : N6.0 이상, 7.5R~7.5YR ○명도/채도 : 6~8/ 3~4	2.5YR 6/4 10R 6/4
	주거8, 11~13 (황색계열)	주조색	○색상 : N8.0 이상, 10YR~5Y ○명도/채도 : 8.5이상/ 2이하	5Y 8.5/2 5Y 9/1.5
		보조색	○색상 : N6.0 이상, 5YR~7.5Y ○명도/채도 : 6~8/ 3~4	5Y 6/4 5Y 8/3
	주거1~13	지붕색	○색상 : 10R~5Y ○명도/채도 : 3~4/ 2이하 ○경사지붕일 경우에 한함	10YR 4/2 10R 3.5/2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12조 (삭제)

제13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주호동의 형태·입면상에 변화를 주는 3분할 디자인을 권장한다.
- ② 필로티를 조성할 경우 2개층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③ 고층(20층 이상) 타워형 주호동은 옥상 등예의 야간조명을 통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건축물의 배치)

-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동주택 타워형 배치지역’에는 타워형의 주호동을 배치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타워형 배치지역’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②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은 집중 배치할 것(3가지 이상)을 권장하며,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③ 근린생활시설 등(상가시설)은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단지의 주출입구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집적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제15조(단지내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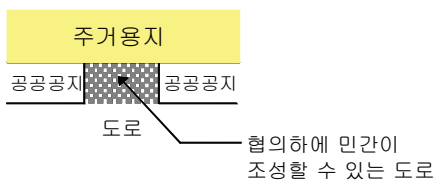
단지가 주로 차로 및 주차장으로 뒤덮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생활공간비율을 25%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16조(단지내 포장)

- ① 단지내 도로(보도 포함) 및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② 보도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식포장을 권장한다.

제17조(담장 및 단지진입부)

- ① 담장은 1.2m 이하의 투시형(투시율 70% 이상) 또는 조경·식재를 통한 생물타리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녹지, 공공공지 등과 면한 담장은 1m 이하의 조경·식재를 통한 생물타리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③ 주거용지 및 공공공지 등에 의해 3면이 둘러싸인 도로(단지진입부)의 경우 승인 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민간부문에서 조성할 수 있다. 단, 항시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8조(건축기준 완화-인센티브)

- 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완화 하도록 한다.
 - 1. 결정도상에 지정된 곳에 타워형 배치지침 준수 시(제14조 제1항 참조) : 기준용적률의 5%
 - 2. 주호동의 형태·입면 변화지침(3분할 디자인) 준수 시(제13조 제1항 참조) : 기준용적률의 3%
 - 3. 옥외생활공간비율이 25% 이상일 경우(제15조 참조) : 기준용적률의 3%
 - 4. 부대복리시설의 집중배치 지침 준수 시(제14조 제2항 참조) : 기준용적률의 3%
 - 5. 단지의 경계부에 담장에 관한 지침 준수 시(제17조 참조) : 기준용적률의 3%
- ② 획지별 용적률은 위의 인센티브 항목의 완화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에 합산하여 결정하되, 제7조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업용지(변경없음)

1.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19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획지는 분할 및 합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획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의 용도)

- ①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상업1, 2블럭에 한함)

제21조(건축물의 규모)

-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도면표시방법

60%	600%
60m	800%

예 :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기준용적률 600% 이하
 허용용적률 800% 이하

제22조(건축선)

- 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벽면지정선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1층 내지 3층의 벽면이 벽면지정선에 2/3이상 접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지상부분을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제23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1층 바닥높이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 ②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로 하여야 한다.
- ③ 건축설비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24조(대지내 공지)

- ① 전면공지
 1.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 가.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 나. 제2호 건축선(3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 다. 제3호 건축선(1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행자도로 및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2. 전면공지에는 식수대에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공지

- 1.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2.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다.

제25조(대지내 조정)

① 차폐식재

-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26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단, 일반상업용지 내 허용용도 중 주유소에 한하여 교통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기초조사 검토 및 관련 전문가 심의·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향후, 주유소 이외 타용도 변경 시에는 관련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제27조(보행출입구의 설치)

보행출입구 조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변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조로 하는 색상을 권장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저층부(5층 이하)의 색채 변화를 채도 및 명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토록 한다.
 2.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일반상업 용지 (상업1~10)	고층부 (6층이상)	주조색	○ 명도/채도 : 8이상/ 2이하 ○ 색상(권장) : N8.5이상 또는 2.5YR~10Y	
		보조색	○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 색상(권장) : 2.5YR~10Y	
	저층부 (5층이하)	주조색 보조색	○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 색상(권장) : 2.5RP~10Y	

제29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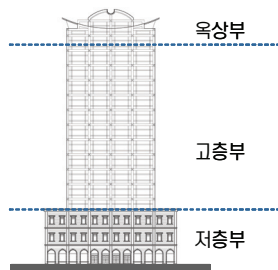
제30조(권장용도)

- ① 일반상업용지의 권장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1층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

- ② 1층 권장용도는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당해 용도로 조성할 경우에 이를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때 바닥면적은 주차장 및 기계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1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건축물의 형태

1.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디자인을 권장한다.
2. 기단부(돌출된 형태의 저층부)는 5층 이하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② 지붕 :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32조(건축기준 완화-인센티브)

- 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완화 하도록 한다.
 - 1. 1층 권장용도 준수 시(제30조 참조) : 기준용적률의 7%
 - 2. 2층에도 1층 권장용도 준수 시(1층에 권장용도 준수한 경우에 한함. 제30조 참조)
: 기준용적률의 5%
 - 3.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5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5%
 - 4.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7%
 - 5.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10%
 - 6.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조성면적의 절반만 산정함) 설치시(제24조 제2항 참조)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② 획지별 용적률은 위의 인센티브 항목의 완화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에 합산하여 결정하되, 제21조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33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획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완전히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의 용도)

- ①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유원시설업 제외). 단, 상업 11,12에 한함

제35조(건축물의 규모)

-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도면표시방법

60%	800%	예 :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 110m 이하 기준용적률 800% 이하 허용용적률 1,000% 이하
: 110m	1000%	

제36조(건축선)

- 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1층 바닥높이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 ②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③ 건축설비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38조(대지내 공지)

① 전면공지

1.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나. 제2호 건축선(3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다. 제3호 건축선(1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행자도로 및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2. 전면공지에는 식수대외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공지

1.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2.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다.

제39조(대지내 조경)

① 차폐식재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조성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조성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40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41조(보행출입구의 설치)

보행출입구 조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변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2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조로 하는 색상을 권장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저층부(5층 이하)의 색채 변화를 채도 및 명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토록 한다.
2.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중심상업 용지 (상업11~14)	고층부 (6층이상)	주조색	○명도/채도 : 8이상/ 2이하 ○색상(권장) : N8.5이상 또는 2.5YR~10Y	 10Y 9/1.5 10YR 9/1.5
		보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색상(권장) : 2.5YR~10Y	 10Y 7/3 10YR 7/3
	저층부 (5층이하)	주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보조색	○색상(권장) : 2.5RP~10Y	 2.5RP 9/1 5RP 6/3

제43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44조(권장용도)

① 중심상업용지의 권장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12 : 판매 및 영업시설 • 상업 11, 13 :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유원시설업에 한함) • 상업 14 :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② 권장용도는 연면적의 40% 이상을 당해 용도로 조성할 경우에 이를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및 기계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건축물의 형태

1.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디자인을 권장한다.
2. 기단부는 5층 이하로 조성하도록 한다.

② 지붕 :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46조(공개공지의 위치)

결정도상에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개공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건축기준 완화-인센티브)

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완화 하도록 한다.

1. 권장용도 준수 시(제44조 참조) : 기준용적률의 10%
2.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5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5%
3.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7%
4.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10%
5.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조성면적의 절반만 산정함) 설치시(제38조 제2항 참조)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② 획지별 용적률은 위의 인센티브 항목의 완화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에 합산하여 결정하되, 제35조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제35조의 최고높이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도록 한다.

1.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일 경우 : 최고높이 130m 이하
2.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일 경우 : 최고높이 150m 이하

4. 업무용지(변경없음)

1. 일반업무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48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획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 ②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의 용도)

- ①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50조(건축물의 규모)

-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표시방법

60%	800%	예 :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 110m 이하 기준용적률 800% 이하 허용용적률 1,000% 이하
110m	1000%	

제51조(건축선)

- 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1층 바닥높이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②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③ 건축설비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53조(대지내 공지)

① 전면공지

1.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나. 제2호 건축선(3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다. 제3호 건축선(1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행자도로 및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2. 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식수대예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공지

1.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2.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다.

③ 공공보행통로

1.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하는 통로로서, 결정도상에 표시된 곳에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폭은 4m 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분할선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나. 접하는 보도와 단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하도록 한다.

다.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

2.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실내형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제54조(대지내 조경)

① 차폐식재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55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56조(보행출입구의 설치)

보행출입구 조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변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57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조로 하는 색상을 권장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저층부(5층 이하)의 색채 변화를 채도 및 명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토록 한다.

2.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일반업무 용지 (업무1~7, 9)	고층부 (6층이상)	주조색	○명도/채도 : 8이상/ 2이하 ○색상(권장) : N8.5이상 또는 2.5YR~10Y	 10Y 9/1.5 10YR 9/1.5
		보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색상(권장) : 2.5YR~10Y	 10Y 7/3 10YR 7/3
	저층부 (5층이하)	주조색 보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색상(권장) : 2.5RP~10Y	 2.5RP 9/1 5RP 6/3

제58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59조(권장용도)

① 일반업무용지의 권장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권장용도	• 업무시설

② 권장용도는 연면적의 40% 이상을 당해 용도로 조성할 경우에 이를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및 기계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0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건축물의 형태

1.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디자인을 권장한다.
2. 기단부는 5층 이하로 조성하도록 한다.

② 지붕 :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61조(공개공지의 위치)

결정도상에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개공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건축기준 완화-인센티브)

- 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완화 하도록 한다.
 - 1. 권장용도 준수 시(제59조 참조) : 기준용적률의 10%
 - 2.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10%
 - 3. 3분할디자인 및 기단부 지침 준수시(제60조 제1항 참조) : 기준용적률의 5%
 - 4.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조성면적의 절반만 산정함) 설치시(제53조 제2항 참조)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② 획지별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항목의 완화된 용적률을 합산하여 결정 하되, 제50조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③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제50조의 최고높이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도록 한다.
 - 1.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일 경우 : 최고높이 130m 이하. 단, 업무2 및 업무 3은 100m 이하
 - 2.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일 경우 : 최고높이 150m 이하. 단, 업무2 및 업무 3은 120m 이하

2.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63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제64조(건축물의 용도)

- ①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단독주택 <li style="width: 33%;">• 공동주택 <li style="width: 33%;">• 공장 <li style="width: 3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li style="width: 3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li style="width: 33%;">•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제65조(건축물의 규모)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표시방법

60%	800%	예 :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 200m 이하 기준용적률 800% 이하 허용용적률 1,000% 이하
200m	1000%	

제66조(건축선)

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제67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1층 바닥높이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②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③ 건축설비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68조(대지내 공지)

① 전면공지

1.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2. 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식수대에는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공지

1.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2.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다.

③ 공공보행통로

1.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하는 통로로서, 결정도상에 표시된 곳에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폭은 4m 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분할선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나. 접하는 보도와 단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하도록 한다.
다.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
2.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실내형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제69조(대지내 조정)

① 차폐식재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70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71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조로 하는 색상을 권장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저층부(5층 이하)의 색채 변화를 채도 및 명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토록 한다.
2.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국제업무 용지 (업무8)	고층부 (6층이상)	주조색	○명도/채도 : 8이상/ 2이하 ○색상(권장) : N8.5이상 또는 2.5YR~10Y	 10Y 9/1.5 10YR 9/1.5
		보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색상(권장) : 2.5YR~10Y	 10Y 7/3 10YR 7/3
	저층부 (5층이하)	주조색 보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색상(권장) : 2.5RP~10Y	 2.5RP 9/1 5RP 6/3

제72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73조(권장용도)

① 국제업무용지의 권장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② 권장용도는 연면적의 40% 이상을 당해 용도로 조성할 경우에 이를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및 기계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4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건축물의 형태

1.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디자인을 권장한다.
2. 기단부는 5층 이하로 조성하도록 한다.

② 지붕 :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75조(공개공지의 위치)

결정도상에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76조(건축기준 완화-인센티브)

- 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완화 하도록 한다.
 - 1. 권장용도 준수 시(제73조 참조) : 기준용적률의 10%
 - 2.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일 경우 : 기준용적률의 10%
 - 3. 3분할디자인 및 기반부 지침 준수시(제74조 제1항 참조) : 기준용적률의 5%
 - 4.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조성면적의 절반만 산정함) 설치시(제68조 제2항 참조)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② 획지별 용적률은 위의 인센티브 항목의 완화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에 합산하여 결정하되, 제65조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③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제65조의 최고높이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도록 한다.
 - 1.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40% 미만일 경우 : 최고높이 250m 이하
 - 2.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이 건폐율 30% 미만일 경우 : 최고높이 300m 이하

5. 항만물류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77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획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 ②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과도하게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제78조(건축물의 용도)

다음 표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제2조 제6호 항만시설 중 ‘다’목(지원시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시설 ※ 항만물류용지6은 공컨테이너장치장 및 화물차휴게소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업무시설 허용지역

- 항만물류용지의 지정된 위치에 한하여 지정용도 및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 용도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음

제79조(건축물의 규모)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표시방법

70%	350%	예 : 건폐율 70% 이하, 최고높이 70m 이하 용적률 350% 이하
70m		

제80조(건축선)

결정도상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운영에 따른 컨테이너검사장, 세관반출입신고장 등 통제시설 건축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81조(대지내 조정)

결정도상에 대지내 조경이 표시된 곳에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 및 이용자가 대지내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 및 이를 관리하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제82조(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83조(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의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84조(건축물의 색채)

① 항만물류용지(항만물류 1-2 제외)의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청색계통의 중·고명도 및 채도의 색상으로 주조색 및 보조색 사용하도록 한다.
2. 강조색은 용지내 다양한 시설의 복합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경사지붕의 경우 명도 6 이하, 채도 4 이하로 하도록 한다.

② 항만물류용지 1-2의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조로 하는 업무용지와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저층부(5층 이하)의 색채변화를 채도 및 명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토록 한다.
2.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항만물류 1-1, 2, 3, 4, 5, 6	주조색 / 보조색	○색상 : N6 이상, 2.5B~10PB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5B 9/2 2.5B 8/2	
	지붕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경사지붕일 경우에 한함	 5B 8/4 5B 6/4	
항만물류 1-2	고층부 (6층이상)	주조색	○명도/채도 : 8이상/ 2이하 ○색상(권장) : N8.5이상 또는 2.5YR~10Y	 10Y 9/1.5 10YR 9/1.5
		보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색상(권장) : 2.5YR~10Y	 10Y 7/3 10YR 7/3
	저층부 (5층이하)	주조색 보조색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색상(권장) : 2.5RP~10Y	 2.5RP 9/1 5RP 6/3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85조(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형태

1. 항만물류 1-2의 경우에는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을 권장한다.
2. 기단부는 5층 이하로 조성하도록 한다.

② 지붕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③ 담장 :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6.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86조(필지의 분할과 합병)

교육시설용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제87조(건축물의 용도)

교육시설용지내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건축할 수 없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지정용도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88조(건축물의 규모)

-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도면표시방법

	50%	150%	예 : 건폐율 50%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	30m		용적률 150% 이하

제89조(건축물의 외관)

건축물의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90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91조(보행출입구의 설치)

보행출입구 조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변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92조(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온화한 난색계통의 색상을 권장하되,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여 계획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교육시설용지	주조색/보조색	○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 색상(권장) : N8.5이상, 2.5RP~10Y	 2.5RP 9/1 5R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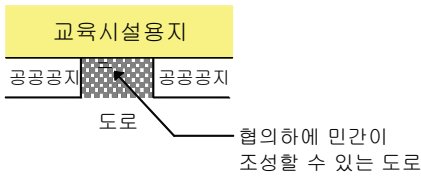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93조(건축물의 형태)

- ①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조형적인 옥상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② 지붕의 형태가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94조(담장 및 진입부)

- ① 담장은 1.2m 이하의 투시형(투시율 70% 이상) 또는 조경·식재를 통한 생물타리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녹지, 공공공지 등과 면한 담장은 1m 이하의 조경·식재를 통한 생물타리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③ 교육시설용지 및 공공공지 등에 의해 3면이 둘러싸인 도로(교육시설용지 진입부)의 경우 승인 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민간부문에 조성할 수 있다. 단, 항시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7.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95조(필지의 분할과 합병)

문화시설용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제96조(건축물의 용도)

문화시설용지내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건축할 수 없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97조(건축물의 규모)

-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도면표시방법

60%	400%	예 :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 40m 이하 용적률 400% 이하
40m		

제98조(건축선)

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제99조(대지내 공지)

① 전면공지

1.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나. 제2호 건축선(3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다. 제3호 건축선(1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행자도로 및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2. 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식수대예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공지

1.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2.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다.

제100조(대지내 조경)

① 차폐식재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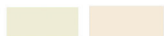
제101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102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高明도·高채도의 색상을 사용하도록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 규제 토록 한다.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문화시설용지	주조색/보조색	○ 명도/채도 : 8이상/ 2이하 ○ 색상(권장) : N8.5이상 또는 2.5YR~10	 10Y 9/1.5 10YR 9/1.5

제103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104조(건축물의 형태)

① 예술성이 뛰어난 조형적 형태를 지향하도록 한다.

② 지 붕의 형태가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05조(공개공지의 위치)

결정도상에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된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8.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106조(필지의 분할과 합병)

공공청사용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제107조(건축물의 용도)

공공청사용지내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건축할 수 없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지정용도	•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분국, 소방파출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108조(건축물의 규모)

-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도면표시방법

50%	200%	예 : 건폐율 50% 이하, 최고높이 20m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m		

제109조(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건축물의 외관)

건축물의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111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112조(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온화한 난색계통의 색상을 권장하되,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여 계획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공공청사용지	주조색/보조색	○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 색상(권장) : N8.5이상, 2.5RP~10Y	 2.5RP 9/1 5RP 6/3

제113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114조(건축물의 형태)

- ①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조형적인 옥상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② 지붕의 형태가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9. 주차장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115조(필지의 분할과 합병)

주차장용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제116조(건축물의 용도)

주차장용지내에서는 다음 표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건축할 수 없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117조(건축물의 규모)

-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표시방법

90%	1,500%
80m	

예 : 건폐율 90%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제118조(건축선)

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지내 공지)

① 전면공지

1.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가.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나. 제2호 건축선(3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다. 제3호 건축선(1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보행자도로 및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2. 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식수대예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공지

1.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2.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다.

제120조(대지내 조경)

① 차폐식재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21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122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온화한 난색계통의 색상을 권장하되,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여 계획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② 색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색 채 계 획 (면셀 H V/C)		색 채 예 시
주차장용지	주조색/보조색	○ 명도/채도 : 6이상/ 4이하 ○ 색상(권장) : N8.5이상, 2.5RP~10Y	 2.5RP 9/1 5RP 6/3

제123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124조(건축물의 형태)

①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에 벽면의 개구부는 차량이 가능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성 하도록 한다.

② 지붕의 형태가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10. 기타 시설용지(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변경없음)

제125조(필지의 분할과 합병)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제126조(건축물의 용도)

기타 공공시설용지내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건축할 수 없다.

구 분	건 축 물 용 도
지정용도	• 변전소, 펌프장, 배수지 등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127조(건축물의 규모)

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표시방법

20%	80%	예 : 건폐율 2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용적률 80% 이하
4층		

제128조(건축물의 외관)

건축물의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129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제130조(담장 및 울타리)

담장은 1.2m 이하의 투시형(투시율 70% 이상) 또는 조경·식재를 통한 생물타리로 조성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 기타 권장사항(변경없음)

제1절.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131조(옥외광고물 설치 공통사항)

- ① 광고물은 부지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하며, 종합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를 권장한다.
- ② 1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하도록 한다. 단, 도로의 꼭각지점은 3개 이내로 한다.
- ③ 광고물의 색채는 외벽색과 조화를 이루는 중간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동일 건축물 내에서는 동일 색상 계통의 광고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④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픽토그램 사인 (Pictogram Sign)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⑤ 본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2조(간판의 설치기준)

① 가로형 간판

1. 가로형 간판(판류형)은 동일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 폭은 일치하도록 한다.
2. 가로형 간판(판류형)은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로 하도록 한다.

② 세로형 간판 : 1층 출입구 양측면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한다.

③ 돌출간판 : 1개당 층고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며, 연립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④ 창문이용광고 : 창문면적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면적은 문자, 도형의 외곽테두리를 연결 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제133조(간선가로변의 광고물 설치규제)

간선도로변(폭 30m 이상)에는 가로형 간판(판류형), 돌출광고, 창문이용광고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2절.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134조(야간조명의 설치)

건축물의 조형성과 야간조명은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 한함) 이상의 건축물은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축심의회 별도의 야간조명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135조(야간조명의 설치기준)

- ① 상업지역의 경우, 저층부 가로변과 고층부/옥상부의 야간경관계획을 중시하여야 하며, 첨단 디지털 IT 및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조명계획의 수립을 권장한다.
- ② 주거지의 경우,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변의 고층(20층 이상) 타워형 주호동은 야간조명을 통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토록 함. 옥상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③ 공개공지 등의 조경시설물과 상징조형물, 미술장식품 등에 대한 조명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제3절. 식재 및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136조(식재)

- ① 지역적 특성(매립지)을 고려하여 염분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며, 공개공지에는 계절감을 주는 수목의 식재를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옥상 특히, 저층부의 옥상에 대한 녹화를 적극 권장한다.

제137조(미술장식품의 설치)

-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장식품은 공개공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적 영상 등을 통해 활력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IT 및 미디어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치품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1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138조(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해 작성되는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시1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지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9조(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은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시1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0조(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계획적 필요에 의한 사항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④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 내용을 따른다.
- ⑤ 대지상호간 합병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시행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 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⑦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141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의 관리가 필요한 일단의 구역으로서,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 를 통해 별도의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허용 되지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5. “최고높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높이를 말 한다. 건축물의 높이산정은 『건축법』 상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에 의한다.
 6.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7. “고층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그 선을 넘어서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8.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내로의 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9.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 및 주건축물로의 보행출입구를 당해 방향으로 1개소 이 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1. “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 중 일반대중의 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12.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 “공동개발”이라 함은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개발함을 말 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절. 규제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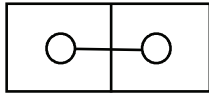
제142조(단위대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1. 획지선으로 구획된 일단의 대지
 2. 합병가능 표시에 해당되는 일단의 대지

제143조(획지의 분할과 합병)

- ① 획지는 분할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이 표시된 획지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③ 도면표시

공동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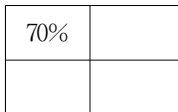


제144조(건축물의 용도)

- ①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제145조(건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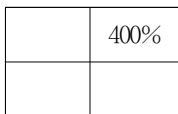
- ① 건폐율은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건폐율 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도면표시



건폐율 70% 이하

제146조(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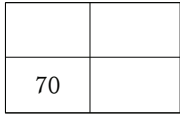
- ① 건폐율은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용적률 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도면표시



용적률 400% 이하

제147조(최고높이)

- ① 최고높이가 지정된 대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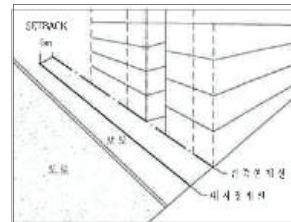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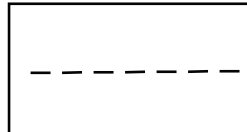
최고높이 70m 이하

제148조(건축한계선)

- 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폐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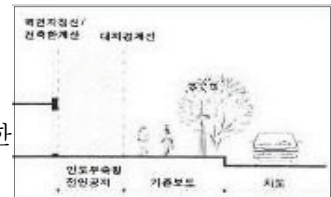
건축한계선 :



제149조(전면공지)

-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 1.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 2. 제2호 건축선(20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대규모 이용자를 위한 전면광장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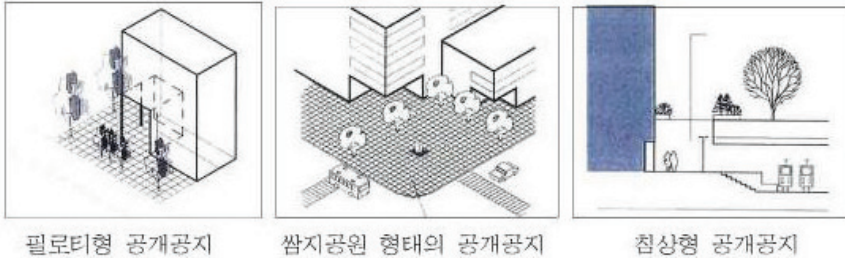


- ② 전면공지에는 식수대예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 량진출입구간은 험프형 횡단보도 및 사고석 포장패턴 등 보행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0조(공개공지)

- ①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②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 ③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다.

■ 공개공지 예시



필로티형 공개공지

삼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

침상형 공개공지

제151조(대지내 조경)

① 차폐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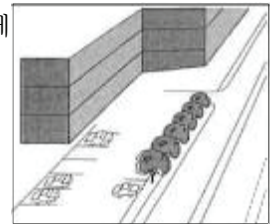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② 결정도상에 대지내 조경이 표시된 곳에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 및 이용자가 대지내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 및 이를 관리하는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 차폐식재 예시



제152조(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하는 통로로서, 24시간 개방되도록 하여야 하며 결정도상에 표시된 곳에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 가. 폭은 4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획지선(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 나.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획지선(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m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접하는 보도와 단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하도록 한다.
 - 라. 보행안전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
 - 마.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가구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장식포장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조성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도록 블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공보행통로 중 장식포장 등으로 조성된 면적에 한하여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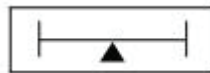
제153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 ②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 :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로 하여야 한다.
- ③ 건축설비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154조(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 ①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② 전면공지변 차량진출입구 중 대로변은 폭 8m 이하, 물류시설용지는 폭 12m 이상 확보 하도록 한다.
- ③ 도면표시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제155조(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초로 하는 색상을 권장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저층부 (5층 이하)의 색채변화를 채도 및 명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토록 한다.
 2.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56조(담장 및 울타리)

- ①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권장사항(변경없음)

제157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 디자인을 권장한다.
- ② 기단부(돌출된 형태의 저층부)는 5층 이하로 조성하도록 한다.
- ③ 지붕 :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58조(주차공간 확보)

- ① 획지별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업무용지는 120% 이상, 전시·물류 시설용지는 150%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1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159조(건축허가 및 심의)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반영여부를 표현한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상의 해당부분 표시
- 2. 지구단위계획지침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의 명시
-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 4. 인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광고물 등)
-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 8. 야간조명계획(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 9. 기타 관련도서

제160조(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제정 및 관련지침의 변경으로 시행 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에 개정·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른다.

제161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완화)

건축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권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입안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필지의 합병, 2개 이상의 필지에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등 필지의 범위 등이 변경되어 지침 내용 및 규제도가 불합리한 경우
3. 현상설계에 의하여 지침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4.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
5.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 또는 결정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2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지정 및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양산시장(건설하천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62번지 외 15필지 일원 면적 : 4,08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목적 : 황산공원 관리용 도로 개설 ○ 시설개요 : 관리용 도로 개설 A=4,080㎡(L=680m, B=6.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포장 A=4,080㎡(T=20cm) - 황배수관(D400) L=35m(7m/개소, 5개소) - 볼라드(이동식) 4개소
점 용 기 간	2022년 5월 1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하천의 명칭	양산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양산시장(건설하천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653-10번지 외 1필지 일원 면적 : 41㎡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시계탑 설치 ○ 시설개요 : - 시계탑 설치 1개(H=6.1m) - 웬스(H=0.6m) L=26m
점 용 기 간	2022년 5월 1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58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해시장(농산업지원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33번지 일원 면적 : 5,95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제7회 김해 꽃 축제 ○ 시설개요 : - 중앙화단 A=2,826㎡, 아트프리마켓 30개 A=105㎡ - 부스 41동 A=1,025㎡, 포토존 4개 A=80㎡ - 꽃줄기 1개 A=80㎡, 휴게존 A=900㎡ - 입구아치 A=50㎡, 무대 A=90㎡, 신화환꽃길 A=30㎡ - 꽃동산 A=60㎡, 꽃기차 A=704㎡
점 용 기 간	2022년 5월 19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